

도 보

전라남도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19-9호

2019년 2월 14일 (목)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Namdo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도보편집실 ☎061)286-2073

목 차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34호	덕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35호	담양 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호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22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28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3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40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41호	2019년 전라남도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42호	전라남도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47호	2019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9-16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업체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 시군행정

목포시 고시 제2019-28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소로 3-460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19-33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장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19-37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상하금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19-40호	국가자원지방도 22호선 주변 및 해안 수변측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여수시 고시 제2019-41호	돌산 무슬목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곡성군 고시 제2019-11호	곡성군 도시계획시설(소로2-302, 소로2-303, 주차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곡성군 고시 제2019-13호	곡성군 군계획시설(주차장5)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흥군 고시 제2019-4호	고흥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진군 고시 제2019-17호	강진 산업단지 실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강진군 고시 제2019-21호	도시계획도로 소로2-67(서문안~인화어린이집)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강진군 공고 제2019-123호	강진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강진군 공고 제2019-128호	강진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중로 2-15, 소로 1-26)사업인장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해남군 고시 제2019-22호	해남군 지역개발사업(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및 해남 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영암군 공고 제2019-159호	영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 공고

◆ 유관기관

광양청 공고 제2019-6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2건 공포 공고
광양청 규정 제22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
광양청 규정 제22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복무규정 개정규정

전라남도 고시 제2019-34호

덕산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시행 중인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대해 「농어촌정비법」 제9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세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 2. 14

전라남도지사

1. 지 구 명 : 덕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장성군
3. 사업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관개개선,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 재해예방
 - 나. 사업개요
 - 1) 위 치 :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일원
 - 2) 수혜면적 : 49.0ha(기설 16.5ha, 보강 13.5ha, 신규 19.0ha)
 - 3) 총사업비 : 8,230백만원
 - 4) 사업기간
 - 당초 : 2015. 12. 11. ~ 2018. 12. 11(3개년)
 - 변경 : 2015. 12. 11. ~ 2019. 12. 11(4개년)
 - 5) 주요사업
 - 저 수 지 : 제방 2개소, 여수로 2개소, 취수시설 2개소, 이설도로
 - 용 수 로 : 6조 4.85km
 - 부대공사 : 1식(가설사무실 등)
4. 관계도서 열람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 안전건설과(☎ 061-390-7488)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변경)조서 : 다음

덕산지구 토지세목(변경) 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총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주소	소유자
합 계		39필지		278,765.0	18,443.0		
1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82-1	구	377	8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곡길 73(광산동)	기정섭
2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82-2	유	1,775	1,77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곡길 73(광산동)	기정섭
3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98	임	1,305	44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498	김명식
4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98	임	1,305	64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498	김명식
5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31	임	85,785	9,219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430	김병구
6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2	임	5,058	36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587 주공아파트 306동 403호	김병균
7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537-5	답	93	35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521	김상수
8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21-1	유	1,190	6	전남 장성군 동화면 송계리202	김영균
9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2-4	답	2,936	262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21번길 45, 102동801호	김영철 외 1인
10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62	답	3,515	41	전남 장성군 장성읍 유탕리 68	김유복
11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90	답	1,947	17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505	김윤옥
12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41	답	2,339	7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390	김인홍
13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41	답	2,339	26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390	김인홍
14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31	임	75,433	1,133	전남 장성군 동화면 본동로 956-1	김재연
15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7	답	2,079	313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2-1	김종식
16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66	유	757	757	전남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김주현
17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86-2	유	36	36	전남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김주현
18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42	임	28,363	1,427	광주시 광산구 지평동 102-2	나주오씨대화사 문중
19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84-1	구	50	50	전남 목포시 북교동 132	문재철
20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85-1	구	126	126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214-326	백재호 외 3인
21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58	전	790	48	전남 장성군 동화면 동각길 34	백행남
22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52-4	임	472	72	전남 장성군 삼서면 보생리416	봉만진 외 1인
23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36-2	답	888	117	전남 장성군 동화면 동각길 11	송양숙
24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36-2	답	888	8	전남 장성군 동화면 동각길 11	송양숙
25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90-1	유	755	755	광주시 북구 두암동 940 대주빌라 1동 101호	송영화
26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40	답	1,470	26	전남 장성군 삼서면 수양리259	이규현 외 3인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총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주소	소유자
27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7	답	2,301	97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아촌인길 47(신촌동)	이순희
28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55-1	답	1,575	138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134	이영철
29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51	답	3,580	52	광주시 광산구 신월동 883-1 첨단3-5차 호반 324-602	임대용
30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4	답	1,812	9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235	전계선
31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9-1	답	2,364	15	광주시 북구 풍향동 578-1	전영희
32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9-1	답	2,364	6	광주시 북구 풍향동 578-1	전영희
33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5	답	337	137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	전홍희 외 4인
34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539-8	전	249	18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03	정동림
35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19	임	34,909	1,060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846	정무근
36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93	전	598	115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00	정문삼
37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75	답	3,385	217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 695 등촌5단지주공아파트 506-502	정현수
38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50	답	3,064	42	전남 장성군 동화면 삼동로401	차점문
39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141-1	답	156	57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빛가람동 358)	한국농어촌공사

덕산지구 지장물(변경) 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단위	소유자 주소	소유자
1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98외	대나무		600	㎡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98	김명식
2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31	분묘	유연단장	10	기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30	김병구
3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산31	지장물	벚나무	2	주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30	김병구
4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82	편백	R3*H2.0*W1.0	65	주	전남 장성군 동화면 신덕삼릉길 1번지	김창수
5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75	잔디		340	㎡		배행남
6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90-2	세장비	L0.7*H2.5*B0.3 (오석+용머리)	1	식		송영화
7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90-2	신덕마을 표지석	L0.8*H0.3*B0.2	1	식		송영화
8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390	철망울		150	m		송영화
9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536-1	사과나무	R3	2	주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505	양금자
			감나무	R5,R2	2	주		
			철쭉	0.5*0.5	1	주		
			장미	L2, 5지	1	주		
			무화과	R4*H2.0	1	주		
10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537-1	잔디		40.5	㎡	전남 장성군 동화면 신덕삼릉길 2-66	유기현
11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514	잔디		380	㎡	전남 장성군 동화면 신덕삼릉길 2-66	유기현
12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02-1	대추	묘목	1	주		유수언
13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51	잔디		15	㎡	광주시 광산구 신월동 883-1 첨단3-5차 호반 324-602	임대용
14	장성군 동화면 구룡리	45	사과나무	R2*H1.5-2.0	81	주		전계화

전라남도 고시 제2019-35호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 5.17.)로 고시한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14

전라남도지사

1.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조서 :
다음
2. 관계 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
3.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가. 열람장소 : 담양군청 투자유치과 (061-380-3132)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개발계획(변경)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원
- 면 적 : 1,277,173㎡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 담양군의 생태, 청정, 전통도시로서의 지역특성을 활용한 주거와 문화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입지여건을 활용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전남 북부권의 거점단지 개발
- 인근 지역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격의 전원주택 조성으로 전국 유일한 문화·관광 전원주택단지 조성

4.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담양대숲마루(주) 대표이사 오광록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4. 4. 24 ~ 2020. 12. 31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합계	1,277,173	1,277,173	-	100.0	100.0	
주거용지	470,774	470,774	-	36.8	36.8	1,452세대
단독주택	387,854	387,854	-	30.3	30.3	772세대
공동주택	64,053	64,053	-	5.0	5.0	680세대
근린생활시설	18,867	18,867	-	1.5	1.5	
상업용지	35,475	35,475	-	2.8	2.8	
근린상업	25,172	25,172	-	2.0	2.0	
유통상업	10,303	10,303	-	0.8	0.8	판매시설(마트)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도시기반시설용지	743,269	725,188	감) 18,081	58.2	56.8	
도로	242,852	243,209	증) 357	19.0	19.0	
도로	218,123	218,480	증) 357	17.1	17.1	
보행자전용도로	24,729	24,729	-	1.9	1.9	녹도
주차장	9,859	9,859	-	0.8	0.8	8개소
광장	818	818	-	0.1	0.1	1개소
공원	216,592	216,592	-	17.0	17.0	
근린공원	199,169	199,169	-	15.6	15.6	1개소
소공원	1,434	1,434	-	0.1	0.1	2개소
어린이공원	15,989	15,989	-	1.3	1.3	8개소
녹지	75,493	75,481	감) 12	5.9	5.9	
완충녹지	21,858	21,858	-	1.7	1.7	4개소
경관녹지	53,635	53,623	감) 12	4.2	4.2	5개소
공공공지	38,262	38,262	-	3.0	3.0	58개소
공공청사	2,833	2,833	-	0.2	0.2	경찰파출소,우체국 등
학교	22,024	3,586	감) 18,438	1.7	0.3	
유치원	3,586	3,586	-	0.3	0.3	1개소
중고등학교	18,438	-	감) 18,438	1.4	-	
수도공급설비	3,579	3,579	-	0.3	0.3	1개소(간선시설)
하천	50,184	50,184	-	3.9	3.9	소하천3개소(회룡·가산·구련)
유수지	25,454	25,454	-	2.0	2.0	저류시설4개소
수로 및 저수지	55,319	55,319	-	4.3	4.3	고가제(47,937㎡)
가스공급설비	-	12	증) 12	-	0.0	가스정압기1개소
(생태통로)	(1,000)	(1,000)	-	(0.1)	(0.1)	(2개소)
기타시설용지	27,655	45,736	증) 18,081	2.2	3.6	
의료시설	6,578	6,578	-	0.5	0.5	1개소
문화복합용지	13,544	13,544	-	1.1	1.1	1개소
커뮤니티센터	7,533	7,176	감) 357	0.6	0.6	7개소
교육연구시설	-	18,438	증) 18,438	-	1.4	국제학교(대안학교)1개소

* 주 : ()는 공중지중화 등 입체적 시설로서 타 용도와 중첩되는 면적임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 계획(변경)

류 별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70	26,626	242,852	6	1,054	17,204	24	8,769	100,135	140	16,803	113,484
		변경	170	26,684	243,209	6	1,054	17,204	24	8,769	100,135	140	16,861	113,832
일반 도로	소계	기정	121	22,856	206,262	6	1,054	17,204	24	8,769	100,135	91	13,033	88,923
		변경	121	22,914	206,610	6	1,054	17,204	24	8,769	100,135	91	13,091	89,271
	중로	기정	19	6,652	98,538	2	503	11,694	7	4,281	64,215	10	1,868	22,629
		소로	기정	102	16,204	107,724	4	551	5,510	17	4,488	35,920	81	11,165
	소로	변경	102	16,262	108,072	4	551	5,510	17	4,488	35,920	81	11,223	66,642
보행자 도로	소계	기정	49	3,770	24,561	-	-	-	-	-	-	49	3,770	24,561
	중로	기정	1	175	2,332	-	-	-	-	-	-	1	175	2,332
	소로	기정	48	3,595	22,229	-	-	-	-	-	-	48	3,595	22,229
기타주)		기정	-	-	12,029	-	-	-	-	-	-	-	-	-
		변경	-	-	12,038	-	-	-	-	-	-	-	-	-

주) 기타는 가각 및 완화차로 면적임

2) 주차장 계획(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개소	9,859	-	9,859	
기정	1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232-5답 일원	2,099	-	2,099	
기정	2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222-12답 일원	995	-	995	
기정	3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328-1잡 일원	1,036	-	1,036	
기정	4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955-26구 일원	920	-	920	
기정	5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931전 일원	1,369	-	1,369	
기정	6	주차장	수북면 주평리 816-4답 일원	1,314	-	1,314	
변경	7	주차장	수북면 주평리 701-1전 일원	1,290	-	1,290	부지형상 변경 (면적 동일)
기정	8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504-2답 일원	836	-	836	

3) 광장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	광장	담양읍 가산리 329-7 일원	818	-	818	

4) 녹지 계획(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합계			9개소	75,493	감)	12	75,481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담양읍 가산리 233-5답 일원	4,146		-	4,146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담양읍 가산리 472-2답 일원	10,344		-	10,344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담양읍 가산리 471-2답 일원	928		-	928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수북면 주평리 812-4답 일원	6,440		-	6,440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36,033	감	12	36,021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담양읍 가산리 산61-2임 일원	13,412		-	13,412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수북면 주평리 821-1답 일원	1,933	증)	4	1,937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수북면 주평리 831-2답 일원	1,604	감)	4	1,600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수북면 주평리 836-1답 일원	653		-	653

5) 공원 계획(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1개소	216,592	-	216,592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수북면 주평리 산7임 일원	199,169		-	199,169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220-2답 일원	3,275		-	3,275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산54-8임 일원	1,506		-	1,506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498-5답 일원	2,104		-	2,104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481-1답 일원	1,715		-	1,715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471-5답 일원	1,543		-	1,543
기정	6	공원	어린이공원	수북면 주평리812-3답 일원	1,643		-	1,643
기정	7	공원	어린이공원	수북면 주평리815-10답 일원	2,700		-	2,700
변경	8	공원	어린이공원	수북면 주평리701-1전 일원	1,503		-	1,503 부지형상 변경 (면적 동일)
기정	1	공원	소공원	담양읍 가산리505-1답 일원	851		-	851
기정	2	공원	소공원	담양읍 가산리505-2답 일원	583		-	583

6) 공공공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8개소	38,262	-	38,262	
기정	3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221-7답 일원	833	-	833	
기정	4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222-9답 일원	942	-	942	
기정	5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64-2도 일원	2,688	-	2,688	
기정	6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7-37구 일원	125	-	125	
기정	7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27답 일원	922	-	922	
기정	8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5-5답 일원	682	-	682	
기정	10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371	-	371	
기정	11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529	-	529	
기정	12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647	-	647	
기정	13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4-8임 일원	322	-	322	
기정	14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613	-	613	
기정	15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605	-	605	
기정	16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산9임 일원	659	-	659	
기정	17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4-1답 일원	1,160	-	1,160	
기정	18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7-29구 일원	409	-	409	
기정	19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82-1답 일원	279	-	279	
기정	20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36전 일원	907	-	907	
기정	21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35전 일원	353	-	353	
기정	22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15-2전 일원	501	-	501	
기정	23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15-4답 일원	1,030	-	1,030	
기정	24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6-4답 일원	827	-	827	
기정	25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7-2답 일원	480	-	480	
기정	26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9-2답 일원	719	-	719	
기정	27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2-15답 일원	185	-	185	
기정	28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2-15답 일원	304	-	304	
기정	29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5-10답 일원	777	-	777	
기정	30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5-7답 일원	626	-	626	
기정	31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5-2답 일원	283	-	283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2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03임 일원	110	-	110	
기정	33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04-1도 일원	698	-	698	
기정	34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20도 일원	690	-	690	
기정	35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1-10답 일원	505	-	505	
기정	36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17도 일원	177	-	177	
기정	37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17도 일원	242	-	242	
기정	38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18도 일원	831	-	831	
기정	39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18도 일원	230	-	230	
기정	40	공공공지	수북면 두정리 185-2전 일원	2,797	-	2,797	
기정	41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2-1답 일원	694	-	694	
기정	42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4-3 답 일원	958	-	958	
기정	43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4-9답 일원	449	-	449	
기정	44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4-10답 일원	599	-	599	
기정	45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5-12답 일원	288	-	288	
기정	46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5-14답 일원	732	-	732	
기정	47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6-7 답 일원	614	-	614	
기정	48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0-8답 일원	144	-	144	
기정	49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0-6답 일원	495	-	495	
기정	50	공공공지	수북면 두정리 323-7답 일원	902	-	902	
기정	51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1-7답 일원	750	-	750	
기정	52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7-1답 일원	606	-	606	
기정	53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6-10답 일원	594	-	594	
기정	54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34-1 답 일원	282	-	282	
기정	55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37-2답 일원	371	-	371	
기정	56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37-2 답 일원	2,457	-	2,457	
기정	57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46-8 도 일원	423	-	423	
기정	58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46-2도 일원	550	-	550	
기정	59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795답 일원	786	-	786	
기정	60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796답 일원	401	-	401	
기정	61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5-3답 일원	109	-	109	

7) 수도공급설비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km)	면적(㎡)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수도공급설비 (송수관로)	대전면 서옥리 416-3	담양읍 가산리 432-4	수북면 나산리	11.84 (0.79)	78,221 (3,579)	

※ ()는 구역내 연장, 면적임

8) 가스공급설비 계획(신설)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 12	12	-	
신설	1	가스공급설비	수북면 주평리 산10임 일원	-	증 12	12	-	

9) 공공청사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	공공청사	담양읍 가산리 228-6답 일원	2,833	-	2,833	

10) 학교 계획(변경)

구 분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기정	2개소	21,924	감 18,438	3,586	
				변경	1개소				
기정	1	학교	유치원	담양읍 가산리 292-4전 일원		3,586	-	3,586	
폐지	2	학교	중·고등학교	담양읍 가산리 915-2전 일원		18,438	감 18,438	-	

11) 하천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개소		50,184	-	50,184	
기정	1	하천	담양읍 가산리 227-13구 일원	40,586	-	40,586	
기정	2	하천	담양읍 가산리 507-3구 일원	842	-	842	
기정	3	하천	수북면 주평리 847-4구 일원	8,756	-	8,756	

12) 저수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기정	1	저수지	담양읍 가산리 298-6유 일원	47,937	-	47,937	고가제

13) 유수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4개소		25,454	-	25,454	
기정	1	유수지	담양읍 가산리 227-1답 일원	9,461	-	9,461	저류시설
기정	2	유수지	담양읍 가산리 281답 일원	5,172	-	5,172	저류시설
기정	3	유수지	수북면 주평리 814-13답 일원	2,761	-	2,761	저류시설
기정	4	유수지	수북면 주평리 836-9답 일원	8,060	-	8,060	저류시설

14) 커뮤니티센터 계획(변경)

구분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개소		7,533	감)	357	7,176	
기정	1	커뮤니티센터	담양읍 가산리 220답 일원	1,222		-	1,222	
기정	2	커뮤니티센터	담양읍 가산리 산55-2임 일원	1,107		-	1,107	
기정	3	커뮤니티센터	담양읍 가산리 481-3답 일원	1,170		-	1,170	
기정	4	커뮤니티센터	담양읍 가산리 471-4답 일원	1,006		-	1,006	
기정	5	커뮤니티센터	수북면 주평리 812-4답 일원	801		-	801	
기정	6	커뮤니티센터	수북면 주평리 815-11답 일원	1,196		-	1,196	
변경	7	커뮤니티센터	수북면 주평리 826-1답 일원	1,031	감)	357	674	

15) 수로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개소		7,382		-	7,382	
기정	1	수로	담양읍 가산리 506-18도 일원	3,096		-	3,096	
기정	2	수로	수북면 두정리 323-4답 일원	4,286		-	4,286	

16) 문화복합용지 계획(변경없음)

구분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문화복합용지	담양읍 가산리 935-1전 일원	13,544	-	13,544	

17) 교육연구시설용지 계획(신설)

구분	번호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교육연구시설용지	담양읍 가산리 915-2전 일원	-	증	18,438	국제학교 (대안학교)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붙임 생략

8.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도로계획

- 별도의 군관리계획으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하여 사업시행
-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시행
- 구역 밖 시설 설치비용은 본단지 조성원가 산정을 위해 총사업비에 포함 관리

구 분				노선수	폭원(m)	연장(km)	면 적(㎡)	비 고
총 계				3	-	2.27	48,184	
1	일반도로	중로	1류	1	22	1.60	33,924	사업시행자 부담시행
2	일반도로	중로	2류	1	15	0.26	3,990	사업시행자 부담시행
3	일반도로	중로	1류	1	24	0.41	10,270	사업시행자 부담시행

9. 도시개발법 제11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담양군청 투자유치과 ☎ 061-380-3132)

11.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원	1,277,173	-	1,277,173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변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원	1,277,173	-	1,277,173	

II. 실시계획(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담양군의 생태, 청정, 전통도시로서의 지역특성을 활용한 주거와 문화자원을 개발함으로써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화합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입지여건을 활용한 주거단지 조성으로 전남 북부권의 거점단지 개발
- 인근 지역여건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품격의 전원주택 조성으로 전국 유일한 문화·관광 전원주택단지 조성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주평리 일원
- 면 적 : 1,277,173㎡

4.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담양대숲마루(주) 대표이사 오광록
- 소재지 :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5. 시행기간(변경없음)

- 2014. 4. 24 ~ 2020. 12. 31

6. 시행방식(변경없음)

- 수용 또는 사용방식

7. 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변경)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77,173	-	1,277,173	100.0	
주거 지역	계	794,680	-	794,680	62.2	
	제1종전용주거지역	475,919	-	475,919	37.2	
	제1종일반주거지역	131,465	-	131,465	10.3	
	제2종일반주거지역	187,296	-	187,296	14.7	
상업 지역	계	82,205	-	82,205	6.4	
	근린상업지역	82,205	-	82,205	6.4	
녹지 지역	계	400,288	-	400,288	31.4	
	자연녹지지역	400,288	-	400,288	31.4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임

나. 군계획시설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교통시설(도로)

- 도로 총괄표

류 별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70	26,626	242,852	6	1,054	17,204	24	8,769	100,135	140	16,803	113,484
		변경	170	26,684	243,209	6	1,054	17,204	24	8,769	100,135	140	16,861	113,832
일반 도로	소계	기정	121	22,856	206,262	6	1,054	17,204	24	8,769	100,135	91	13,033	88,923
		변경	121	22,914	206,610	6	1,054	17,204	24	8,769	100,135	91	13,091	89,271
	중로	기정	19	6,652	98,538	2	503	11,694	7	4,281	64,215	10	1,868	22,629
		기정	102	16,204	107,724	4	551	5,510	17	4,488	35,920	81	11,165	66,294
	소로	변경	102	16,262	108,072	4	551	5,510	17	4,488	35,920	81	11,223	66,642
보행자 도로	소계	기정	49	3,770	24,561	-	-	-	-	-	-	49	3,770	24,561
	중로	기정	1	175	2,332	-	-	-	-	-	-	1	175	2,332
	소로	기정	48	3,595	22,229	-	-	-	-	-	-	48	3,595	22,229
기타주)		기정	-	-	12,029	-	-	-	-	-	-	-	-	-
		변경	-	-	12,038	-	-	-	-	-	-	-	-	-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주) 기타는 가각 및 완화차로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	24	보조간선도로	314	가산리230-1	삼다리675-2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1	2	22	보조간선도로	189	대로3-15	중로1-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317	중로1-1	중로1-2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95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284	중로1-3	중로2-2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494	중로2-3	중로2-5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902	중로1-3	중로2-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1,851	중로1-3	주평리95-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338	중로2-5	중로3-3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3	1	12	집산도로	95	중로2-3	중로3-2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3	2	12	집산도로	107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36	중로2-4	중로2-7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49	중로2-4	중로2-7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3	5	12	집산도로	403	중로2-5	중로3-9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3	6	12	집산도로	414	중로2-5	중로3-5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3	7	12	국지도로	6	중로3-6	공동주택A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3	8	12	국지도로	6	중로2-5	공동주택A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3	9	12	집산도로	610	중로1-3	중로2-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3	10	12	집산도로	142	중로2-6	두정리180구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중로	3	11	12	특수도로	175	중로1-1	중로2-1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74	중로2-1	중로2-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6	중로3-9	문화시설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6	중로3-9	학교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365	중로2-6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83	중로2-3	소로2-2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03	중로1-3	소로3-3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29	중로1-3	중로2-5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388	중로2-5	중로3-9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337	중로3-6	중로3-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51	중로3-6	소로2-8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01	중로3-9	소로3-24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02	중로3-5	소로2-7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244	중로2-6	중로3-9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45	중로1-3	소로1-4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418	중로2-6	중로2-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62	중로2-6	소로2-1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217	중로2-6	소로2-1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60	중로2-6	소로2-15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92	중로2-6	소로2-1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156	중로2-6	소로2-1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100	중로2-5	소로3-82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307	소로2-1	소로2-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81	소로2-1	소로3-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98	소로2-2	소로2-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90	소로2-2	소로3-3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89	소로2-2	소로3-3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390	중로2-5	중로2-7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327	중로2-5	중로3-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203	중로3-6	소로2-5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0	소로2-5	소(특)3-100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23	6	국지도로	77	중로3-6	소로3-24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24	6	국지도로	174	소로2-6	소로2-7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25	6	국지도로	174	소로2-6	소로2-7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26	6	국지도로	53	소로3-27	2호완충녹지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27	6	국지도로	95	중로3-9	2호원충녹지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28	6	국지도로	80	소(특)3-114	4호 어린이공원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29	6	국지도로	58	소로2-9	소로3-28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30	6	국지도로	115	소로2-9	소로3-3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31	6	국지도로	198	소로3-36	소로3-37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32	6	국지도로	114	소로2-9	소로3-3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33	6	국지도로	82	소로3-36	소로3-3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34	6	국지도로	114	소로2-9	소로3-3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35	6	국지도로	86	소로3-36	소로3-3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36	6	국지도로	163	중로3-9	소로3-37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37	6	국지도로	186	중로3-9	소로2-9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38	6	국지도로	205	소로3-40	소로3-40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39	6	국지도로	54	소로3-40	소로3-38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40	6	국지도로	224	중로1-3	중로2-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41	6	국지도로	214	중로2-6	소로3-42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42	6	국지도로	268	중로2-10	소로3-4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43	6	국지도로	96	소로1-4	소(특)3-11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44	6	국지도로	199	중로2-6	소로1-4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45	6	국지도로	205	소로1-4	소로1-4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46	6	국지도로	60	소로3-45	소로3-45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47	6	국지도로	239	소로1-4	2호경관녹지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48	6	국지도로	82	소로1-4	소로3-49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49	6	국지도로	191	소로1-4	소로3-47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50	6	국지도로	81	소로2-10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51	6	국지도로	99	소로2-10	북측지구계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52	6	국지도로	161	소로2-11	소로2-1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53	6	국지도로	165	소로2-11	소로2-12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54	6	국지도로	85	소로2-11	소로3-53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55	6	국지도로	106	소로2-11	소로3-53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56	6	국지도로	335	소로2-11	소로2-12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57	6	국지도로	149	소로2-11	소로3-5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58	6	국지도로	162	소로2-11	소로3-5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59	6	국지도로	79	소로2-13	소로3-6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60	6	국지도로	107	소로2-13	소로3-62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61	6	국지도로	109	소로2-11	소로3-60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62	6	국지도로	155	소로2-11	소로2-14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63	6	국지도로	156	소로2-11	소로2-14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64	6	국지도로	60	소로2-11	소로3-6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65	6	국지도로	98	소로2-11	소로3-6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66	6	국지도로	317	소로2-11	소로2-1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67	6	국지도로	10	소로3-66	소(특)3-124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68	6	국지도로	91	소로2-15	소로3-70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69	6	국지도로	62	소로2-15	소로3-70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70	6	국지도로	156	소로2-15	소(특)3-125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71	6	국지도로	3	소로2-11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72	6	국지도로	273	소로2-11	소로2-1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73	6	국지도로	124	소로2-11	소로3-72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74	6	국지도로	123	소로2-11	소로3-72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75	6	국지도로	17	소로2-11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변경	소로	3	75	6	국지도로	75	소로2-11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76	6	국지도로	208	소로2-16	소로2-1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77	6	국지도로	122	소로2-11	소로3-7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78	6	국지도로	122	소로2-11	소로3-7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79	6	국지도로	122	소로2-11	소로3-7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80	6	국지도로	6	소로2-11	남측지구계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81	6	국지도로	176	소로2-11	소로2-11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82	6	국지도로	193	소로2-17	소로2-17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83	6	국지도로	108	중로2-5	소로2-17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85	6	국지도로	10	소로3-42	소(특)3-129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86	6	특수도로	61	소로1-1	소(특)3-87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87	6-15	특수도로	74	중로2-1	남측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88	6	특수도로	152	중로1-1	남측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89	6-15	특수도로	113	중로1-1	중로2-3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90	6	특수도로	119	중로1-1	중로2-3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91	6-15	특수도로	524	중로2-3	중로2-5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92	6	특수도로	25	중로2-4	중로3-3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93	6	특수도로	32	중로2-5	중로2-7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94	3	특수도로	70	공동주택A2 동측진입부	소로3-6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95	3	특수도로	180	공동주택A2 북측진입부	공동주택A2 동측진입부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96	3	특수도로	46	중로2-5	공동주택A2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97	6	특수도로	136	중로2-5	중로3-7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98	6	특수도로	67	중로3-7	소로3-7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99	6	특수도로	27	중로2-5	소로2-5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00	6	특수도로	13	중로3-5	소로3-10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01	6	특수도로	23	중로3-6	소로3-8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02	6	특수도로	116	소로2-5	소로3-8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03	6	특수도로	22	중로3-5	소로2-5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04	6	특수도로	397	중로2-5	중로3-9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09	6	특수도로	40	소로3-24	소로3-25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10	6	특수도로	22	소로2-8	소로3-25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11	6	특수도로	25	중로3-9	소로2-8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12	6	특수도로	65	중로3-9	1호근린공원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13	6	특수도로	20	중로3-9	소로3-31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14	6	특수도로	10	중로3-9	소로3-28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15	6	특수도로	289	중로2-6	중로3-9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16	6	특수도로	172	중로2-6	소로1-4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17	6	특수도로	242	소로1-4	36호 공공공지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18	6	특수도로	29	중로2-6	소로3-44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19	6	특수도로	29	소로3-44	소(특)3-117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20	6	특수도로	31	소로3-47	회룡천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21	6	특수도로	30	중로2-6	소로3-56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22	6	특수도로	10	소로2-11	서축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23	6	특수도로	10	소로2-11	서축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24	6	특수도로	14	46호 공공공지	소로3-67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25	6	특수도로	18	중로2-6	소로3-70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26	6	특수도로	28	중로2-6	소로3-72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27	6	특수도로	28	중로2-6	소로3-76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28	6	특수도로	28	중로2-6	소로3-81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29	6	특수도로	19	중로2-6	소로3-85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30	6	특수도로	38	중로1-3	소로3-42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31	6	특수도로	37	소로3-66	서측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소로	3	132	6	국지도로	6	중로2-6	2호학교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기정	소로	3	133	6	국지도로	116	소로2-5	소로3-8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기정	소로	3	134	6	국지도로	116	소로2-5	소로3-8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기정	소로	3	135	6	국지도로	116	소로2-5	소로3-8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기정	소로	3	136	6	국지도로	334	소로2-4	소로2-4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기정	소로	3	137	6	국지도로	114	소로2-4	소로3-13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기정	소로	3	138	6	국지도로	112	소로2-4	소로3-136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기정	소로	3	139	6	국지도로	274	소로2-4	소로2-4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기정	소로	3	140	6	국지도로	64	소로2-4	소로3-139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기정	소로	3	141	6	국지도로	62	소로2-4	소로3-139	일반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기정	소로	3	142	6	특수도로	27	중로2-5	소로3-136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43	6	특수도로	37	소로3-136	소로3-137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기정	소로	3	144	6	특수도로	40	소로3-137	소로3-138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기정	소로	3	145	6	특수도로	40	소로3-138	소로3-136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기정	소로	3	146	6	특수도로	10	소로3-136	동측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기정	소로	3	147	6	특수도로	10	소로3-139	동측지구계	보행자전용도로	-	전라남도고시 제2018-151호 (2018.5.17.)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3-75	소로 3-75	•도로 변경 -B=6m(폭원 변경없음) -L=17→75m	•단절된 지구의 관습로 연결을 위해 도로 선형 및 종점부 변경으로 도로 연장 변경

2)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8개소	9,859	-	9,859		
기정	1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 232-5답 일원	2,099	-	2,099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222-12답 일원	995	-	995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3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328-1잡 일원	1,036	-	1,036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4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955-26구 일원	920	-	920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5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931전 일원	1,369	-	1,369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6	주차장	수북면 주평리816-4답 일원	1,314	-	1,314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변경	7	주차장	수북면 주평리701-1전 일원	1,290	-	1,290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부지형상 변경 (면적 동일)
기정	8	주차장	담양읍 가산리504-2답 일원	836	-	836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 주차장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노외주차장	•부지형상 변경(면적 및 위치 변경없음)	•지구외 관습로 연결도로(소로3-75호선) 계획으로 주차장 면적이 축소되어 주차장 면적 유지를 위해 부지형상을 변경

3) 공간시설(광장)

-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개소	818	-	818		
기정	1	광장	근린광장	담양읍 가산리 329-7대 일원	818	-	818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4)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1개소	216,592	-	216,592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수북면 주평리 산7임 일원	199,169	-	199,169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220-2답 일원	3,275	-	3,275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산54-8임 일원	1,506	-	1,506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498-5답 일원	2,104	-	2,104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481-1답 일원	1,715	-	1,715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담양읍 가산리471-5답 일원	1,543	-	1,543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6	공원	어린이공원	수북면 주평리812-3답 일원	1,643	-	1,643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7	공원	어린이공원	수북면 주평리815-10답 일원	2,700	-	2,700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변경	8	공원	어린이공원	수북면 주평리701-1전 일원	1,503	-	1,503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부지형상 변경 (면적 동일)
기정	1	공원	소공원	담양읍 가산리505-1답 일원	851	-	851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	공원	소공원	담양읍 가산리505-2답 일원	583	-	583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어린이공원	•부지형상 변경(면적 및 위치 변경없음)	•지구와 관습로 연결도로(소로3-75호선) 계획으로 어린이공원 면적이 축소되어 어린이공원 면적 유지를 위해 부지형상을 변경

5) 공간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합계			9개소	75,493	감 12	75,481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담양읍 가산리 233-5답 일원	4,146		4,146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담양읍 가산리 472-2답 일원	10,344		10,344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담양읍 가산리 471-2답 일원	928		928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4	녹지	완충녹지	수북면 주평리 812-4답 일원	6,440		6,440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변경	1	녹지	경관녹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36,033	감) 12	36,021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담양읍 가산리 산61-2임 일원	13,412	-	13,412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변경	3	녹지	경관녹지	수북면 주평리 821-1답 일원	1,933	증) 4	1,937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변경	4	녹지	경관녹지	수북면 주평리 831-2답 일원	1,604	감) 4	1,600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5	녹지	경관녹지	수북면 주평리 836-1답 일원	653	-	653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 녹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녹지	•변경(면적:36,033→36,021㎡, 감 12㎡)	•가스공급설비(도시가스정압기) 설치를 위해 경관녹지 변경
3	경관녹지	•변경(면적:1,933→1,937㎡, 증 4㎡)	•지구외 관습로 연결도로(소로3-75호선) 계획으로 경관녹지 변경
4	경관녹지	•변경(면적:1,604→1,600㎡, 감 4㎡)	•지구외 관습로 연결도로(소로3-75호선) 계획으로 경관녹지 변경

6) 공간시설(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8개소	38,262	-	38,262		
기정	3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221-7답 일원	833	-	833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4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222-9답 일원	942	-	942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5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64-2도 일원	2,688	-	2,688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6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7-37구 일원	125	-	125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7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27답 일원	922	-	922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8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5-5답 일원	682	-	682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10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371	-	371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11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529	-	529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12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647	-	647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13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4-8임 일원	322	-	322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14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613	-	613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15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산52-1임 일원	605	-	605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16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산9임 일원	659	-	659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17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4-1답 일원	1,160	-	1,160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8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7-29구 일원	409	-	409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19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82-1답 일원	279	-	279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0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36전 일원	907	-	907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1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35전 일원	353	-	353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2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15-2전 일원	501	-	501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3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15-4답 일원	1,030	-	1,030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4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6-4답 일원	827	-	827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5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7-2답 일원	480	-	480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6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9-2답 일원	719	-	719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7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2-15답 일원	185	-	185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8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2-15답 일원	304	-	304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9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5-10답 일원	777	-	777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30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5-7답 일원	626	-	626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31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5-2답 일원	283	-	283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32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03임 일원	110	-	110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3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904-1도 일원	698	-	698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34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20도 일원	690	-	690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35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471-10답 일원	505	-	505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36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17도 일원	177	-	177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37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17도 일원	242	-	242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38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18도 일원	831	-	831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39	공공공지	담양읍 가산리 506-18도 일원	230	-	230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40	공공공지	수북면 두정리 185-2전 일원	2,797	-	2,797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41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2-1답 일원	694	-	694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42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4-3 답 일원	958	-	958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43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4-9답 일원	449	-	449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44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4-10답 일원	599	-	599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45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5-12답 일원	288	-	288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46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5-14답 일원	732	-	732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47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6-7 답 일원	614	-	614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8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0-8답 일원	144	-	144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49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0-6답 일원	495	-	495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50	공공공지	수북면 두정리 323-7답 일원	902	-	902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51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1-7답 일원	750	-	750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52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7-1답 일원	606	-	606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53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26-10답 일원	594	-	594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54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34-1 답 일원	282	-	282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55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37-2답 일원	371	-	371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56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37-2답 일원	2,457	-	2,457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57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46-8도 일원	423	-	423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58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46-2도 일원	550	-	550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59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795답 일원	786	-	786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60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796답 일원	401	-	401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61	공공공지	수북면 주평리 815-3답 일원	109	-	109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7) 유통 및 공급시설(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간선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km)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수도공급설비 (송수관로)	대전면 서옥리 416-3	담양읍 가산리 432-4	수북면 나산리	11.84 (0.79)	78,221 (3,579)	전라남도고시 제2006-30호 (2006.3.6.)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 () 는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내 연장, 면적임

8) 유통 및 공급시설(가스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	증	12	12	-
신설	1	가스공급설비	수북면 주평리 산10임 일원	-	증	12	12	-

- 가스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가스공급설비	•신설(면적 : 12㎡, 위치 : 수북면 주평리 산10임 일원)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지역정압기 설치를 위해 가스공급설비 신설

9) 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2,833	-	2,833	-	
기정	1	공공청사	-	담양읍 가산리 228-6답 일원	2,833	-	2,833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10)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기정	2개소	22,024	감 18,438	3,586	-	
				변경	1개소					
기정	1	학교	유치원	담양읍 가산리 292-4전 일원		3,586	-	3,586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폐지	2	학교	중·고등학교	담양읍 가산리 915-2전 일원		18,438	감 18,438	-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중·고등학교	•폐지 (면적 : 18,438㎡, 위치 : 담양읍 가산리 915-2전 일원)	•비인가 대안학교(국제학교)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토지용도 분류 변경(학교용지→교육연구시설) 및 도시 계획시설(학교) 폐지

11) 방재시설(하천)

-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소하천 (가산천)	하천	담양읍 가산리 479-2	담양읍 가산리 507-3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0.05	14	842	전라남도고시 제2016-427호 (2016.11.10.)	
기정	2	소하천 (회룡천)	하천	수북면 두정리 185-2	담양읍 가산리 227-13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2.16	12~24	40,586	전라남도고시 제2016-427호 (2016.11.10.)	
기정	3	소하천 (구련천)	하천	수북면 주평리 815-1	수북면 주평리 827-1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0.82	12~14	8,756	전라남도고시 제2016-427호 (2016.11.10.)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6-427호(2016.11.10.)에 의한 군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12) 방재시설(저수지)

- 저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개소	47,937	-	47,937	-	
기정	1	고가제	저수지	담양읍 가산리 298-6유 일원	47,937	-	47,937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13) 방재시설(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4개소	25,454	-	25,454	-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담양읍 가산리 227-1답 일원	9,461	-	9,461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담양읍 가산리 281답 일원	5,172	-	5,172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3	유수지	저류시설	수북면 주평리 814-13답 일원	2,761	-	2,761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기정	4	유수지	저류시설	수북면 주평리 836-9답 일원	8,060	-	8,060	전라남도고시 제2016-331호 (2016.9.8.)	

※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사항임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참조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단독1	1	2,220	-1	471	
			-2	439	
			-3	439	
			-4	439	
			-5	432	
	2	2,113	-1	414	
			-2	427	
			-3	427	
			-4	427	
			-5	418	
	3	4,673	-1	517	
			-2	489	
			-3	475	
			-4	460	
			-5	439	
			-6	430	
			-7	454	
			-8	467	
			-9	481	
			-10	461	
	4	4,157	-1	448	
			-2	431	
			-3	426	
			-4	402	
			-5	364	
			-6	368	
			-7	402	
			-8	424	
			-9	428	
			-10	46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5	4,591	-1	500	
			-2	486	
			-3	468	
			-4	449	
			-5	436	
			-6	458	
			-7	439	
			-8	448	
			-9	457	
			-10	450	
	6	3,779	-1	417	
			-2	402	
			-3	391	
			-4	354	
			-5	391	
			-6	337	
			-7	362	
			-8	370	
			-9	377	
			-10	378	
	7	2,406	-1	468	
			-2	472	
			-3	472	
			-4	472	
			-5	522	
	8	1,448	-1	484	
			-2	484	
			-3	480	
단독2	1	2,053	-1	502	
			-2	517	
			-3	517	
			-4	51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2	1,719	-1	589	
			-2	589	
			-3	541	
	3	2,509	-1	516	
			-2	506	
			-3	506	
			-4	506	
			-5	475	
	4	4,384	-1	450	
			-2	437	
			-3	437	
			-4	437	
			-5	431	
			-6	450	
			-7	437	
			-8	437	
			-9	437	
			-10	431	
	5	2,540	-1	522	
			-2	506	
			-3	506	
			-4	506	
			-5	500	
	6	5,371	-1	512	
			-2	550	
			-3	550	
			-4	550	
			-5	544	
			-6	511	
			-7	491	
			-8	525	
			-9	54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7	830	-10	591	
			-1	415	
			-2	415	
	8	2,453	-1	615	
			-2	615	
			-3	615	
			-4	608	
	9	1,383	-1	467	
			-2	456	
			-3	460	
	10	2,071	-1	551	
			-2	515	
			-3	502	
			-4	503	
단독3	1	3,294	-1	546	
			-2	550	
			-3	550	
			-4	550	
			-5	550	
			-6	548	
	2	1,154	-1	560	
			-2	594	
	3	2,515	-1	488	
			-2	510	
			-3	510	
			-4	510	
			-5	497	
	4	4,594	-1	444	
			-2	464	
			-3	464	
			-4	464	
			-5	46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6	462	
			-7	464	
			-8	464	
			-9	464	
			-10	444	
	5	2,107	-1	513	
			-2	540	
			-3	540	
			-4	514	
	6	4,054	-1	455	
			-2	513	
			-3	513	
			-4	507	
			-5	527	
			-6	533	
			-7	533	
			-8	473	
단독4	1	1,269	-1	458	
			-2	397	
			-3	414	
	2	2,328	-1	387	
			-2	382	
			-3	393	
			-4	387	
			-5	386	
			-6	393	
	3	2,349	-1	387	
			-2	391	
			-3	393	
			-4	390	
			-5	395	
			-6	39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4	2,522	-1	414	
			-2	408	
			-3	402	
			-4	430	
			-5	437	
			-6	431	
	5	1,650	-1	413	
			-2	414	
			-3	412	
			-4	411	
	6	1,738	-1	434	
			-2	434	
			-3	436	
			-4	434	
	7	2,116	-1	443	
			-2	517	
			-3	419	
			-4	369	
			-5	368	
	8	1,738	-1	436	
			-2	433	
			-3	437	
			-4	432	
	9	2,550	-1	421	
			-2	427	
			-3	427	
			-4	421	
			-5	427	
			-6	427	
	10	874	-1	437	
			-2	43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1	1,700	-1	405	
			-2	459	
			-3	418	
			-4	418	
	12	930	-1	469	
			-2	461	
	13	2,923	-1	395	
			-2	441	
			-3	608	
			-4	492	
			-5	492	
			-6	495	
단독5	1	1,724	-1	541	
			-2	595	
			-3	588	
	2	1,389	-1	412	
			-2	495	
			-3	482	
단독6	1	3,561	-1	481	
			-2	459	
			-3	393	
			-4	372	
			-5	371	
			-6	371	
			-7	372	
			-8	371	
			-9	371	
	2	2,247	-1	487	
			-2	440	
			-3	440	
			-4	440	
			-5	44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1,984	-1	497	
			-2	489	
			-3	499	
			-4	499	
	4	3,509	-1	434	
			-2	441	
			-3	441	
			-4	439	
			-5	437	
			-6	441	
			-7	441	
			-8	435	
	5	3,486	-1	434	
			-2	441	
			-3	441	
			-4	435	
			-5	418	
			-6	441	
			-7	441	
			-8	435	
	6	2,729	-1	401	
			-2	399	
			-3	422	
			-4	365	
			-5	332	
			-6	402	
			-7	408	
	7	4,054	-1	412	
			-2	451	
			-3	451	
			-4	445	
			-5	44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6	451	
			-7	451	
			-8	451	
			-9	497	
	8	4,657	-1	454	
			-2	470	
			-3	470	
			-4	470	
			-5	463	
			-6	465	
			-7	470	
			-8	470	
			-9	470	
			-10	455	
	9	4,923	-1	454	
			-2	470	
			-3	470	
			-4	470	
			-5	467	
			-6	521	
			-7	522	
			-8	522	
			-9	522	
			-10	505	
	10	2,268	-1	437	
			-2	459	
			-3	459	
			-4	459	
			-5	454	
	11	2,308	-1	577	
			-2	572	
			-3	577	
			-4	58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2	1,144	-1	380	
			-2	386	
			-3	378	
	13	2,083	-1	473	
			-2	538	
			-3	538	
			-4	534	
단독7	1	1,878	-1	430	
			-2	433	
			-3	431	
			-4	584	
	2	2,656	-1	474	
			-2	495	
			-3	423	
			-4	423	
			-5	495	
			-6	346	
	3	3,187	-1	517	
			-2	436	
			-3	343	
			-4	379	
			-5	385	
			-6	377	
			-7	378	
			-8	372	
	4	870	-1	400	
			-2	470	
단독8	1	2,298	-1	526	
			-2	576	
			-3	586	
			-4	61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2	3,320	-1	596	
			-2	537	
			-3	544	
			-4	545	
			-5	537	
			-6	561	
	3	3,405	-1	570	
			-2	567	
			-3	567	
			-4	568	
			-5	567	
			-6	566	
	4	2,917	-1	545	
			-2	517	
			-3	498	
			-4	479	
			-5	460	
			-6	418	
	5	2,039	-1	475	
			-2	456	
			-3	514	
			-4	594	
	6	1,124	-1	399	
			-2	368	
			-3	357	
단독9	1	1,236	-1	414	
			-2	408	
			-3	414	
	2	1,334	-1	323	
			-2	348	
			-3	323	
			-4	34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1,895	-1	377	
			-2	380	
			-3	381	
			-4	379	
			-5	378	
	4	6,682	-1	456	
			-2	574	
			-3	475	
			-4	485	
			-5	463	
			-6	442	
			-7	387	
			-8	512	
			-9	518	
			-10	529	
			-11	540	
			-12	477	
			-13	384	
			-14	440	
	5	2,008	-1	365	
			-2	356	
			-3	369	
			-4	449	
			-5	469	
	6	3,413	-1	511	
			-2	452	
			-3	408	
			-4	396	
			-5	396	
			-6	396	
			-7	396	
			-8	45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단독10	7	1,066	-1	475	
			-2	591	
	1	2,567	-1	645	
			-2	622	
			-3	645	
			-4	655	
	2	3,028	-1	816	필지합병 불가, 분할 가능 (단, 면적 330㎡ 이하로 분할 불가)
			-2	731	
			-3	763	
			-4	718	
	3	626	-	626	
	4	3,136	-1	510	
			-2	507	
			-3	331	
			-4	592	
			-5	459	
			-6	383	
			-7	354	
	5	6,385	-1	554	
			-2	585	
			-3	585	
			-4	585	
			-5	574	
			-6	616	
			-7	586	
			-8	585	
			-9	585	
			-10	585	
			-11	545	
	6	534	-	534	
	7	2,813	-1	492	
			-2	48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482	
			-4	475	
			-5	475	
			-6	405	
	8	2,870	-1	478	
			-2	487	
			-3	487	
			-4	487	
			-5	493	
			-6	438	
	9	1,416	-1	435	
			-2	472	
			-3	509	
	10	1,176	-1	588	
			-2	588	
	11	2,396	-1	411	
			-2	407	
			-3	390	
			-4	394	
			-5	400	
			-6	394	
	12	1,598	-1	528	
			-2	523	
			-3	547	
단독11	1	2,632	-1	523	
			-2	519	
			-3	532	
			-4	529	
			-5	529	
	2	3,648	-1	398	
			-2	407	
			-3	40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4	407	
			-5	407	
			-6	407	
			-7	407	
			-8	407	
			-9	401	
	3	1,978	-1	390	
			-2	396	
			-3	396	
			-4	396	
			-5	400	
	4	3,481	-1	509	
			-2	567	
			-3	560	
			-4	466	
			-5	472	
			-6	471	
			-7	436	
	5	4,478	-1	442	
			-2	568	
			-3	567	
			-4	561	
			-5	560	
			-6	565	
			-7	565	
			-8	650	
	6	5,477	-1	375	
			-2	569	
			-3	568	
			-4	567	
			-5	561	
			-6	56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7	565	
			-8	565	
			-9	564	
			-10	583	
	7	6,512	-1	374	
			-2	522	
			-3	568	
			-4	568	
			-5	567	
			-6	560	
			-7	560	
			-8	566	
			-9	565	
			-10	564	
			-11	517	
			-12	581	
	8	7,452	-1	355	
			-2	522	
			-3	522	
			-4	568	
			-5	568	
			-6	567	
			-7	560	
			-8	560	
			-9	566	
			-10	565	
			-11	564	
			-12	517	
			-13	516	
			-14	502	
	9	8,538	-1	577	
			-2	58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582	
			-4	634	
			-5	634	
			-6	633	
			-7	626	
			-8	627	
			-9	633	
			-10	634	
			-11	634	
			-12	582	
			-13	583	
			-14	577	
단독12	1	3,100	-1	351	
			-2	517	
			-3	511	
			-4	511	
			-5	517	
			-6	348	
			-7	345	
	2	5,043	-1	416	
			-2	388	
			-3	495	
			-4	504	
			-5	506	
			-6	511	
			-7	518	
			-8	517	
			-9	424	
			-10	349	
			-11	415	
	3	6,588	-1	545	
			-2	54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549	
			-4	549	
			-5	549	
			-6	542	
			-7	543	
			-8	550	
			-9	550	
			-10	549	
			-11	549	
			-12	564	
	4	9,307	-1	575	
			-2	584	
			-3	584	
			-4	584	
			-5	584	
			-6	583	
			-7	583	
			-8	577	
			-9	578	
			-10	584	
			-11	584	
			-12	584	
			-13	583	
			-14	583	
			-15	583	
	5	9,307	-16	574	
			-1	575	
			-2	584	
			-3	584	
			-4	584	
			-5	584	
			-6	58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7	583	
			-8	577	
			-9	578	
			-10	584	
			-11	584	
			-12	584	
			-13	583	
			-14	583	
			-15	583	
			-16	574	
	6	2,381	-1	571	
			-2	609	
			-3	604	
			-4	597	
	7	4,312	-1	616	
			-2	619	
			-3	595	
			-4	584	
			-5	637	
			-6	636	
			-7	625	
	8	2,476	-1	688	필지합병 불가, 분할 가능 (단, 면적 330㎡ 이하로 분할 불가)
			-2	600	
			-3	576	
			-4	612	
	9	4,421	-1	570	
			-2	539	
			-3	552	
			-4	552	
			-5	552	
			-6	55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7	552	
			-8	552	
	10	3,548	-1	387	
			-2	528	
			-3	528	
			-4	528	
			-5	528	
			-6	528	
			-7	521	
	11	5,989	-1	426	
			-2	589	
			-3	589	
			-4	589	
			-5	582	
			-6	582	
			-7	588	
			-8	588	
			-9	588	
			-10	435	
			-11	433	
	12	3,695	-1	583	
			-2	542	
			-3	536	
			-4	536	
			-5	542	
			-6	542	
			-7	414	
	13	1,738	-1	586	
			-2	564	
			-3	588	
	14	4,169	-1	590	
			-2	59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592	
			-4	643	
			-5	576	
			-6	583	
			-7	587	
	15	2,412	-1	492	
			-2	480	
			-3	480	
			-4	480	
			-5	480	
단독13	1	2,932	-1	593	
			-2	585	
			-3	586	
			-4	587	
			-5	581	
	2	2,238	-1	557	
			-2	559	
			-3	554	
			-4	568	
	3	2,194	-1	554	
			-2	546	
			-3	548	
			-4	546	
	4	1,050	-1	522	
			-2	528	
	5	7,168	-1	609	
			-2	542	
			-3	569	
			-4	597	
			-5	624	
			-6	656	
			-7	64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8	619	
			-9	593	
			-10	568	
			-11	542	
			-12	603	
	6	6,713	-1	493	
			-2	478	
			-3	525	
			-4	573	
			-5	621	
			-6	670	필지합병 불가, 분할 가능 (단, 면적 330㎡ 이하로 분할 불가)
			-7	668	
			-8	619	
			-9	572	
			-10	526	
			-11	479	
			-12	489	
	7	6,311	-1	481	
			-2	466	
			-3	501	
			-4	536	
			-5	570	
			-6	605	
			-7	604	
			-8	570	
			-9	536	
			-10	501	
			-11	465	
			-12	476	
	8	5,832	-1	618	
			-2	576	
			-3	57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4	576	
			-5	570	
			-6	570	
			-7	576	
			-8	576	
			-9	576	
			-10	618	
	9	5,829	-1	617	
			-2	576	
			-3	576	
			-4	576	
			-5	570	
			-6	570	
			-7	576	
			-8	576	
			-9	576	
			-10	616	
	10	5,827	-1	616	
			-2	576	
			-3	576	
			-4	576	
			-5	570	
			-6	570	
			-7	576	
			-8	576	
			-9	576	
			-10	615	
	11	5,580	-1	589	
			-2	552	
			-3	552	
			-4	552	
			-5	54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6	546	
			-7	552	
			-8	552	
			-9	552	
			-10	588	
	12	3,681	-1	517	
			-2	480	
			-3	480	
			-4	540	
			-5	475	
			-6	576	
			-7	613	
	13	4,072	-1	610	
			-2	585	
			-3	580	
			-4	584	
			-5	579	
			-6	390	
			-7	384	
			-8	360	
단독14	1	1,851	-1	615	
			-2	621	
			-3	615	
	2	2,282	-1	561	
			-2	594	
			-3	594	
			-4	533	
	3	1,932	-1	476	
			-2	483	
			-3	480	
			-4	49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4	3,357	-1	480	필지합병 불가, 분할 가능 (단, 면적 330㎡ 이하로 분할 불가)
			-2	622	
			-3	681	
			-4	457	
			-5	568	
			-6	549	
	5	1,279	-1	332	
			-2	471	
			-3	476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1	1	27,936	-	27,936	A2블록(분양+임대)외의 획지는 분할 불허
A2	2	36,117	-	36,117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근린1	1	2,043	-1	1,036	필지합병 불가, 분할 가능 (단, 면적 330㎡ 미만으로 분할 불가)
			-2	1,007	
	2	1,851	-1	914	필지합병 불가, 분할 가능 (단, 면적 330㎡ 미만으로 분할 불가)
			-2	937	
근린2	1	1,606	-1	803	필지합병 불가, 분할 가능 (단, 면적 330㎡ 미만으로 분할 불가)
			-2	803	
	2	2,582	-1	856	필지합병 불가, 분할 가능 (단, 면적 330㎡ 미만으로 분할 불가)
			-2	848	
			-3	878	
근린3	1	2,625	-1	840	필지합병 불가, 분할 가능 (단, 면적 330㎡ 미만으로 분할 불가)
			-2	958	
			-3	82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2	1,564		1,564	필지합병 불가, 분할 가능 (단, 면적 330㎡ 미만으로 분할 불가)
근린4	1	2,068	-1	686	필지합병 불가, 분할 가능 (단, 면적 330㎡ 미만으로 분할 불가)
			-2	678	
			-3	704	
	2	1,512	-1	743	필지합병 불가, 분할 가능 (단, 면적 330㎡ 미만으로 분할 불가)
			-2	769	
근린5	1	1,614	-1	809	필지합병 불가, 분할 가능 (단, 면적 330㎡ 미만으로 분할 불가)
			-2	805	
	2	1,402	-1	700	필지합병 불가, 분할 가능 (단, 면적 330㎡ 미만으로 분할 불가)
			-2	702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라)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1) 근린상업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근상1	1	2,402		2,402	필지 합병 및 분할 불가 (단, 인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660㎡초과 10,000㎡미만 범위내에서 분할 또는 합병 가능)
	2	2,350	-1	1,178	
			-2	1,172	
	3	9,732	-1	1,331	
			-2	1,315	
			-3	1,315	
			-4	1,003	
			-5	1,639	
			-6	1,433	
			-7	1,696	
	4	3,596	-1	1,845	
			-2	1,751	
근상2	1	1,526	-1	734	
			-2	792	
	2	3,205	-1	725	
			-2	750	
			-3	929	
			-4	801	
	3	2,361		2,361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유통상업시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유상1	-	10,303	-	10,303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마) 기타 · 공공시설용지(변경)

(1) 공공청사(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청1		2,833	담양읍 가산리 228-6답 일원	2,833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1개시 설	2,833		2,833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2) 커뮤니티센터(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커1	-	1,222	담양읍 가산리 220 답 일원	1,222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커2	-	1,107	담양읍 가산리 산55-2임 일원	1,107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커3	-	1,170	담양읍 가산리 481-3 답 일원	1,170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커4	-	1,006	담양읍 가산리 471-4 답 일원	1,006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커5	-	801	수북면 주평리 812-4 답 일원	801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커6	-	1,196	수북면 주평리 815-11 답 일원	1,196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커7	기정	-	수북면 주평리 826-1 답 일원	1,031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변경	-	수북면 주평리 826-1 답 일원	674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기정	7개 시설	7,533		7,533	
변경	7개 시설	7,176		7,176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3) 의료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의1	-	6,578	담양읍 가산리 232-7답 일원	6,578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1개시설	6,578		6,578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4) 문화복합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문1	-	13,544	담양읍 가산리 935-1전 일원	13,544	필지분할 및 합병불허
	1개시설	13,544		13,544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5) 주차장(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주1	-	2,099	담양읍 가산리 232-5답 일원	2,099	
주2	-	995	담양읍 가산리 222-12답 일원	995	
주3	-	1,036	담양읍 가산리 288-1잡 일원	1,036	
주4	-	920	담양읍 가산리 955-26구 일원	920	
주5	-	1,369	담양읍 가산리 931전 일원	1,369	
주6	-	1,314	수북면 주평리 816-4답 일원	1,314	
주7	기정	-	수북면 주평리 701-1전 일원	1,290	
	변경	-	수북면 주평리 701-1전 일원	1,290	부지형상 변경 (면적 동일)
	8개시설	9,859	-	9,859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6) 교육연구시설(신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교1	-	18,438	담양읍 가산리 915-2전 일원	18,438	신설
	1개시설	18,438	-	18,438	

(7) 가스공급설비(신설)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가1	-	12	수북면 주평리 산10임 일원	12	신설
	1개시설	12	-	12	

(8) 교육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유1	-	3,586	담양읍 가산리 292-4전 일원	3,586	유치원
학1	기정	18,438	담양읍 가산리 915-2전 일원	18,438	중·고등학교 폐지
	폐지	-	-	-	
기정	2개시설	22,024	-	22,024	
변경	1개시설	3,586	-	3,586	

※기정은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4) 건축물에 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가)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 1~14	공통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별표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주택의 경우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공통	높이(층)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단독1		점포주택용지의 경우 1층 전부를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3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단독3, 5~7		작물재배가 가능한 단독주택용지는 1층 전부를 필로티 또는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4층까지 건축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3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공통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지붕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수평투영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범위에 경사는 세로 : 가로 비율이 1:1 ~ 1:3 범위로 한다. - 경사지붕 설치 외 면적은 옥상녹화 등 조경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종설비(물탱크·에어컨실외기 등)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 지붕에 태양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태양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경사가 10분의 30이상 10분의 70이하인 경사형 지붕을 설치하도록 하며, 지붕면적의2/3이상을 경사형 지붕으로 한다. - 담장 및 대문 -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0.8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대문은 투시형, 담장은 생울타리형, 목책, 자연재료 등을 사용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외벽 - 건축물 외벽면의 의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샌드위치 패널 및 마감하지 않은 골조의 노출은 금지하고, 재료 자체가 의장적 효과를 위해 쓰여진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재료로 마감하도록 한다. 단, 단독주택용지내 작물재배소가 설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단독주택용지내 건축물의 1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여야 하며,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창 규격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창틀은 벽면의 색채와 동일하거나 무채색 계열로 조성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11>를 따른다. • 색채 및 재료 - 건축물의 색채적용범위는 <별표12>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도로경계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공지는 보행안전을 위한 공간(진·출입공간 포함)과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한다. • 진·출입공간은 6m이상 확보한다. • 전면공지는 다음의 조성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단차리 : 단독주택용지에서 건축선 지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면공지는 대지의 영역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를 다르게 한다. - 포장 : 포장패턴 조성시 대지의 영역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포장의 재료나 색채를 다르게 포장한다.
단독 1~14	공동	차량 진출입 및 주차장	•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지정된 곳에서는 차량진출입을 할 수 없으며, 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없는 획지의 차량 진·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차량 진·출입구는 획지에 접한 도로 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기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의 설치, 형태 및 위치 -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가구당 2대 이상과 '담양군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 점포주택의 경우는 1가구당 2대 이상과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담양군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 주차장의 형태는 일단의 구획이 된 지주식 주차장으로 하고, 주차구획안의 포장은 친환경적 포장소재(잔디블록 권장)로 인접 포장과 구별되게 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위치는 주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접필지 경계부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차장이 설치된 단독 4BL의 경우는 대지내 부설주차장은 1가구당 1대 이상 확보하고, 공동주차장은 다음에 따라 조성한다. 1. 수목을 활용하여 그늘을 조성하고, 재활용보관소를 설치를 권장한다. 2. 커뮤니티 공간(공동주차장, 주민교류공간)을 공동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내 모든 필지 소유주의 동의서와 계획안을 제출하여 허가권자(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득하고, 공동의 비용으로 공동조성 및 사용·관리하도록 한다. 3. 주차장부지내에는 조경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시설(정자 등 유사시설 제외)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부설주차장은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범죄예방 을 위한 계획	• 안전도시 조성계획은 <별표6>의 기준에 따른다.
		친환경 계획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10>의 생태면적률에 따른다.
		기타사항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은 <별표7>의 기준에 따른다. • U-City 계획은 <별표8>을 따른다.

< 별표1 >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1 (전용주택지)	R2 (점포주택지)	R3 (단독주택+작물재배지)
	허용용도	-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 (단, 다중주택제외)	-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 (단, 다중주택 제외) -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 - 제1종근린생활시설 (단, 1층 및 지하층에 한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지하층 포함)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음)	-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 (단, 다중주택 제외) - 공동주택중 다세대주택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작물 재배소, 온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규모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80% 이하	150% 이하	180% 이하
	최고층수	2층 이하	4층 이하	4층 이하
해당블럭		단독2, 4, 8~14	단독1	단독3, 5~7

나)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사항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2	공동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4>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5>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5>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높이(층)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5>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별표5>에 규정된 주택유형에 적합하게 하되 개발계획상의 세대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주부출입구의 중심점에서 대상지측으로 연장한 선으로부터 양측으로 9m이상 이격하여 건축물을 배치하여야 한다. - 건축선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와외곽경계 중 도로변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주행차량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대지와외곽경계 중 보행자전용도로와 공원변에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풍부한 녹지환경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을 지정한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침도에 따른다. 단, 지침도에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법」상 건축선으로부터 최소 4.5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외관 및 형태	- 주동형식의 다양화 - 단지의 획일적 경관과 단조로움을 피하고 주동 형식의 다양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동형태를 차별화하여 주동형식을 다양화 할 것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2. 주동의 높이가 일률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층수 변화를 다양화 할 것 3. 하나의 주동 또는 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평면 및 단면 형태로 계획할 것 - 동일 단지 안에서 300세대 이상 또는 5동 이상일 경우, 주동형식을 2가지 타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주거동의 길이제한 및 층수변화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과 질서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층의 호수 및 길이(이하 '주거동의 길이' 라 한다.)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4호연립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형태가 ㄱ, ㄷ, ㅁ 등 여러 방향에서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장 긴 것을 주거동 길이로 한다. - 동일 주거동내 층수에 변화를 줄 경우, 3개층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과도한 층수차이에 따른 경관적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주거동내의 층수 차이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 인접 주거동간의 층수변화 1. 인접 주거동이라 함은 각 동의 외벽간 최단거리가 10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이때 층수변화는 주동단위로 한다. 2. 인접 주거동중 가장 낮은 층이 15층 이하일 경우에는 인접 주거동간 3층 이상 층수변화를 권장한다. 다만 가장 낮은 층이 10층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A1~2	공통	외관 및 형태	• 입면의 구성 - 주거동은 옥상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이내), 중앙부(옥상부와 저층부를 제외한 부분), 저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내)로 구분하며,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옥상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탑상형 아파트인 경우와 도시경관형성에 지장이 없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0하여야 한다.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한다.(물매:세로 : 가로의 비율 = 1:2.5 범위) 3.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전용면적 60㎡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담장 및 계단 - 담장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불허한다. 다만, 안전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은 투시형으로 설치한다.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담장의 형태는 설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할 것을 권장한다. 1.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써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0미터 이하로 한다. 2.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노안임상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색채 및 재료 - 건축물의 색채적용범위는 <별표12>에 따른다.
		부대복리 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의 배치 및 형태 - 관리소, 노인정 등의 부대복리시설은보행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행자 도로변에 마주보도록 배치하거나 단지내 숲길과 연계된 광장 또는 테마형 공간(테라스 가든)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부대복리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 및 규격과 색상 등을 고려하여 입면 계획을 수립한다. 단, 연도형상가의 시설상부에 녹화계획 수립으로 도시경관향상을 도모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단지 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11>를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색채 및 재료 - 건축물의 색채적용범위는 <별표12>에 따른다. • 야간경관 -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4>에 따른다										
A1~2	공통	단지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기준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와 협의하여 도로변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40미터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간 - 하천, 보행로, 버스정차대, 가감속차선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미터 이내의 구간 • 진입차량의 대기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초소 또는 차량진출입 통제장치는 도로에서 15미터 이상 후퇴하여 설치한다. 단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또는 대지의 형상 등에 의해 이격거리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지내 차량동선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중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출입을 금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한다. • 단지 출입구를 이용하는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되고 출입구에 면하여 상가가 배치될 경우, 단지내 도로의 기존 차선에 추가하여 1개의 차선을 상가에 면하여 설치한다.										
		보행 출입구	• 단지 안에는 주변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1개 이상의 보행동선 축을 설정하여야 하며, 차도와 교차구간에는 ‘보행우선구조’ 로 조성하여야 한다.										
		주차장 설치기준	• 모든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 이외의 시설은 「담양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한다. • 공동주택용지의 단지내 주차장은 전체 주차대수의 20%이상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직접 연결하는 승강기 또는 지하주차장과 옥외공간을 직접 연결되는 승강기 및 경사로의 설치를 권장하며, 주동과 직접 연결되는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전실을 설치하고 안전과 보안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 지상주차장은 전체 주차대수의 50%이상을 ‘투수성 포장’ 으로 한다.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에 장애인 주차면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 출입구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가장 가까운 위치에 우선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 노면표시는 2줄 주차선으로 하여야 한다.										
A1~2	공통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	• 단지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 자전거보관소의 설치규모는 1개소당 다음의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table><tr><td>구 분</td><td>보관가능대수</td></tr><tr><td>주 동</td><td>주동세대수당 0.3대</td></tr><tr><td>상 가</td><td>30대</td></tr><tr><td>복지관 및 관리소</td><td>15대</td></tr><tr><td>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td><td>10대</td></tr></table> • 자전거 보관소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자전거 보관소 설치시 거치대의 외관 및 지붕을 투명창으로 하여야 한다.	구 분	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세대수당 0.3대	상 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구 분	보관가능대수												
주 동	주동세대수당 0.3대												
상 가	30대												
복지관 및 관리소	15대												
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	10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확보한 건축한계선내의 공간에는 부지 외곽의 주차장화를 방지하고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기 위해 폭 2m 이상의 산책로와 인근 아파트단지와의 프라이버시 등을 감안하여 포켓공간을 조성하고 이들 주변에는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형성하도록 한다. • 단지입구 -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분리되도록 계획하며 입구로서의 인식성, 영역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형물, 경관석, 대형목 및 문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범죄예방 을 위한 계획	• 안전도시 조성계획은 <별표6>의 기준에 따른다.
		친환경 계획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10>의 생태면적률에 따른다.
		기타사항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은 <별표7>의 기준에 따른다. • U-City 계획은 <별표8>을 따른다.

< 별표4 >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구 분		공동주택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A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종교집회장, 종교시설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럭		A1~2

< 별표 5 > 공동주택(아파트)의 유형 · 세대수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블럭명	주택유형	면적(㎡)	세대수 (세대)	인구수 (인)	평균공급 규모(㎡)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공급 유형
계	-	64,053	680	1,700					
A1	소계	27,936	322	805	-	12	50 이하	130 이하	-
	60㎡이하	2,700	40	100	80				분양
	60~85㎡이하	22,500	258	645	112				분양
	85㎡초과	2,736	24	60	145				분양
A2	소계	36,117	358	895	-	12	50 이하	130 이하	-
	60㎡이하	6,500	96	240	80				임대
	60~85㎡이하	29,617	262	655	112				분양

다)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사항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생 1~5	공통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 건축선 지정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외관 및 형태	• 지 붕 - 지붕은 수평투영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할 것을 권장한다. - 경사지붕 설치시 지붕의 경사는 4/10 이상으로 한다.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의 높이는 2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종설비(물탱크, 에어컨실외기 등)는 차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 담 장 -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0.8m 높이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외 벽 - 준주거시설용지내 건축물 외벽면의 외장, 재료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 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의 1층 외벽면은 50%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여야 하며, 셔터는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11>를 따른다. • 색채 및 재료 - 건축물의 색채적용범위는 <별표12>에 따른다.
근생 1~5	공통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도로경계와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다음의 조성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면공지”에는 차량 출입 및 주차차를 금지하며,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 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차리 : 보도 또는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인접하여 형성되는 경우 보도와 도로바닥의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3. 포장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이 조화롭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장	•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따른다. - 차량의 진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설치, 형태 및 위치 - 주차장 노면표시는 2줄 주차선으로 하여야 한다. - 부설주차장 설치의 주차장법 및 ‘담양군 주차장 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다.
		범죄예방 을 위한 계획	• 안전도시 조성계획은 <별표6>의 기준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친환경 계획	•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10>의 빗물이용시설에 따른다.
		기타사항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은 <별표7>의 기준에 따른다. • U-City 계획은 <별표8>을 따른다.

< 별표2 >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C (Residential Commercial)
	허용용도	• 제1종일반주거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단란주점제외) - 유치원, 보육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4층 이하
해당블럭		근생1~5

라) 상업시설용지(변경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사항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근상 1~2, 유상1	근상 1~2, 유상1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층)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 건축선 지정으로 확보된 전면공지는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 및 기타 유사한 시설 등 보행의 통 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단주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축물 전면	•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획지의 건축물은 전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양방향으로 모두 전면이 되게 하며, 보 행자출입구는 가급적 보행자전용도로변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외관 및 형태	• 1층부의 보행편의 및 가로경관을 위하여 건축물의 1층부에 아케이드, 차양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축물 전면의 1층 바닥높이는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0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등을 주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경사로의 경사도는 1/18 이하로 한다. • 건축물의 외벽은 전면과 측면의 구별 없이 모든 면의 마감을 동일재료로 처리하되 인접 대지의 기존 건축 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 가로미관 제고를 위한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할 경우 건축물 외벽 전면의 마감재료를 달리 할 수 있다. • 굴뚝·환기설비 등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것을 불가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담장 -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0.8m 높이 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하며, 그 기준을 따르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지붕 및 옥상 -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 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고, 도시 미관을 고려한 차폐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과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 지붕 및 옥상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지붕 면적의 30% 이상을 옥상녹화로 조성을 권장한다. •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11>를 따른다. • 색채 및 재료 - 건축물의 색채적용범위는 <별표12>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 - “전면공지”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하며,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처리 : 보도 또는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인접하여 형성되는 경우 보도와 도로바닥의 높이 차이가 없어야 조성하여야 한다. - 포장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이 조화롭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단, 에어컨실외기 등 장애물의 설치를 불허한다.
근상 1~2, 유상1	근상 1~2, 유상1	대지내 공지	• 대지안의 조경 -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축연면적이 2,000㎡ 이상 : 대지면적의 15%이상 2. 건축연면적이 1,000㎡ ~ 2,000㎡ 미만 : 대지면적의 10%이상 3. 건축연면적이 1,000㎡ 미만 : 대지면적의 5%이상 -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장	•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하는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의 위치는 지침도에 따른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관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노면표시는 2줄 주차선으로 하여야 한다.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담양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범죄예방 을 위한 계획	• 안전도시 조성계획은 <별표6>의 기준에 따른다.
		친환경 계획	•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10>의 빗물이용시설에 따른다.
		야간경관	•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4>의 상업시설용지 야간조명에 따른다.
		기타사항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은 <별표7>의 기준에 따른다. • U-City 계획은 <별표8>을 따른다.

< 별표3 > 상업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상업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C (근린상업)	Cc (유통상업)
	허용용도	• 근린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숙박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나항, 관광 숙박시설에 한함),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의료시설	• 유통상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법시행령 별표 1호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물 규모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500% 이하
	최고층수	8층 이하	8층 이하
해당블럭		근상1~2	유상1

마) 기타, 공공시설용지(변경)

○ 지정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배치 및 건축선	•건축선의 위치는 지침도에 따른다.
		외관 및 형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11>를 따른다. •색채 및 재료 - 건축물의 색채적용범위는 <별표10>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을 위하여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할 수 없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한다.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장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하는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의 위치는 지침도에 따른다.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노면표시는 2줄 주차선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담양군 주차장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다.
		범죄예방 을 위한 계획	•안전도시 조성계획은 <별표6>의 기준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친환경 계획	• 빗물이용시설 관련은 <별표10>에 따른다
		기타사항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은 <별표5>의 기준에 따른다. •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15>의 기준에 따른다. • U-City 계획은 <별표8>을 따른다.
청1	공통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4호 업무시설(가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우체국 제외) • 부수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부터 마목) ※ 부수용도의 연면적의 합은 전체 바닥면적의 20%미만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커1~7	공통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생시설 중 바목 및 사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 제11호 노유자시설 • 부수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부터 마목) ※ 부수용도의 연면적의 합은 전체 바닥면적의 20%미만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층)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기타사항	• 커뮤니티센터 폐기물 거점수거대 설치계획은 <별표9>에 따른다.
의료1	공통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부수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제외) ※ 부수용도의 연면적의 합은 전체 바닥면적의 30%미만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층)	• 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차량 진출입 및 주차장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의료시설의 차량출입은 2곳 이상 확보하여, 외래이용자 및 응급환자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한다.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은 외래이용객용과 직원용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문화1	공통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부수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단란주점 제외) ※ 부수용도의 연면적의 합은 전체 바닥면적의 30%미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층)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주1~8	주1~2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 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음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층)	•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주3~8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 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단란주점 제외)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음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층)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배치 및 건축선	•건축선의 위치는 지침도에 따른다.
		외관 및 형태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옥외광고물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11>를 따른다. •색채 및 재료 - 건축물의 색채적용범위는 <별표10>에 따른다.
		대지내 공지	•전면공지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을 위하여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 을 설치할 수 없다.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는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한다. -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 하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장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하는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 다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의 위치는 지침도에 따른다. - 중로 2-6호선변 교육연구시설 부출입구의 출입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항에 의한 ‘긴급자동차’ 만 허용 하고, 그 외 차량은 주출입구의 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노면표시는 2줄 주차선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담양군 주차장조례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다.
		범죄예방 을 위한 계획	•안전도시 조성계획은 <별표6>의 기준에 따른다.
		친환경 계획	•빗물이용시설 관련은 <별표10>에 따른다
		기타사항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계획은 <별표5>의 기준에 따른다. •공공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별표15>의 기준에 따른다. •U-City 계획은 <별표8>을 따른다.
청1	공통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4호 업무시설(가목)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목, 우체국 제외) • 부수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부터 마목) ※ 부수용도의 연면적의 합은 전체 바닥면적의 20%미만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150%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커1~7	공통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3호 제1종근생시설 중 바목 및 사목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라목 - 제11호 노유자시설 • 부수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부터 마목) ※ 부수용도의 연면적의 합은 전체 바닥면적의 20%미만
		건폐율	• 50% 이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용적률	• 80% 이하
		높이(층)	• 3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기타사항	• 커뮤니티센터 폐기물 거점수거대 설치계획은 <별표9>에 따른다.
의료1	공통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 부수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부수용도의 연면적의 합은 전체 바닥면적의 30%미만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층)	• 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차량 진출입 및 주차장	•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의료시설의 차량출입은 2곳 이상 확보하여, 외래이용자 및 응급환자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한다.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은 외래이용객용과 직원용을 분리하여 설치한다.
문화1	공통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2호 수련시설 • 부수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부수용도의 연면적의 합은 전체 바닥면적의 30%미만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주1~8	주1~2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음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500% 이하
		높이(층)	• 8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3~8	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1항(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에 의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설소, 단란주점 제외)과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음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교1 (신설)	공통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음의 용도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기숙(학교), 리목(학원) - 부수용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제2호 공동주택 중 리목(기숙사) ※ 부수용도의 연면적의 합은 전체 바닥면적의 30%미만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가1 (신설)	공통	용도	• 도사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가스공급설비 중 가스공급시설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바) 교육시설용지(변경)

○ 지정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차량 진출입 및 주차장	-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중로 2·6호선변 학교용지 부출입구의 출입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항에 의한 ‘긴급자동차’ 만 허용하고, 그 외 차량은 주출입구의 출입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결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의 설치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주차장 노면표시는 2줄 주차선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담양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 및 관련부대시설 설치 - 교육시설에 자전거주차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에 맞도록 설치하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중 학교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등급 수준에 따라 일반교실 1개소당 3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기타 사항	• 교육시설의 경우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된 우수를 활용하여 조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유1	유1	용도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유치원 •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비목에서 아목까지는 제외)의 시설 - 부수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범위에서 설치가능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층)	• 2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학1	학1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150% 이하
		높이(층)	• 4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차량 진출입 및 주차장	• 대지내 차량 진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서 정한 “차량출입 불허구간” 이외의 범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전용도로에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연결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의 설치 - 주차장 노면표시는 2줄 주차선으로 하여야 한다. - 주차장은 주차장법, 담양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 및 관련부대시설 설치 - 교육시설에 자전거주차장 및 관련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자전거 주차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16조에 맞도록 설치하되,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중 학교건축물 인증심사기준 1등급 수준에 따라 일반교실 1개소당 3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기타 사항	• 교육시설의 경우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장된 우수를 활용하여 조경용수 및 관리용수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유1	유1	용도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유치원 -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비목에서 아목까지는 제외)의 시설 - 부수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의 30% 미만 범위에서 설치가능
		건폐율	• 50% 이하
		용적률	• 80% 이하
		높이(층)	• 2층 이하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은 지침도에 따른다.

< 별표 6 > 안전도시 조성계획(CPTED)

도 면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기본원칙	- 자연적 감시활동의 일환인 시야선 확보, 조명사용, 사각지대해소, 지역 활력을 강화한다. - 자연적 접근통제와 영역성을 부여하기 위한 요소로 수목, 조경 등의 요소를 활용한다.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근린 생활 시설용지	배치 및 외관	- 외부에서 대지내 공지의 활동을 볼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로 배치한다. - 건축물 공간의 성격을 공적영역, 반공적영역, 사적영역, 통로지역을 명확히 계획하도록 하고 출입구는 개방된 구조로 한다. - 공공보도와 주호의 접근로를 구분하기 위해 낮고 상징적인 벽을 형성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상업용도로 쓰이는 경우, 유리창을 가리는 안내문이나 게시물의 부착을 금지하고 계산대는 상점 밖에서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 - 건물에서 도로의 전망이 보이도록 하고 모퉁이와 사각이 적도록 차폐녹지와 시설녹지를 설치한다.
		조경 및 식재	1,2층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식재하고, 창문 전면부에는 눈높이 이하의 관목 권장한다. - 상층부 창문 또는 발코니와 거리를 확보한다. - 은닉장소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간격을 확보한다. - 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배치한다.
		설계 및 건축	- 도로, 보행로 쪽으로의 창문 배치를 의무화하고, 인접 건축물이나 담장, 수목 등을 피하여 배치한다. - 도로나 인접 건물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도로와 출입구 사이 준·사적공간을 확보한다. -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투시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틈이 있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주택 침입 시 발판이 되지 않도록 배치하여, 담장의 꼭대기는 사람이 서 있을 수 없는 구조로 설계한다. - 건축물의 창문과 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 일반 판유리보다 강화유리를 권장한다.
		조명의 설치	- 출입구나 현관은 동작감응형 스포트라이트 설치한다. - 보행로는 15m 이상의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밝기(바닥면 기준 20lux 이상)를 유지하되, 가능한한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눈높이의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불라드 조명은 효율이 낮으므로 보다 촘촘히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상업시설 용지	배치 및 외관	- 상업건물은 보행가로와 대응하여 배치하고, 저층부는 내부를 공개할 수 있는 용도의 상점을 입점 시켜 개방을 통한 자연스런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건물 저층부의 경우 유리창을 가리는 안내문이나 게시물 부착을 금지한다.
		색채 및 조명	- 상업시설용지는 과도한 원색을 사용한 광고를 자제하고 심리적 안정을 주는 녹색 계열의 색채를 권장한다. - 조명을 가리거나 1,2층의 창문을 가리지 않도록 식재한다. - 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투명 재료를 50% 이상 사용하고, 속이 들여다보이는 셔터(Open Grilled Shutter)를 사용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입간판, 타워형 간판을 규제하고, 유리창에 데칼, 광고지부착, 선팅을 금지한다. •조명의 설치에 관하여 아래의 사항을 적용한다. - 15m 이상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도록 밝기 20룩스를 유지한다. - 출입구나 현관은 주변부보다 밝게 조명한다.
		주차장	•방문객용 주차장과 직원용 주차장을 분리 운영하고, 여성 및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을 접근이 용이한 곳에 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주차장의 규모가 클 때는 분할 계획하며, 위치기호, 색상, 테마 등을 표기한다. •주차장의 진출입구에는 감시장치(CCTV), 차량출입차단기 설치한다. •지하주차장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 벽을 배제하고, 이동경로, 진출입구 등의 표지판을 설치한다. •지하주차장 내에 감시장치(CCTV)를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다. •지하주차장 내부는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센티m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 이상)를 유지하되,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공통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용지	형태 및 외관	•공공시설은 보행가로와 대응하여 건물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건물 출입구가 보행가로에 향하게 한다.
		색채 및 조명	•학교나 공공시설은 녹색이나 미색계열의 색상을 주조색으로 하여 이용자들의 심리상태가 편안하도록 유도한다. •공공시설의 경우 야간의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가로등, 버스정류장, 가로 편익시설들을 이용한 가로 조명시설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기타 공공시설물	•감시장치(CCTV)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주요 진출입구, 범죄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감시장치(CCTV)로 보안중임을 안내하는 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안내표지판은 간결한 색깔, 분명한 대비, 상징기호를 사용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 혹은 별도 배치하며, 야간안내를 위한 직간접조명을 설치한다.
		공원 등의 시설물	•공원의 조경 및 설계는 아래의 항목을 적용한다. - 은닉장소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식재 간격을 확보하고, 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한다. - 언덕 너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얇은 경사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에서 직접 볼 수 있는 곳에 출입구를 배치하고 멀리서도 출입구를 식별할 수 있도록 조형물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 영역성의 확보를 위하여 투시형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관목 등을 식재한다. - 벤치, 조형물, 정자, 운동시설 등의 시설물은 가로등 아래, 주요동선 변에 배치하고, 관리담당 기관의 연락처 표지를 부착한다. •공원 내외의 시설과 현위치 및 출입구 등을 표기한 표지판과 비상전화를 설치한다. - 공원 출입구와 이용이 많지 않은 장소에는 감시장치(CCTV)나 초소를 설치한다. •공원 내 조명에 관하여 아래의 항목을 적용한다. - 수목으로 인하여 조명이 가리기 쉬운 곳은 투광조명, 블라드 조명의 설치를 권장한다. - 보행로는 15m 이상의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밝기(바닥면 기준 20lux 이상)를 유지하되, 기능한한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눈높이의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블라드 조명은 효율이 낮으므로 보다 촘촘히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도로 등의 시설물	•이해하기 쉽고 예측 가능한 선형으로 하며, 막힌 길은 입구에서 끝까지 가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선으로 계획한다.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도로는 충분한 통행랑이 있는 곳에 배치하고, 은닉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선형을 계획한다. •가급적 연석, 관목 등을 이용하여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고, 보도를 설치할 때에는 보도 폭을 2m 이상 확보한다. •보행자만 이용하는 지하도나 굴다리는 자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아래의 항목을 적용한다. - 지하도, 굴다리는 직선으로 짧고 폭이 넓게 하여 반대편 출입구가 보일 수 있도록 한다. - 지하도, 굴다리 내에는 밝은 색채를 사용하며, 시야를 가리는 기둥을 가급적 배제하고, 감시장치(CCTV), 안내도, 비상전화 등을 설치한다. - 적정 조도(바닥으로부터 85센티m의 높이에 있는 지점이 평균 70lux 이상)를 유지하되,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도로의 조명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보행로는 15m 이상의 충분한 거리에서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밝기(바닥면 기준 20lux 이상)를 유지하되, 가능한한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눈높이의 조명은 시야를 방해하므로 자제하고, 볼라드 조명은 효율이 낮으므로 보다 촘촘히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별표 7 > 장애물 없는 도시 조성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용지	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편리하고, 무장애한 시설물로 설계한다. •도로내 보행로와 보행자전용도로, 도로교차부, 공원광장내부의 보행로와 시설물, 건축물과 공공부문의 경계부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보행안전 위한 보도구조	•보행안전을 위한 보도구조는 도로 내에 포함된 보행로, 보행자전용도로에 적용한다. •보도의 포장 재질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 보행안전존은 미끄럽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 보도블럭 등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바닥면을 평평하게 시공한다. - 전면 기울기는 최대 1/18(5.6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지형 등의 여건 상 불가능한 경우 1/12(8.3퍼센트)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 횡단보도 연석경사로를 전면경사로로 설치한다. •차량의 출입부는 자동차가 보도를 횡단하는 구간에서는 장애물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 보도의 횡단경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성하며, 자동차가 좁은 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최소한 1m이상의 수평면 확보한다. •경계석(연석)은 차도와 보도 경계부에 높이차 25cm 이하로 한다. •자전거 횡단도 설치시 자전거 통행이 용이하도록 단차가 없이 설치한다. •교통약자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보도)에는 간격 1cm 이하의 그레아팅을 사용한다. •가로등, 전주, 간판, 쓰레기통, 교통안내판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은 장애물 존에 설치한다.
		볼라드의 설치	•볼라드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으나, 부득이하게 설치해야하는 경우 볼라드의 외관직경은 10~20cm, 높이는 80~100cm로 설치하며, 설치간격은 기동중심간 거리가 1.5m 내외로 하고 시인성이 좋은 재료, 충격흡수가 가능한 재질을 사용한다.
		횡단보도	•보행장애인,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도록 보도는 횡단보도에 연속하여 설치한다. •자동차 우선도로의 횡단보도는 차도높이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보도의 높이를 횡단하는 구간에서 계속 유지되도록 설치한다. - 보도와 차도 경계부는 2cm 이하로 하여 턱을 낮춘다. - 연석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으로 하고, 전면기울기는 1/12 이하, 옆면기울기는 1/10 이하로 한다.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주변 100센티m 이내에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00~130cm 이내로 한다. - 고휘도 반사재료(발색도료)를 사용한다. •보행로와 차로가 만나는 곳의 횡단보도는 고원식으로 설치하며, 설치기준은 아래와 같다. - 사다리꼴 구조물의 경사(턱)부분과 횡단보도 부분은 서로 다른 색상 및 재질로 하고 경사를 완만하게 설치한다. - 사다리꼴구조물의 윗면 평탄부를 2.5m 이상으로 설치한다.
		건축물과의 경계부 처리	•공공건축물, 상업용도의 건축물, 공공이용시설 등 사용인구 및 이동량이 많은 건물의 주출입구에는 아래의 기준에 의한 경사로 등을 반드시 설치한다. - 가능한 경사도를 주접근 수단으로 설치하고, 계단을 보조접근수단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시작·끝, 방향전환지점에 가로·세로 1.5m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건축물 1층 바닥의 마감높이는 전면도로의 평균 지반고로부터 20cm 이내로 하며, 단차 제거를 위하여 폭 1.5m 이상, 경사도 1/12 이하의 경사로로 설치한다. - 전면공지의 횡단 기울기는 2% 이내로 한다. 단, 지형상 불가능할 경우 수평침 부분과 출입구까지 수평이동이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별표 8 > U-City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기본원칙	• 생활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U-City환경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용한다.
통신선로 설비 설치기준	• 초고속광통신망을 이용하여 구축한다. • 상업시설용지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 이상의 구내통신선로 설비를 적용한다. • 정보통신부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원격검침 설치기준	•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와 해당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별표 9 > 폐기물 거점수거대 설치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폐기물 거점수거대 설치	• 커뮤니티센터, 녹지, 공원 등에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가 거점수거시설을 설치한다. • 한 곳에서 100~2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한다. • 이동식으로 하여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설치 장소를 바꿀 수 있도록 설치한다. •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한다. • 수거시설은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으로 구분한다.

< 별표 10 > 저탄소녹색도시 조성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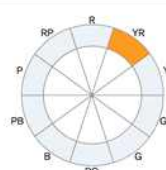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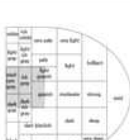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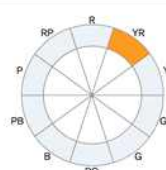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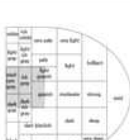
구분	계 획 내 용
기본원칙	• 수자원 확보와 지역내 물순환시스템을 위하여 우수, 집수, 저류기법의 적용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옥상, 벽면, 테라스 등은 가능한 한 녹화를 권장한다.
빗물이용 시설	• 빗물을 집수하여 화장실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건물지붕면을 통해서 집수된 빗물은 지하 저류조에 저장되어 화장실용수 및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거나 생태연못 및 저류지에 공급되도록 연계구조를 계획하도록 권장한다. • 빗물이용시설은 집수시설, 여과처리시설, 빗물저류조 및 송수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준용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지침에 의한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은 공간계획 대상지 면적 중에서 자연의 순환기능을 가진 토양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 단독주택용지 및 공동주택용지는 생태면적률 40%이상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text{생태면적률} = \frac{\text{자연지반녹지} + \sum(\text{인공화지역 공간유형별 면적} \times \text{가중치})}{\text{전체 대상지 면적}} \times 100(\%)$ • 공간의 생태적 가치를 기준으로 생태적 기능이 온전한 ‘자연지반녹지(가중치 1)’와 생태적 기능이 전무한 ‘포장면(가중치 0)’을 기준으로 한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가중치는 생태면적률 적용지침(환경부)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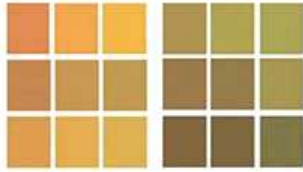
< 별표 11 > 옥외광고물

구분	계 획 내 용
옥외광고물 기준	• 기본방향 : 2016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가로형 간판 - 1개 업소에서는 1개의 간판만 설치하여야 한다 . - 도로 곡각지점에 위치한 업소는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입체형 간판 및 판류형 간판의 가로 크기는 당해업소 전면폭의 80% 이내로 표시하며, 최대 10m 이내로 한다. - 입체형 간판의 세로 크기는 1층의 경우 45cm, 2층의 경우 50cm, 3층의 경우 55cm 이내로 한다. (단, 당해업소의 전면폭의 가로가 7m이상일 경우, 층간 벽면폭의 60% 이내로 협의 후 표시 가능) - 판류형 간판의 세로 크기는 최대 80cm(판의 크기) 이내로 한다. - 간판의 두께는 건물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한다. - 1층의 경우 판류형 또는 입체형, 2층 이상인 경우 입체형 간판을 설치하며, 둘 이상의 벽면을 연결하여 표시할 수 없다. - 입체형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층 간판들과 일렬로 정렬하며, 판류형 간판은 일정한 규격으로 같은 층 간판의 위·아래 높이를 일치하여 설치한다. - 간판 표기는 전체 간판면적의 80% 이내로 표시하며, 지점명, 전화번호, 영업내용 등을 표기(가격표, 실물사진 등은 표기 금지) 한다. - 간판의 서체는 업종의 성격이나 상호 및 브랜드에 어울리게 사용한다.(광고물의 시인성과 인지성을 높여주는 픽토그램 사용 권장) • 세로형간판은 설치 지양한다. • 돌출형 간판 - 3층 이상의 건물에 한하여 1개 업소에 1개의 돌출간판만을 설치할 수 있다. - 돌출형 간판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로 표시하며, 한 건물에 2개 이상 설치 시 돌출폭과 간판 사이즈를 일치하여 설치한다. - 간판의 세로 크기는 건물의 1개층 높이 이내로 표시하며, 두께는 30cm 이내, 지면과의 간격은 3m 이상으로 표시 한다. - 건물의 전면폭에 관계없이 건물 좌측 또는 우측 1개소에 1줄로 설치 가능하며, 1층 업소는 소형돌출간판을 이용 한다. - 주 표기내용의 평균 가로 크기를 간판 가로크기의 1/2 이내, 보조표기는 간판면적의 1/6 이내로 표기 한다. - 소형돌출간판의 경우 1면의 표기면적은 최대 0.36㎡ 이내로 표시한다.(단, 1면의 표기면적이 0.36㎡를 초과할 경우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간판의 총 수량 : 1업소 12면)) - 소형돌출간판은 안전을 위해 인도에만 표시하며, 업소 출입구의 좌·우측, 정면 중 한곳에 1개 표시 한다. • 창문이용광고물 표시기준 -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형태로 일반 광고물 개념이 아닌 유리벽 안전띠 개념으로서 매우 작은 크기로 1층 창문에 부착한다. - 창문 또는 출입문 내부에서 간판으로 인지 될 수 있는 표시물은 설치 할 수 없다. - 높이 20cm 이하로 표시하며, 상호 또는 브랜드명 외에 전화번호, 영업시간 등을 표시 한다. - 접착성이 있는 비닐·종이 등의 재질 및 반투명 에칭시트 이용을 권장하며, 전광류는 사용할 수 없다.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옥상 간판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설치를 불허한다. •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의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므로 설치를 지양한다. - 단, 필요시 통합지주이용간판 설치를 권장한다.
행정 관련 사항	•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2016 담양군 옥외광고물 등 가이드라인을 준용한다.

< 별표 12 > 색채 및 재료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기본원칙	•본 지침의 재료의 종류에 관한 기준은 권장사항으로 한다. •담양군 경관기본계획 색채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정합성 있도록 계획한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우선시 하고, 지나친 발광, 원색, 고채도 및 고명도 색채를 지양한다.(본연의 재료색 우선 사용)										
		적용기준	•색채범위는 한국표준색계인 만셀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고, ISCC-NBS 톤 분류 체계를 적용한다. •주변 환경색 및 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한 색상, 명도, 채도를 규정하여 대상지의 전체적인 통일감을 부여하고 존(zone)별로 특색있는 색채 경관을 연출한다. <색채의 적용범위> <table><tr><th>구 분</th><th>내 용</th></tr><tr><td>주조색</td><td> - 건축물 외벽의 70% 이상 주조를 이루는 기본 - 밝고, 부드러우며, 안정감을 주는 색채 적용 </td></tr><tr><td>보조색</td><td> - 건축물 외벽의 10~30%를 구성하며, 주조색과 유사 계열의 색채 적용 - 주조색과의 배색 조화를 통해 통일과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 </td></tr><tr><td>강조색</td><td> - 외장 효과를 위한 색으로써 건축물 외벽의 5% 미만을 차지 - 활력 및 명확성 등을 표현하여 개성적인 색채 경관 연출 </td></tr></table>	구 분	내 용	주조색	- 건축물 외벽의 70% 이상 주조를 이루는 기본 - 밝고, 부드러우며, 안정감을 주는 색채 적용	보조색	- 건축물 외벽의 10~30%를 구성하며, 주조색과 유사 계열의 색채 적용 - 주조색과의 배색 조화를 통해 통일과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	강조색	- 외장 효과를 위한 색으로써 건축물 외벽의 5% 미만을 차지 - 활력 및 명확성 등을 표현하여 개성적인 색채 경관 연출		
		구 분	내 용										
		주조색	- 건축물 외벽의 70% 이상 주조를 이루는 기본 - 밝고, 부드러우며, 안정감을 주는 색채 적용										
보조색	- 건축물 외벽의 10~30%를 구성하며, 주조색과 유사 계열의 색채 적용 - 주조색과의 배색 조화를 통해 통일과 균형을 이루도록 계획												
강조색	- 외장 효과를 위한 색으로써 건축물 외벽의 5% 미만을 차지 - 활력 및 명확성 등을 표현하여 개성적인 색채 경관 연출												
존(Zone)별 색채계획	•하천과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분위기의 색채계획을 연출한다. <Color Zoning Plan> <table><tr><th>구 분</th><th>색상</th><th>명도</th><th>채도</th></tr><tr><td>주조색</td><td>Off White, YR-GY계열</td><td>8.0~10.0</td><td>0.5~2.0</td></tr><tr><td>강조색</td><td>YR-GY계열</td><td>중명도</td><td>저채도</td></tr></table> < 주조색 색채범위(70% 이상 범위내 사용) > A, B-Zone 공통 < 강조색 색채범위(5~10% 범위내 사용) > B-Zone A-Zone	구 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Off White, YR-GY계열	8.0~10.0	0.5~2.0	강조색	YR-GY계열	중명도	저채도
구 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Off White, YR-GY계열	8.0~10.0	0.5~2.0										
강조색	YR-GY계열	중명도	저채도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단독 주택 A-Zone	기본방향	•주조색과 보조색은 주변 색상과 조화성을 가질 수 있도록 (N)계열의 무채색 및 고명도·저채도의 YR계열의 색채를 적용한다. •강조색으로 중명도, 저·중채도의 YR계열을 적용한다.																								
		색채예시	구분	색채계열	명도/채도 범위	색채 팔레트 예시	주조색			N9 Off white	N, YR 계열	8 ~ 9.5 이하 / 2 이하		보조색			N8 10YR 8/1	N, YR 계열	6 ~ 9 이하 / 3 이하		강조색			5YR 6/12 5YR 7/10	YR 계열	4 ~ 7 이하 / 4 이하	
			구분	색채계열	명도/채도 범위	색채 팔레트 예시																					
			주조색			N9 Off white																					
				N, YR 계열	8 ~ 9.5 이하 / 2 이하																						
			보조색			N8 10YR 8/1																					
				N, YR 계열	6 ~ 9 이하 / 3 이하																						
			강조색			5YR 6/12 5YR 7/10																					
				YR 계열	4 ~ 7 이하 / 4 이하																						
			공통	단독 주택 B-Zone	기본방향	•주조색과 보조색은 주변 색상과 조화성을 가질 수 있도록 (N)계열의 무채색 및 고명도·저채도의 G계열의 색채를 적용한다. •강조색으로 중명도, 저·중채도의 G계열을 적용한다.																					
색채예시	구분	색채계열			명도/채도 범위	색채 팔레트 예시	주조색			N 9 2G 9/1.0 7G 9/2.0	N, G 계열	8 ~ 9.5 이하 / 2 이하		보조색			N8 4.5G 8/2.0 9.5G 7/3.0	N, G 계열	6 ~ 9 이하 / 3 이하		강조색			3G 5/4.0 6G 4/3.0 10G 4/4.0	G 계열	4 ~ 7 이하 / 4 이하	
	구분	색채계열			명도/채도 범위	색채 팔레트 예시																					
	주조색					N 9 2G 9/1.0 7G 9/2.0																					
		N, G 계열			8 ~ 9.5 이하 / 2 이하																						
	보조색					N8 4.5G 8/2.0 9.5G 7/3.0																					
		N, G 계열			6 ~ 9 이하 / 3 이하																						
	강조색					3G 5/4.0 6G 4/3.0 10G 4/4.0																					
		G 계열			4 ~ 7 이하 / 4 이하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동 주택	기본방향	•개별 건축물로 느껴지지 않도록 옥탑부 형태 및 입면의 통일된 이미지 연출한다. •건축물 수직 분절을 통해 위압적인 이미지를 최소화한다.												
		색채예시	<공동주택 색채적용 범위> <table><tr><th>구 분</th><th>색상</th><th>명도</th><th>채도</th></tr><tr><td>주조색</td><td>Off White / YR-Y 계열</td><td>8.0~10.0</td><td>0.5~2.0</td></tr><tr><td>강조색</td><td>YR-Y 계열</td><td>중명도</td><td>중채도</td></tr></table>	구 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Off White / YR-Y 계열	8.0~10.0	0.5~2.0	강조색	YR-Y 계열	중명도	중채도
			구 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Off White / YR-Y 계열	8.0~10.0	0.5~2.0									
강조색	YR-Y 계열	중명도	중채도												
주조색 색채범위(70% 이상 범위 내 사용) 	강조색 색채범위(5~10% 범위 내 사용) 														

< 별표 13 > 공원·녹지·수변공간

구분	계 획 내 용						
기본원칙	• 단지중심의 공원은 중심녹지축을 최대한 보전한 보전형 근린공원을 조성한다. • 공원의 성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재료 및 시설을 적용한다. • 공원 내 에너지 절약에 위한 친환경적 설계방안을 적용한다. • 공원녹지수변의 특성에 맞추어 개성 있는 공원 경관을 창출한다.						
공원·녹지 수변 공간조성 방법	• 단지내 공원은 다음과 같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table> <tr> <th>구분</th><th>지침</th></tr> <tr> <td>공원</td><td> · 주요녹지축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야생동물 서식처를 보호, 기존지형 및 식생을 보존 · 조경시설은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계단·기타시설물의 경우 친환경 재료를 사용 · 인위적 비탈면 조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비탈면발생시에는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조성 · 문화시설, 학교에 인접한 부분은 학교안 조경공간과 연계하여 조성함 </td></tr> <tr> <td>어린이 공원</td><td> · 단독주택 블록과 인접한 주거용지, 구릉, 도시실개천 등과 연계하는 그린네트워크 (Green Network)로 조성 · 어린이공원내 시설물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함 · 우천시와 직사광선을 고려하여 천막, 그늘막 등을 설치 </td></tr> </table> • 완충녹지는 다음과 같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도로변 소음, 매연, 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하고, 완화를 위하여 완충녹지를 조성한다. - 활엽수 및 상록수를 혼합하여 다층식재한다. - 도로변이나 주차장 주변의 녹지는 자연취구 형태로 조성한다. - 주택지와 인접한 녹지대에 물리적 구조물 설치를 제한한 통합 녹지대 조성을 권장한다. • 공공공지(수변공지)는 다음과 같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단절되지 않게 연결하여야 한다. - 소하천의 수변은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되 자연친화적인 시설을 이용하여 조성한다. • 광장은 다음과 같이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광장은 커뮤니티 광장으로 접근성 및 상징성을 높이고, 빗물 투수성포장재 사용 등을 도입한 친환경적 광장으로 조성한다. - 마을이벤트, 행사, 집회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한다.	구분	지침	공원	· 주요녹지축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야생동물 서식처를 보호, 기존지형 및 식생을 보존 · 조경시설은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계단·기타시설물의 경우 친환경 재료를 사용 · 인위적 비탈면 조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비탈면발생시에는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조성 · 문화시설, 학교에 인접한 부분은 학교안 조경공간과 연계하여 조성함	어린이 공원	· 단독주택 블록과 인접한 주거용지, 구릉, 도시실개천 등과 연계하는 그린네트워크 (Green Network)로 조성 · 어린이공원내 시설물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함 · 우천시와 직사광선을 고려하여 천막, 그늘막 등을 설치
구분	지침						
공원	· 주요녹지축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야생동물 서식처를 보호, 기존지형 및 식생을 보존 · 조경시설은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계단·기타시설물의 경우 친환경 재료를 사용 · 인위적 비탈면 조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비탈면발생시에는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조성 · 문화시설, 학교에 인접한 부분은 학교안 조경공간과 연계하여 조성함						
어린이 공원	· 단독주택 블록과 인접한 주거용지, 구릉, 도시실개천 등과 연계하는 그린네트워크 (Green Network)로 조성 · 어린이공원내 시설물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운동시설을 설치함 · 우천시와 직사광선을 고려하여 천막, 그늘막 등을 설치						

< 별표 14 > 야간경관

구분	계 획 내 용
기본원칙	- 주변 자연환경과의 관계와 이용빈도를 고려한 조도 계획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광공해를 방지하여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다. - 자연의 빛에 순응하고, 빛 공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야간경관을 연출한다. - 친환경적인 조명시설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과 효율적인 광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도로, 공원 및 기타 공공장소의 옥외조명은 과도하지 않고 절제된 빛을 이용하여 광공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친환경 소재와 에너지 절약형 또는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 담양군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용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단독주택 지역	-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명을 도입하여 절제된 이미지를 부여하고 주변 생태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전체적으로 은은하고 깨끗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white, Yellow 계열을 적용하도록 한다. - OPTED(범죄예방설계디자인)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공동주택 지역	- 주변 건축물의 야간경관 연출과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건축물의 존재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 - 과도한 옥탑부 및 입면 경관 조명 적용을 지양하고 옥탑부의 선형을 간결하게 부각시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이 자연스럽게 돋보일 수 있도록 연출한다.
상업시설/준주거시설	- 건축물 입면 및 옥탑부를 활용하여 활력있는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는 특화조명 일부를 도입한다. 1층 필로티가 있는 부분은 천정을 밝게 하여 가로의 개방감을 높이고 상업시설의 성격을 고려한 조명 연출을 유도한다. - 공공장소의 옥외조명은 과도하지 않고 절제된 빛을 이용하여 광공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며, 친환경 소재와 에너지 절약형 또는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을 권장한다. - 상업가로부터 장식조명과 쇼윈도 디스플레이 조명을 활용연계하여 광공해가 없으면서 특색 있는 야간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과도한 색상 및 지나친 동적 경관 조명은 지양하도록 한다.
녹지지역/오픈스페이스	- 생태 환경과의 이질감의 최소화, 따뜻하며 자연스러운 이미지 연출을 위해 난색 계열적용을 권장한다. - 은은하고 따뜻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Yellow계열 색상 조명을 도입하도록 한다. - 공원 조명용 광원은 주변경관과 조화되고 효율이 높으며 연색성이 좋은 색온도 2500-3500K 광원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공원 및 광장의 조명시설은 주간에 경관조형물로서의 특성을 갖추면서 동시에 공원 특색에 맞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 공원 내 조형물 또는 조경시설물과 일체화되는 조명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 - 수목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의 사용을 지양한다. - 어린이 공원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 간결한 디자인의 등기구 사용한다. - 공원 및 수변공간에 강한 원색 조명사용을 지양한다.

< 별표 15(변경없음) > 공공시설물

구분	계 획 내 용
기본원칙	- 가로별 성격에 따라 재료, 형태를 동질화하여 계획한다. - 형태적 부조화를 방지하고, 가로변 이미지의 제고를 위해 가로장치물의 형태, 재료, 색상을 통합·조절하는 가로장치물 개발하도록 한다. - 가로시설물은 가급적 통합하여 설치하며 보도구간 내에 각종 시설물의 난립을 방지하도록 한다. - 주요시설 입구, 대중교통수단 승하차지점, 횡단보도 등 주요 지점에 가로 장치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하여 집약화 하도록 한다. - 담양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정합성 있도록 계획한다.
편의 시설	휴지통 -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휴지통 투입구의 높이 계획을 수립한다. - 공원 및 광장에 배치되는 휴지통은 주변시설물과 조화로운 형태를 지향한다. - 배치장소의 특성에 따라 구분(분리수거용, 개별용)하여 설치하며 쓰레기 배출량을 고려하여 크기 및 수량 계획한다. - 휴지통 내부의 수분 분리배출이 용이하고, 내부 구조가 고정되도록 설계하여 고정 설치를 권장한다. - 최소한의 색채 적용으로 경관과의 조화 및 효율성 향상을 도모한다. - 특별관리지구는 표면재질로 목재, 일반관리지역은 금속재질을 권장한다.
편의 시설	벤치 - 도심부는 등받이가 없는 평벤치 형태, 자연생태지구는 등받이가 있는 벤치형태를 권장한다. - 가로녹지대, 가로화분대 등 다른 시설물과 연계하여 적성을 갖춘 공간에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여름철에는 그늘이 질 수 있고, 겨울철에는 햇빛이 들도록 주변 수목과의 관계 고려한다. - 앉음판은 목재, 프레임은 금속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구분	계 획 내 용
버스 쉼터	자연소재는 도장을 지양하고 재료 자체의 색 그대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단, 특별관리지구는 디자인 컨셉에 따른 특색 있는 색채계획 권장)
	- 지붕은 박공 형태를 지향하며 여의치 않을 시 역"ㄱ"자 형태를 권장한다. - 보도 폭과 이용객 수에 따라 크기 조절이 가능한 구조 및 빗물이 내부로 진입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쉼터 지붕은 눈과 비를 고려하여 5도 이내의 경사각을 적용하여 빗물이 내부로 진입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 기둥과 프레임은 주재료로 금속재를 사용하며 부분적인 포인트로 목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권역별, 지구별로 설정된 색채를 사용한다.(공공디자인 색채 가이드라인 참고)
	- 부피감을 최소화하는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을 권장한다.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대중교통과의 연계지점, 공공건축물, 관광지 주변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필요공간의 입구에 배치한다. - 보행로 점유를 최소화하도록 거치대를 설치하며, 지면 또는 건축 벽면 등 다양한 공간활용을 권장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저채도의 단일색채 사용 권장한다. - 도장마감을 피하고 반사율이 낮은 금속재를 권장한다.
도로 부속 시설	- 지주대는 원통형의 직선적 느낌을 강조하여 설계 권장한다. - 공원은 에너지 절감형으로 적절한 조도를 확보하도록 한다. - 지주대는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계하되, 부피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형태를 권장한다. - 교차로 및 광장은 여러 개의 가로등주 설치를 지양하고 마스터플을 이용한 단일지주로 지주의 난립을 피하도록 한다. - 가로등 지주대 하부구조는 미관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고정장치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가로등 색채는 주변환경과의 조화성을 고려하여, 원색 또는 고채도의 광택이 나는 색상의 사용은 자제한다, - 담양군 로고 부착 시 가급적 고채도 사용을 제안하며, 무채색, 단색으로 음각처리를 권장한다.
	- 주변 환경과 조화성을 고려한 형태로 디자인하고, 일장범위의 가로공간에서는 연속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동일한 모듈의 형태를 권장한다. - 장소적 특성에 따라 보행가로변의 휴지통, 벤치 등의 가로시설물과의 통합 설치를 권장한다, - 공원 등에 있는 횡단 및 진입장소를 제한하기 위한 장소, 어린이들이 통학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 등에 설치를 권장한다. - 고채도, 고명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하며 저채도 중심의 색채 사용을 권장한다. - 이간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도로 및 반사지를 사용 한다. - 충분한 강도와 내구성이 있는 재료인 스틸 소재와 친환경적 소재를 사용한다.
	- 보행자를 고려하여 각이 지지 않은 둥근 지주 형태를 권장한다. - 보도와 조화되고, 다른 시설물과 통합된 디자인을 권장한다. - 반사도로, 반사재 부착 등을 통해 이간의 시인성을 확보하며, 바닥과의 접합부위는 정교하게 마감하고, 보도 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고명도의 색채 사용을 지양하며 주변경관 및 건축물을 고려한 재료 및 색채 사용한다. - 차량충돌이 잦은 구역에 설치 시 충격흡수가 가능한 탄성 소재의 사용을 권장한다. - 운전자 및 보행자가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는 높이로 설치한다.
	- 보도의 마감 컬러 및 패턴과 일체화되는 형태 사용을 권장한다. - 특별관리지역은 장소적 특성에 따라 장소정보를 반영한 상징화된 형태를 권장한다. - 보행로의 방향에 따라 올바른 이미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의 통일성을 권장한다. - 원색의 사용을 지양하며 주변 보도의 컬러와 조화되는 저채도의 색채를 권장한다. - 자연생태지구는 주변환경 소재와의 조화를 고려한다. - 맨홀의 구조체는 내구성이 강한 주철 재료를 사용하고 마감재는 보행자의 보도와 조화로우며 미끄럼 방지를 위한 재료 선택 및 표면처리 필요
가로 녹지 시설	- 관리 및 청소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쉽게 해체가 가능한 구조를 권장한다. - 보도 면에 돌출되지 않도록 바닥면과 수평을 이루게 설치한다. - 수목지지대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수목 덮개부 아래에 식물의 보호와 뿌리공간 확보를 권장한다. - 자연생태공간은 수목덮개로 식재의 활용을 권장한다. - 보호덮개는 내구성이 강한 주철을 주재료로 설계한다. - 재료·색채는 보도패턴과의 연속성을 지향한다. - 수목보호대는 재료 자체의 색상을 이용하며, 도장과 같은 부가적인 표면 마감처리를 지양한다.
	- 음수대의 구조 및 크기 결정은 인체치수를 참고하여, 어린이, 노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하여 방향과 높이를 다양화 할 것을 권장한다. - 고명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하며, 주변환경에 조화되는 색상을 권장한다.

구분		계 획 내 용
		• 석재사용을 권장하며 금속재 사용 시 재질에 따른 부식처리를 강화하도록 한다. • 단순한 형태의 디자인을 권장하며, 음수대 주변에 녹화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가로 화분대	• 급·배수 등 식물관리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디자인한다. • 상업지역은 주변과 조화를 고려한 플랜트 형 화분대를 설치한다. • 휴지통, 벤치 등 다른 시설물과 조화성을 고려하여 통합적 설치를 권장하며, 동일한 구역 내에 있는 가로화분대는 통일성 있는 형태로 설계한다. • 필요에 따라 건축물 및 옹벽을 이용해서 녹화하도록 한다. • 고풍택성 금속재료나 플라스틱 등의 인공재료 사용과 고채도의 원색 사용을 지양한다. • 보행공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 시 타 시설물과 연계하여 설치한다.
	파고라	•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개방적인 형태를 권장한다. • 최소한의 구조로 장소에 따라 다양한 크기 변화가 가능한 유닛 형태를 권장한다. • 도로변에 설치를 금지하며 공원, 마을 입구 등 이용자 활용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상층부에 넝쿨식재를 이용한 녹화를 권장한다. • 파고라와 벤치(평벤치 및 평상형)를 함께 설치 권장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 및 자연친화적인 재료의 목재 사용을 권장한다.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처리계획(변경)

○ 지정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사 업 지구의 외 부 (군 계획 시설 사업 으로 시행)	주변 가로	-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2016.3』 내용 반영
		①	• 구)국도13호선-국지도15호선 도로확장 및 정비 - B=20~22m(4차로), L=3.14km
		②	• 사업지~구)국도13호선간 도로확장 - B=15m(2차로), L=0.26km
	교차로	③	• 사업지~국도13호선 도로확장 - B=24m(4차로), L=0.41km
		-	• 사업지 외부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6개소 ③, ④, ⑤, ⑨, ⑩, ⑪) - 외부 진출입교차로상 점멸등 설치(2개소)
		-	• 공간적 범위내의 교차로 최적신호 운영방안 제시 (7개소 ①, ②, ③, ④, ⑤, ⑦, ⑧)
사 업 지구의 내 부	가로 및 교차로	④	• 사업지 내부 가로 차로 운영계획 수립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의 적정계획 - 도로망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운영계획 재수립
		㉠	• 공동주택지 접근로변 15m도로 능률차로 운영계획 수립
	진출입 동 선	⑤	• 사업지 내부 주요교차로 운영계획수립 - 비신호교차로 점멸등 설치(4개소), 교차로 안내표지 및 도류화, 노면표시 - 정형화된 회전교차로 설치(9개소)
		-	• 획지별 진출입이 가능한 진출입 불허구간 재수립
		㉡	• 학교용지 부출입구(On-Off)설치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⑥	• 사업지 경유 버스노선계획(안) 제시 - 버스노선 조정 건의(2개노선), 신설 건의(2개노선)
		-	• 사업지 내부 버스정차시설 및 쉼터 설치 - 버스정류장(Bus Bay) 12개소, 버스정류소(Bus Stop) 2개소
		⑦	• 자전거 동선체계 확보 - 폭원 22~24m 가로상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비분리형 및 분리형) 설치(B=3.0m이상, 양측) - 폭원 15m 가로상 자전거 전용차선(분리형) 설치(B=1.5m, 양측) - 폭원 12m 가로상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비분리형) 설치(B=3.0m, 편측)
		-	• 보행동선체계 확보 - B=10m이상 도로에 보도 설치(B=2.0m~3.0m)
		-	• 보행자전용도로 설치(B=6m) - 하천변(회룡천) 보행자전용도로상 자전거도로 포함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 보행동선 단절지점 보행횡단시설 설치 - 평면 횡단보도(152개소) -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30개소)
		-	• 사업지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 - 노외주차장 총 면적 5%이상 확보(493㎡)
	주차	⑧	• 사업지 내 노외주차장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 - 8개소, 9,859㎡(부지면적의 0.8%)
		-	• 사업지 내 부설주차장 적정 공급을 위한 주차계획 지표 제시 - 법정주차대수 : 6,078면 - 주차수요대수 : 4,771면(2023년 원단위법) - 주차계획지표 : 7,519면
		-	• 각 필지별 주차시설 확보는 건축물 신축시 법정주차대수 이상 확보하되 주차발생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것 - 단독주택용지내 획지당 최소 2대이상 확보
	교통안전 및 기타	⑨	• 유치원 위치변경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재수립 - 건축한계선(2.0m)내 보행공간 확보 - 노면표시 및 지그재그차선 설치 - 주정차금지표지 및 황색이중실선 설치
			• 과속방지턱 설치(27개소)
		-	• 사업지내 교통안전표지 설치 - 주의표지판(184개소) - 지시표지판(154개소) - 기타 교통안전표지판(74개소)
		-	• 내부 동선상의 시거 불량지점에 대한 반사경 설치(16개소)
		-	• 회전교차로내 차로규제봉 설치
		-	• 자전거 전용 차선변 표지병 설치
		-	• 어린이공원과 접한 도로변 식재울타리 설치
		⑩	• 공동주택 A1블럭 북측가로상 미끄럼방지 포장
		⑪	• 학교시설 주변가로상 방호울타리(안전휀스) 설치
		-	• 단독주택지내 교통안전시설물은 향후 입주시 건축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 및 입주자 등과 협의 후 설치

*주: 지점은 종합개선안도 참조,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의결 보완후(18.04) 변경된 개선내용임

○ 변경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사 업 자구의 외 부 (군 계획 시설 사업 으로 시행)	주변 가로	-	· 『담양 첨단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2014.3』의 개선대책 내용 반영
		①	· 구)국도13호선~국지도15호선 도로 확장 및 정비 - B=20~22m(4차로), L=3.14km
		②	· 사업지~구)국도13호선간 도로확장 - B=15m(2차로), L=0.26km
		③	· 사업지~국도13호선 도로확장 - B=24m(4차로), L=0.41km
	교차로	-	· 사업지 외부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6개소 ③, ④, ⑤, ⑨, ⑩, ⑪) - 외부 진출입교차로상 점멸등 설치(2개소)
		-	· 공간적 범위내의 교차로 최적신호 운영방안 제시 (7개소 ①, ②, ③, ④, ⑤, ⑦, ⑧)
		⑩	· ③주평사거리 좌회전차로 확대 설치 (50→147m)
사업 자구의 내부	가로 및 교차로	④	· 사업지 내부 가로 차로 운영계획 수립 -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의 적정계획 - 도로망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운영계획 재수립 - 공동주택지 접근로변 15m도로 능률차로 운영계획 수립
		⑩	· 소로3-75호선 연장 및 기존도로 연결 - L=17m → 75m
		⑤	· 사업지 내부 주요교차로 운영계획수립 - 비신호교차로 점멸등 설치(4개소), 교차로 안내표지 및 도류화, 노면표시 - 정형화된 회전교차로 설치(9개소)
	진출입 동 선	-	· 획지별 진출입이 가능한 진출입 불허구간 재수립
		④	· 교육연구시설 부출입구(On-Off)설치
	대중 교통, 자전거 및 보 행	⑥	· 사업지 경유 버스노선계획(안) 제시 - 버스노선 조정 건의(2개노선), 신설 건의(2개노선)
		-	· 사업지 내부 버스정차시설 및 쉼터 설치 - 버스정류장(Bus Bay) 12개소, 버스정류소(Bus Stop) 2개소
		⑦	· 자전거 동선체계 확보 - 폭원 22~24m 가로상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비분리형 및 분리형) 설치 (B=3.0m이상, 양측) - 폭원 15m 가로상 자전거 전용차선(분리형) 설치(B=1.5m, 양측) - 폭원 12m 가로상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비분리형) 설치(B=3.0m, 편측)
		-	· 보행동선체계 확보 - B=10m이상 도로에 보도 설치(B=2.0m~3.0m)
		-	· 보행자전용도로 설치(B=6m) - 하천변(회룡천) 보행자전용도로상 자전거도로 포함
		-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 행		· 보행동선 단절지점 보행횡단시설 설치 - 평면 횡단보도(152개소) -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30개소)
		-	· 사업지 내 자전거주차장 설치 - 노외주차장 총 면적 5%이상 확보 (493㎡)
	주차	⑧	· 사업지 내 노외주차장 확보 및 운영계획 수립 - 8개소, 9,859㎡(부지면적의 0.8%)
		-	· 사업지 내 부설주차장 적정 공급을 위한 주차계획 지표 제시 - 법정주차대수 : 6,078면 - 주차수요대수 : 4,771면 (2023년 원단위법) - 주차계획지표 : 7,519면
		-	· 각 필지별 주차시설 확보는 건축물 신축시 법정주차대수 이상 확보하되 주차발생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것 - 단독주택용지내 획지당 최소 2대이상 확보
	교통안전 및 기 타	⑨	· 유치원 위치변경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재 수립 - 건축한계선(2.0m)내 보행공간 확보 - 노면표시 및 지그재그차선 설치 - 주정차금지표지 및 황색이중실선 설치
			· 과속방지턱 설치(28개소)
		-	· 사업지내 교통안전표지 설치 - 주의표지판(187개소) - 지시표지판(154개소) - 기타 교통안전표지판(74개소)
		-	· 내부 동선상의 시거 불량지점에 대한 반사경 설치(16개소)
		-	· 회전교차로내 차로규제봉 설치
		-	· 자전거 전용 차선변 표지봉 설치
		-	· 어린이공원과 접한 도로변 식재울타리 설치
		㉞	· 공동주택 A1블럭 복층가로상 미끄럼방지 포장
		㉟	· 교육연구시설 주변가로상 방호울타리(안전휀스) 설치
		-	· 단독주택지내 교통안전시설물은 향후 입주시 건축물 배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 및 입주자 등과 협 의후 설치

*주 : 지점은 종합개선안도 참조, 교통영향평가 변경(19.2) 개선내용임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내용(변경)

1) 근린공원1(변경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구성비)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99,169.0	15,507.9				49기	시설율(7.79%)
기 반 시 설	소 계	9,901.6	9,901.6					4.97%
	도 로	8,231.9	8,231.9					
	광 장	1,669.7	1,669.7					
조경시설		2,391.4	2,391.4				13기	1.20%
휴양시설		635.3	635.3				28기	0.32%
운동시설		2,579.6	2,579.6				8기	1.30%
녹 지		183,661.1	-					녹지율(92.21%)
시 설 율 (법정 40%이하)		$(15,507.9 \div 199,169.0) \times 100 = 7.79\%$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99,169.0	15,507.9					49기	
기 반 시 설	소 계			9,901.6	9,901.6						
	도 로		전지역	8,231.9	8,231.9						
	광 장	가1		524.6	524.6						
		가2		279.2	279.2						
		가3		102.7	102.7						
		가4		84.3	84.3						
		가5		273.2	273.2						
		가6		256.9	256.9						
		가7		148.8	148.8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조경 시설	소 계			2,391.4	2,391.4					13기	
	잔디원지	나-1		557.1	557.1						
		나-2		158.8	158.8						
		나-3		110.0	110.0						
		나-4		216.0	216.0						
	초화원	다-1		236.5	236.5						
		다-2		856.5	856.5						
	데 크	라-1		119.4	119.4						
		라-2		137.1	137.1						
	앉음벽	①	전지역	-	-					13기	
휴양 시설	소 계			635.3	635.3					28기	
	휴게소	마-1		60.0	60.0						
		마-2		56.2	56.2						
		마-3		49.5	49.5						
		마-4		76.6	76.6						
		마-5		314.0	314.0						
	쉼 터	바-1		17.1	17.1						
		바-2		36.3	36.3						
		바-3		25.6	25.6						
	팔각정자	②	광장, 휴게소	-	-					3기	
	사각쉼터	③	광장, 휴게소	-	-					7기	
	평의자	④	전지역	-	-					18기	
운동 시설	소 계			2,579.6	2,579.6					8기	
	다목적운동장	사-1		1,033.5	1,033.5						
		사-2		1,050.0	1,050.0						
	배드민턴장	아		392.1	392.1						
	체력단련장	자		104.0	104.0						
	체력단련시설	⑤	체력단련장, 광장							8기	
녹 지	소 계			183,661.1	-						
	녹 지		전지역	183,661.1	-						

-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8,231.9				
기정	소 로	소 계				1,809.8				
		3류	1	1.5	80.4	120.6	시설연결로	광장가1	다목적운동장 사1	가각포함
		〃	2	2.0	125.0	256.2	시설연결로	광장 가2	광장 가2	가각포함
		〃	3		6.7	14.2	시설연결로	소로3-2	소로3-2	가각포함
		〃	4		29.6	59.2	시설연결로	광장 가6	광장 가5	
		〃	5		19.4	38.8	시설연결로	광장 가4	광장 가5	
		〃	6	1.5	40.4	60.6	시설연결로	데크 라2	데크 라2	
		〃	7		22.1	34.7	시설연결로	소로3-2	소로3-8	가각포함
		〃	8		90.2	137.5	시설연결로	산책로-4	소로3-2	가각포함
		〃	9	3.0	362.0	1,088.0	시설연결로	산책로-17	휴게소 마5	가각포함
	산책로	소 계				6,422.1				
			1	2.0	17.0	36.0	산책로	서측경계	산책로-2	가각포함
			2	1.5	356.6	553.5	산책로	산책로-7	쉼터 바1	가각포함
			3		348.1	552.1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7	가각포함
			4		187.3	286.6	산책로	소로3-2	산책로-2	가각포함
			5		171.6	268.0	산책로	광장 가1	산책로-7	가각포함
			6		33.8	68.8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7	가각포함
			7		1,317.7	1,992.1	산책로	배수지진입로	산책로-13	가각포함
			8		97.0	154.2	산책로	데크 라1	산책로-7	가각포함
			9	2.0	397.2	794.4	산책로	산책로-1	광장 가1	
			10	1.5	46.3	70.4	산책로	배수지진입로	산책로-7	가각포함
			11		37.5	58.0	산책로	배수지진입로	산책로-12	가각포함
			12		111.6	172.1	산책로	휴게소마5	산책로-7	가각포함
			13	2.0-28	335.7	711.7	산책로	광장 가3	남측경계	가각포함
			14	2.0	168.0	336.0	산책로	남측경계	광장 가2	
			15		96.8	193.6	산책로	산책로-1	하천경계	
			16		67.8	135.6	산책로	광장 가4	광장 가3	
			17		19.5	39.0	산책로	광장 가6	배수지진입로	

2) 어린이공원1(변경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구성비)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275.0	1,682.3				28기	시설율(51.36%)
기 반 시 설	소 계	737.5					22.52%
	도 로	605.9					
	광 장	131.6					
조경시설	-	-				2기	0.00%
휴양시설	172.2	172.2				18기	5.25%
유희시설	271.6	271.6				5기	8.29%
운동시설	501.0	501.0				3기	15.30%
녹 지	1,592.7	-					녹지율(48.64%)
시 설 율 (법정 60%이하)	(1,682.3 ÷ 3,275.0) × 100 = 51.36%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3,275.0	1,682.3					28기	
기 반 시 설	소 계			737.5	737.5						
	도 로		전지역	605.9	605.9						
	광 장	가1		71.7	71.7						
		가2		59.9	59.9						
조경 시설	소 계			-	-					2기	
	앉음벽	①	광장 및 녹지	-	-					2기	
휴 양 시 설	소 계			172.2	172.2					18기	
	휴게소	나1		38.2	38.2						
		나2		49.8	49.8						
		나3		84.2	84.2						
	사각쉼터	②	휴게소 및 광장	-	-					3기	
	평의자	③	전지역	-	-					15기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유학 시설	소 계			271.6	271.6					5기	
	어린이놀이터	다		271.6	271.6						
	조합놀이대	④	어린이놀이터	-	-					1기	
	시아소	⑤	어린이놀이터	-	-					1기	
	그네	⑥	어린이놀이터	-	-					1기	
	흔들놀이	⑦	어린이놀이터	-	-					2기	
운동 시설	소 계			501.0	501.0					3기	
	체력단련장	라		34.6	34.6						
	다목적운동장	마		466.4	466.4						
	체력단련시설	⑧	체력단련장	-	-					3기	
녹지	소 계			1,592.7	-						
	녹 지		전지역	1,592.7	-						

-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605.9				
기정	소 로	소 계				582.5				
		3류	1	2.0	32.2	64.4	시설연결로	광장 가-2	광장 가-1	
		〃	2		48.3	96.6	시설연결로	광장 가-1	다목적운동장	
		〃	3		8.6	17.2	진입로	북측경계	휴게소 나-2	
		〃	4		5.0	10.0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 가-1	
		〃	5		6.4	12.8	시설연결로	소로3-2	소로3-8	
		〃	6		15.0	30.0	진입로	소로3-3	휴게소나-3	
		〃	7		120.5	241.0	진입로	동측경계	서측경계	
		〃	8	1.2	77.4	92.9	시설연결로	광장 가-2	소로3-9	
		〃	9		14.7	17.6	시설연결로	소로3-2	휴게소나-3	
	산책로	소 계				23.4				
			1	1.0	4.4	4.4	부진입로	소로3-8	소로3-7	
			2		4.4	4.4	부진입로	소로3-8	소로3-7	
			3		4.4	4.4	부진입로	소로3-8	소로3-7	
			4	0.8	6.4	5.1	산책로	소로3-2	소로3-8	
			5		6.4	5.1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소로3-8	

3) 어린이공원2(변경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구성비)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506.0	806.0				21기	시설율(53.52%)
기 반 시 설	소 계	322.1					21.39%
	도 로	145.2					
	광 장	176.9					
조경시설	-	-				5기	0.00%
휴양시설	84.5	84.5				6기	5.61%
유희시설	337.4	337.4				6기	22.40%
운동시설	62.0	62.0				4기	4.12%
녹 지	700.0	-					녹지율(46.48%)
시 설 율 (법정 60%이하)	$(806.0 \div 1,506.0) \times 100 = 53.52\%$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506.0	806.0					21기	
기 반 시 설	소 계			322.1	322.1						
	도 로		전지역	145.2	145.2						
	광 장	가		176.9	176.9						
조 경 시 설	소 계			-	-					5기	
	앉음벽	①	전지역	-	-					3기	
	데 크	②	어린이놀이터	-	-					2기	
휴 양 시 설	소 계			84.5	84.5					6기	
	휴게소	나-1		45.3	45.3						
		나-2		19.6	19.6						
		나-3		19.6	19.6						
	조형파고라	③	휴게소 2, 3	-	-					2기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팔각정자	④	휴게소 1	-	-					1기	
	평의자	⑤	전지역	-	-					3기	
유 회 시 설	소 계			337.4	337.4					6기	
	어린이놀이터	다		337.4	337.4						
	조합놀이대-1	⑥	어린이놀이터	-	-					1기	
	조합놀이대-2	⑦	어린이놀이터	-	-					1기	
	조합놀이대-3	⑧	어린이놀이터	-	-					1기	
	조합놀이대-4	⑨	어린이놀이터	-	-					1기	
	흔들놀이	⑩	어린이놀이터	-	-					2기	
운 동 시 설	소 계			62.0	62.0					4기	
	체력단련장	라		62.0	62.0						
	체력단련시설	⑪	체력단련장	-	-					4기	
녹 지	소 계			700.0	-						
	녹 지		전지역	700.0	-						

-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145.2				
기정	소 로	소 계				145.2				
		3류	1	2.5	4.2	10.5	진입로	남측경계	체력단련장	
		〃	2	1.5	20.0	30.5	시설연결로	광장 가	어린이놀이터	가각 포함
		〃	3	1.2	4.6	6.9	시설연결로	소로3-2	소로3-4	가각 포함
		〃	4		14.9	17.8	시설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가각 포함
		〃	5		6.9	10.4	시설연결로	소로3-4	소로3-2	가각 포함
		〃	6		14.9	17.8	시설연결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가각 포함
		〃	7		22.0	34.9	시설연결로	소로3-2	소로3-6	가각 포함
		〃	8		13.3	16.4	시설연결로	체력단련장	소로3-6	가각 포함

4) 어린이공원3(변경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104.0	1,006.0				25기	시설율(47.81%)
기 반 시 설	소 계	552.6	552.6					26.27%
	도 로	469.8	469.8					
	광 장	82.8	82.8					
조경시설		-	-				7기	0.00%
휴양시설		130.9	130.9				11기	6.22%
유희시설		261.2	261.2				3기	12.41%
운동시설		61.3	61.3				4기	2.91%
녹 지		1,098.0	-					녹지율(52.19%)
시 설 율 (법정 60%이하)		$(1,006.0 \div 2,104.0) \times 100 = 47.81\%$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104.0	1,006.0					25기	
기 반 시 설	소 계			552.6	552.6						
	도 로		전지역	469.8	469.8						
	광 장	가1		38.2	38.2						
		가2		14.6	14.6						
		가3		30.0	30.0						
조 경 시 설	소 계			-	-					7기	
	앉음벽	①	체력단련장 및 녹지	-	-					4기	
	식수대	②	어린이놀이터	-	-					3기	
휴 양 시 설	소 계			130.9	130.9					11기	
	휴게소	나1		53.2	53.2						
		나2		52.9	52.9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나3		7.0	7.0						
		나4		7.0	7.0						
		나5		10.8	10.8						
	팔각정자	③	휴게소-1	-	-					1기	
	사각쉼터	④	휴게소-2	-	-					1기	
	평의자	⑤	전지역	-	-					9기	
유 회 시 설	소 계			261.2	261.2					3기	
	어린이놀이터	다		261.2	261.2						
	조합놀이대	⑥	어린이놀이터	-	-					1기	
	시아소	⑦	어린이놀이터	-	-					2기	
공 동 시 설	소 계			61.3	61.3					4기	
	체력단련장	라1		32.5	32.5						
		라2		28.8	28.8						
	체력단련시설	⑧	체력단련장	-	-					4기	
녹 지	소 계			1,098.0	-						
	녹 지		전지역	1,098.0	-						

-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469.8				
기정	소 로	소 계				469.8				
		3류	1	3.0	34.0	102.0	진입로	광장 가1	북측경계	
		〃	2		37.3	112.0	진입로	광장 가3	남측경계	
		〃	3	2.0	10.2	22.4	진입로	북측경계	소로3-5	가각포함
		〃	4		12.6	27.1	진입로	남측경계	소로3-5	가각포함
		〃	5	1.5	67.5	101.3	시설연결로	소로3-3	소로3-3	
		〃	6	2.0	6.3	12.9	시설연결로	광장 가1	소로3-5	가각포함
		〃	7		10.0	22.5	시설연결로	소로3-2	소로3-5	가각포함
		〃	8		11.2	23.4	진입로	동측경계	소로3-2	가각포함
		〃	9		11.2	23.1	진입로	동측경계	소로3-2	가각포함
		〃	10		11.2	23.1	진입로	동측경계	소로3-2	가각포함

5) 어린이공원4(변경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715.0	967.2				21기	시설율(56.39%)
기 반 시 설	소 계	518.1					30.21%
	도 로	227.7					
	광 장	290.4					
조경시설	152.0	152.0				5기	8.86%
휴양시설	61.3	61.3				10기	3.57%
유희시설	212.1	212.1				3기	12.37%
운동시설	23.7	23.7				3기	1.38%
녹 지	747.8	-					녹지율(43.61%)
시 설 율 (법정 60%이하)	$(967.2 \div 1,715.0) \times 100 = 56.39\%$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715.0	967.2					21기	
기 반 시 설	소 계			518.1	518.1						
	도 로		전지역	227.7	227.7						
	광 장	가1		44.3	44.3						
		가2		36.9	36.9						
		가3		209.2	209.2						
조 경 시 설	소 계			152.0	152.0					5기	
	조망데크	나		152.0	152.0						
	무대데크	①	광장-3	-	-					1기	
	앉음벽	②	체력단련장 및 녹지	-	-					4기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휴양시설	소 계			61.3	61.3					10기	
	휴게소	다		52.7	52.7						
	데크휴게소	라		8.6	8.6						
	사각쉼터	③	휴게소	-	-					1기	
	평의자	④	전지역	-	-					9기	
유흥시설	소 계			212.1	212.1					3기	
	어린이놀이터	마		187.4	187.4						
	유아놀이터	바		24.7	24.7						
	조합놀이대	⑤	어린이놀이터	-	-					1기	
	흔들놀이	⑥	어린이놀이터	-	-					2기	
운동시설	소 계			23.7	23.7					3기	
	체력단련장	사		23.7	23.7						
	체력단련시설	⑦	체력단련장	-	-					3기	
녹지	소 계			747.8	-						
	녹 지		전지역	747.8	-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227.7				
기정	소로	소 계				227.7				
		3류	1	3.0	14.7	44.1	시설연결로	휴게소	광장 가3	
		〃	2	2.0	10.6	21.2	시설연결로	광장 가2	광장 가3	
		〃	3		12.1	24.2	시설연결로	광장 가3	조망데크	
		〃	4		5.2	10.4	시설연결로	광장 가3	조망데크	
		〃	5		12.1	24.2	시설연결로	광장 가3	조망데크	
		〃	6	1.5	8.6	12.9	시설연결로	소로3-7	광장 가3	
		〃	7		24.1	36.9	시설연결로	광장 가2	소로3-1	가각포함
		〃	8		9.9	14.9	시설연결로	휴게소	조망데크	
		〃	9		17.8	26.7	시설연결로	휴게소	조망데크	
		〃	10	1.0	12.2	12.2	시설연결로	소로3-2	광장 가3	

6) 어린이공원5(변경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543.0	763.8				20기	시설율(49.50%)
기 반 시 설	소 계	486.8	486.8					31.55%
	도 로	223.6	223.6					
	광 장	263.2	263.2					
조경시설		-	-				3기	0.00%
휴양시설		14.4	14.4				10기	0.93%
유희시설		262.6	262.6				5기	17.02%
운동시설		-	-				2기	0.00%
녹 지		779.2	-					녹지율(50.50%)
시 설 율 (법정 60%이하)		$(763.8 \div 1,543) \times 100 = 49.50\%$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543.0	763.8					20기	
기 반 시 설	소 계			486.8	486.8						
	도 로		전지역	223.6	223.6						
	광 장	가-1		32.9	32.9						
		가-2		213.3	213.3						
		가-3		17.0	17.0						
조 경 시 설	소 계			-	-					3기	
	앉음벽	①	광장-2, 녹지	-	-					3기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휴양시설	소 계			14.4	14.4					10기	
	데크휴게소	나		14.4	14.4						
	사각쉼터	②	광장-2	-	-					1기	
	평의자	③	전지역	-	-					9기	
유아시설	소 계			262.6	262.6					5기	
	어린이놀이터	다		202.8	202.8						
	유아놀이터	라		59.8	59.8						
	조합놀이대	④	어린이놀이터	-	-					1기	
	사이소	⑤	어린이놀이터	-	-					1기	
	흔들놀이	⑥	어린이놀이터	-	-					3기	
운동시설	소 계			-	-					2기	
	체력단련시설	⑦	광장-2	-	-					2기	
녹지	소 계			779.2	-						
	녹 지		전지역	779.2	-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223.6				
기정	소로	소 계				223.6				
		3류	1	2.0	13.6	27.2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 가2	
		〃	2		18.5	41.4	시설연결로	광장 가3	소로3-3	가각포함
		〃	3		41.6	102.7	진입로	광장 가1	서측경계	가각포함
		〃	4	1.5	7.9	12.3	시설연결로	광장 가2	소로3-3	가각포함
		〃	5	0.8	16.8	13.6	시설연결로	소로3-1	광장 가2	디딤돌
		〃	6		16.5	13.2	진입로	소로3-3	서측경계	디딤돌
			7		16.5	13.2	진입로	소로3-3	서측경계	디딤돌

7) 어린이공원6(변경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643.0	877.3				20기	시설율(53.39%)
기 반 시 설	소 계	292.1	292.1					17.78%
	도 로	161.3	161.3					
	광 장	130.8	130.8					
조경시설		-	-				2기	0.00%
휴양시설		52.0	52.0				10기	3.16%
유희시설		257.3	257.3				5기	15.66%
운동시설		275.9	275.9				3기	16.79%
녹 지		765.7	-					녹지율(46.61%)
시 설 율 (법정 60%이하)		$(877.3 \div 1,643.0) \times 100 = 53.39\%$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643.0	877.3					20기	
기 반 시 설	소 계			292.1	292.1						
	도 로		전지역	161.3	161.3						
	광 장	가-1		24.7	24.7						
		가-2		10.2	10.2						
		가-3		95.9	95.9						
조 경 시 설	소 계			-	-					2기	
	앞음벽	①	녹 지	-	-					2기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휴양시설	소 계			52.0	52.0					10기	
	휴게소	나		52.0	52.0						
	조형파고라	②	휴게소	-	-					3기	
	평의자	③	전지역	-	-					7기	
유흥시설	소 계			257.3	257.3					5기	
	어린이놀이터	다		257.3	257.3						
	조합놀이대	④	어린이놀이터	-	-					1기	
	시아소	⑤	어린이놀이터	-	-					2기	
	흔들놀이	⑥	어린이놀이터	-	-					2기	
다목적시설	소 계			275.9	275.9					3기	
	다목적운동장	라		275.9	275.9						
	체력단련시설	⑦	다목적운동장	-	-					3기	
녹지	소 계			765.7	-						
	녹 지		전지역	765.7	-						

-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161.3				
기정	소로	소 계				161.3				
		3류	1	3.0	16.0	48.0	진입로	광장 가-1	소로3-4	
		〃	2	2.5	15.0	37.5	진입로	동측경계	어린이놀이터	
		〃	3	1.65	15.0	24.8	진입로	광장 가-3	광장 가3	
		〃	4	1.5	34.0	51.0	시설연결로	어린이놀이터	휴게소	

8) 어린이공원(변경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700.0	1,353.1				26기	시설율(50.11%)
기 반 시 설	소 계	621.3					23.01%
	도 로	321.6					
	광 장	299.7					
조경시설	-	-				2기	0.00%
휴양시설	96.5	96.5				14기	3.57%
유희시설	401.3	401.3				6기	14.86%
운동시설	234.0	234.0				4기	8.67%
녹 지	1,346.9	-					녹지율(49.89%)
시 설 율 (법정 60%이하)	$(1,353.1 \div 2,700.0) \times 100 = 50.11\%$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2,700.0	1,353.1					26기	
기 반 시 설	소 계			621.3	621.3						
	도 로		전지역	321.6	321.6						
	광 장	가-1		136.9	136.9						
		가-2		96.5	96.5						
		가-3		15.6	15.6						
		가-4		50.7	50.7						
조 경 시 설	소 계			-	-					2기	
	앉음벽	①	광장 및 녹지	-	-					2기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휴양시설	소 계			96.5	96.5					14기	
	데크휴게소	나		41.1	41.1						
	휴게소	다		55.4	55.4						
	팔각정자	②	휴게소	-	-					1기	
	사각쉼터	③	광장-2	-	-					1기	
	평의자	④	전지역	-	-					12기	
유흥시설	소 계			401.3	401.3					6기	
	어린이놀이터	라		401.3	401.3						
	조합놀이대	⑤	어린이놀이터	-	-					1기	
	시아소	⑥	어린이놀이터							2기	
	그네	⑦	어린이놀이터							1기	
	흔들놀이	⑧	어린이놀이터							2기	
운동시설	소 계			234.0	234.0					4기	
	다목적운동장	마		181.8	181.8						
	체력단련장	바		52.2	52.2						
	체력단련시설	⑨	체력단련장							4기	
녹지	소 계			1,346.9	-						
	녹 지		전지역	1,346.9	-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321.6				
기정	소로	소 계				160.8				
		3류	1	25	128	32.6	시설연결로	소로3-3	어린이놀이터	가각포함
		〃	2	1.7-2.9	7.5	16.7	시설연결로	휴게소	어린이놀이터	
		〃	3	2.0	39.9	80.0	진입로	광장 가-4	동측경계	가각포함
		〃	4	1.5	7.0	10.5	시설연결로	산책로-1	어린이놀이터	
		〃	5		3.5	6.0	시설연결로	소로3-3	산책로-1	가각포함
		〃	6		10.0	15.0	시설연결로	소로3-3	다목적운동장	
	산책로	소 계				160.8				
			1	1.5	70.0	106.6	산책로	광장 가-1	소로3-1	가각포함
			2		21.9	32.7	산책로	소로3-1	어린이놀이터	가각포함
			3	0.8	7.0	5.6	산책로	동측경계	산책로-2	
			4		10.0	8.0	산책로	동측경계	산책로-2	
			5		9.9	7.9	산책로	소로3-3	산책로-1	

9) 어린이공원8(변경)

○ 기 정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503.0	781.3				22기	시설율(51.98%)
기 반 시 설	소 계	321.3					21.38%
	도 로	131.4					
	광 장	189.9					
조경시설	-	-				2기	0.00%
휴양시설	100.0	100.0				12기	6.65%
유희시설	310.4	310.4				5기	20.65%
운동시설	49.6	49.6				3기	3.30%
녹 지	721.7	-					녹지율(48.02%)
시 설 율 (법정 60%이하)	$(781.3 \div 1,503.0) \times 100 = 51.98\%$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503.0	781.3					22기	
기 반 시 설	소 계			321.3	321.3						
	도 로		전지역	131.4	131.4						
	광 장	가-1		168.3	168.3						
		가-2		21.6	21.6						
조 경 시 설	소 계			-	-					2기	
	앉음벽	①	녹지	-	-					2기	
휴 양 시 설	소 계			100.0	100.0					12기	
	휴게소	나		100.0	100.0						
	사각쉼터	②	휴게소	-	-					2기	
	평의자	③	전지역	-	-					10기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유 희 시 설	소 계			310.4	310.4					5기	
	어린이놀이터	다		310.4	310.4						
	조합놀이대	④	어린이놀이터	-	-					1기	
	사이소	⑤	어린이놀이터	-	-					2기	
	흔들놀이	⑥	어린이놀이터	-	-					2기	
공 공 시 설	소 계			49.6	49.6					3기	
	체력단련장	라		49.6	49.6						
	체력단련시설	⑦	체력단련장	-	-					3기	
녹 지	소 계			721.7	-						
	녹 지		전지역	721.7	-						

-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131.4				
기정	소 로	소 계				90.5				
		3류	1	2.0	16.0	32.0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 가-1	
		〃	2	1.5	31.0	46.5	진입로	광장 가2	휴게소	
		〃	3		8.0	12.0	진입로	광장 가2	광장 가-1	
	산책로	소 계				40.9				
			1	0.8	5.7	4.6	산책로	북측경계	체력단련장	
			2		16.4	13.1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3	
			3		10.0	8.0	산책로	서측경계	휴게소	
			4		6.8	5.4	산책로	산책로-5	어린이놀이터	
			5		12.3	9.8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2	

○ 변경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503.00	803.0				22기	시설율(53.43%)
기 반 시 설	소 계	343.0	343.0					21.82%
	도 로	138.3	138.3					
	광 장	168.3	168.3					
조경시설		-					2기	0.00%
휴양시설		100.0	100.0				12기	6.65%
유흥시설		310.4	310.4				5기	20.65%
운동시설		49.6	49.6				3기	3.30%
녹 지		700.0	-					녹지율(46.57%)
시 설 율 (법정 60%이하)		$(803.0 \div 1,503.0) \times 100 = 53.43\%$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비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1,503.00	803.00					22기	
기 반 시 설	소 계			343.00	343.00						
	도 로		전지역	138.3	138.3						
	광 장	가-1		168.3	168.3						
		가-2		36.4	36.4						
조 경 시 설	소 계			-	-					2기	
	앉음벽	①	녹지	-	-					2기	
휴 양 시 설	소 계			100.0	100.0					12기	
	휴게소	나		100.0	100.0						
	사각쉼터	②	휴게소	-	-					2기	
	평의자	③	전지역	-	-					10기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유 회 시 설	소 계			310.4	310.4					5기	
	어린이놀이터	다		310.4	310.4						
	조합놀이대	④	어린이놀이터	-	-					1기	
	사이소	⑤	어린이놀이터	-	-					2기	
	흔들놀이	⑥	어린이놀이터	-	-					2기	
운 동 시 설	소 계			49.6	49.6					3기	
	체력단련장	라		49.6	49.6						
	체력단련시설	⑦	체력단련장	-	-					3기	
녹 지	소 계			700.0	-						
	녹 지		전지역	700.0	-						

-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138.30				
변경	소 로	소 계				101.0				
		3류	1	20	15.6	31.2	진입로	북측경계	광장 가-1	
		〃	2	1.5	35.2	52.8	진입로	광장 가2	휴게소	
		〃	3		11.3	17.0	진입로	광장 가2	광장 가-1	
	산책로	소 계				37.3				
			1	0.8	4.8	3.8	산책로	북측경계	체력단련장	
			2		16.4	13.1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3	
			3		6.5	5.2	산책로	서측경계	휴게소	
			4		6.8	5.4	산책로	산책로-5	어린이놀이터	
			5		12.3	9.8	산책로	광장 가1	소로 3-2	

10) 소공원1(변경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851.0	170.1				18	시설율(19.98%)
기 반 시 설	소 계	118.4					13.91%
	도 로	66.0					
	광 장	52.4					
조경시설	51.7	51.7				8	6.07%
휴양시설	-	-				10	0.00%
녹 지	680.9	-					녹지율(80.02%)
시 설 율 (법정 20%이하)	$(170.1 \div 851.0) \times 100 = 19.98\%$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851.0	170.1					18기	
기 반 시 설	소 계			118.4	118.4						
	도 로		전지역	66.0	66.0						
	광 장	가		52.4	52.4						
조 경 시 설	소 계			51.7	51.7					8기	
	조망데크	나	-	51.7	51.7						
	디딤돌	①	녹 지	-	-					8기	
휴 양 시 설	소 계			-	-					10기	
	육각정자	②	광장 가2	-	-					1기	
	평의자	③	녹 지	-	-					9기	
녹 지	소 계			680.9	-						
	녹 지		전지역	680.9	-						

-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 계						66.0				
기정	소로	소 계				66.0				
		3류	1	1.0	35.3	35.3	진입로	서측경계	동측경계	
		〃	2	1.1	8.9	9.8	시설연결로	소로 3-1	조망데크	
		〃	3		19.0	20.9	시설연결로	소로 3-1	조망데크	

11) 소공원2(변경없음)

- 전라남도 고시 제2018-151호(2018.05.17.)에 의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임

-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583.0	1126				11기	시설율(19.31%)
기 반 시 설	소 계	1126	1126					19.31%
	도 로	83.4	83.4					
	광 장	29.2	29.2					
조경시설		-	-				1기	0.00%
휴양시설		-	-				7기	0.00%
운동시설		-	-				3기	0.00%
녹 지		470.4	-					녹지율(80.69%)
시 설 율 (법정 20%이하)		$(1126 \div 583.0) \times 100 = 19.31\%$						

-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합 계				583.0	1126					11기	
기 반 시 설	소 계			1126	1126						
	도 로		전지역	83.4	83.4						
	광 장	가		29.2	29.2						

구분	시설명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 축 물			공작물 (기)	비 고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조경 시설	소 계			-	-					1기	
	디딤돌	①	녹지	-	-					1기	
휴양 시설	소 계			-	-					7기	
	육각정자	②	녹지	-	-					1기	
	평의자	③	녹지	-	-					6기	
운동 시설	소 계			-	-					3기	
	체력단련시설	④	광장	-	-					3기	
녹지	소 계			470.4	-						
	녹 지		전지역	470.4	-						

- 도로조서

구분	등 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합 계						83.4				
기정	소로	소 계				83.4				
		3류	1	1.0	41.9	41.9	진입로	서측경계	소로 3-2	
		4	2		41.5	41.5	진입로	서측경계	동측경계	

마.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면 : 게재생략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담양군청 투자유치과(061-380-3132)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해당없음)

전라남도 고시 제2019-37호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광양시 고시 제2018-193(2018.10.10.)호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된 광양 익신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14

전라남도지사

I 산업단지 개요

1. 관리기관 : 광양시장

2. 조성목적

- 광양시는 단위 공장으로서 세계 최대를 자랑하는 광양제철소와 국내 최초의 계획형 신항만인 광양 컨테이너부두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지로서 전략적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산업도시의 위상 정립
- 광양시 산업단지 개발현황은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현재 산업단지 또는 공장용지로 조성된 지역은 9%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상태
- 따라서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남측으로 초남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대상지를 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

3. 조성 근거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4.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일원

나. 면 적 : 474,003.1㎡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2008년 ~ 사업 준공(2016.10.20)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환지방식)

II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 기본 방향

- 가. 21세기 동북아 물류 경제권의 중심지로서 광양의 장기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 나. 산업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합리적인 업종배치로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다.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산업단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유도

2.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합계	474,003.1	100.0	-
산업시설구역	347,966.7	73.4	공장용지
지원시설구역	17,153.2	3.6	지원시설
공공시설구역	83,538.3	17.7	도로, 주차장, 수도시설
녹지구역	25,344.9	5.3	공원, 녹지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변경)

가. 입주대상업(변경)

1) 산업시설구역(변경)

구분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업 종 명
일반제조업(C)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부동산업(L)	L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	N76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주1) 상기업종에 적합하더라도 공해유발업종, 용수다소비 업종 등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주2) 부동산 임대업은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

2)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의 업종

나. 입주기업의 자격(변경)

1) 산업시설구역(변경)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이라한다) 제2조제1호 및 제18호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에 의한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 입주기업은 모든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제출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사업장의 경우 입주 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마련하여 계약조건에 명시
 -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니켈, 카드뮴, 비소, 벤젠 등 5개 항목은 다음의 임계배출량을 근거로 총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및 미 배출업체 내에서 입주를 허용함

〈입주제한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임계배출량 산정결과〉

구분	물질	발암성				
		포름알데히드	니켈	카드뮴	비소	벤젠
익산일반산업단지 임계배출량		0.0011g/s (35kg/년)	0.0012g/s (38kg/년)	0.00004g/s (1.3kg/년)	0.00030g/s (9.5kg/년)	0.0344g/s (1,084kg/년)

주) 임계배출량은 위해성평가 예측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누적배출량을 의미함(배출량 산정 및 예측결과 “광양 외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 포함) 위생·공중보건, 2013.7, 광양시”,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 2013.11, 광양시” 참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등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입주자격을 부여받은 자(태양광발전사업자가 공공용지나 가동 중인 공장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허용)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비주거용 건물 또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을 희망하는 입주자격을 갖춘 자
 - 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L68112)업종
 - 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N763)업종

2)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산업집적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3) 공공시설구역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다. 입주 우선 순

1) 산업시설구역

- 1순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공고일 현재 본사와 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기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2순위 : 광양시 및 전라남도와 MOU를 체결하거나 입주 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입주면적 및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 3순위 :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개별입지공장을 익신산단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려는 광양시 관내 기업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2) 지원시설구역 : 경쟁입찰 낙찰가격 순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6항제3호)

4. 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가. 용도별 구역면적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계		474,003.1	100.0	
산업시설구역		347,966.7	73.4	
지원시설구역		17,153.2	3.6	
공공시설구역	소계	108,883.2	23.0	
	도로	71,064.5	15.1	보행자 포함
	녹지 및 공원	25,344.9	5.3	
	기타	12,473.8	2.6	주차장, 수도시설

주) 산업시설구역은 입주가능 업종으로 세부용도 구분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변경)

1) 산업시설구역(변경)

- 산업집적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업집적법 제2조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가목 2)의 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단,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2) 지원시설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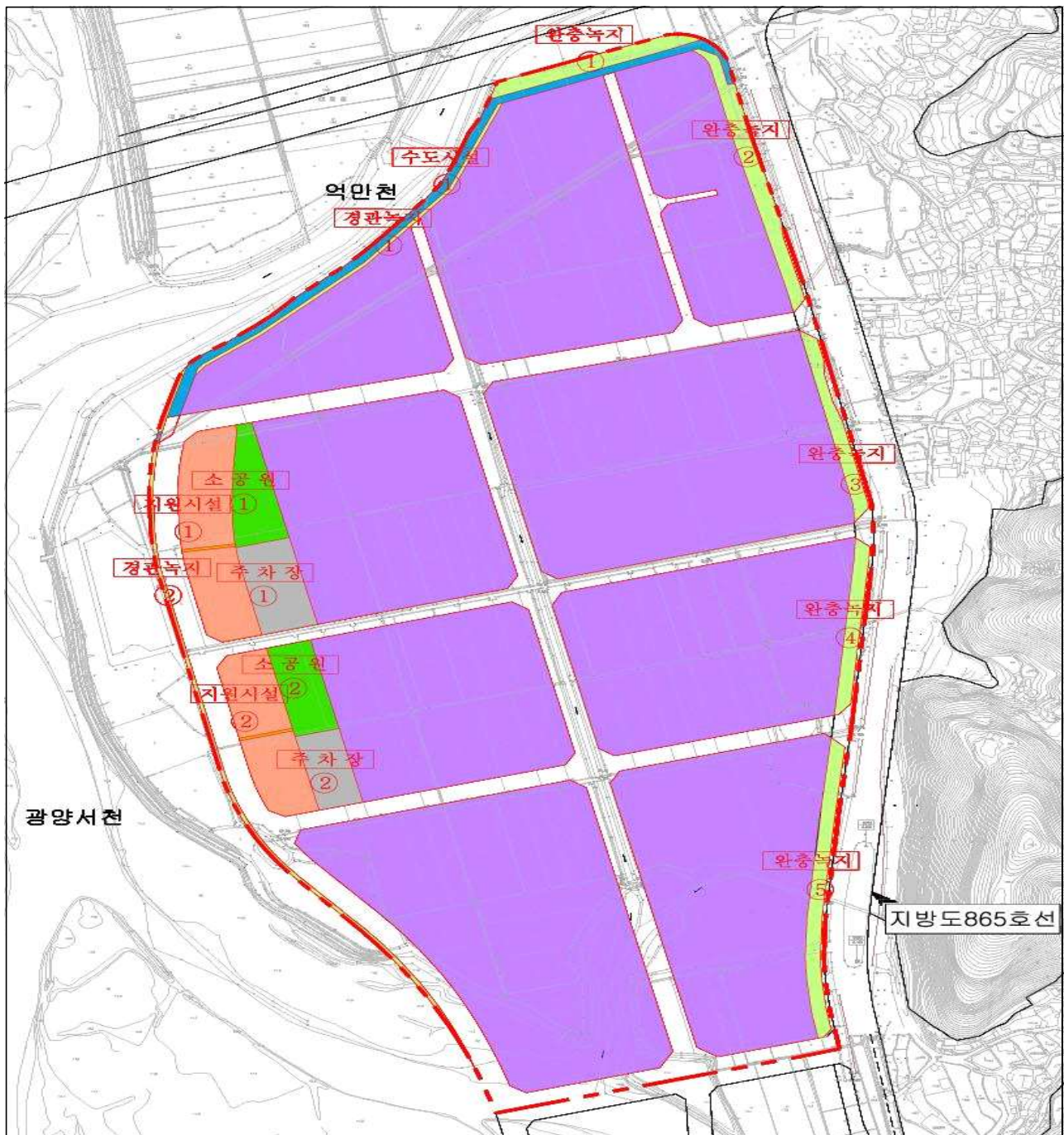
- 산업집적법 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산업집적법 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 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입주업체 지원에 필요한 시설물로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3) 공공시설구역(변경)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및 관련시설

다. 용도별 구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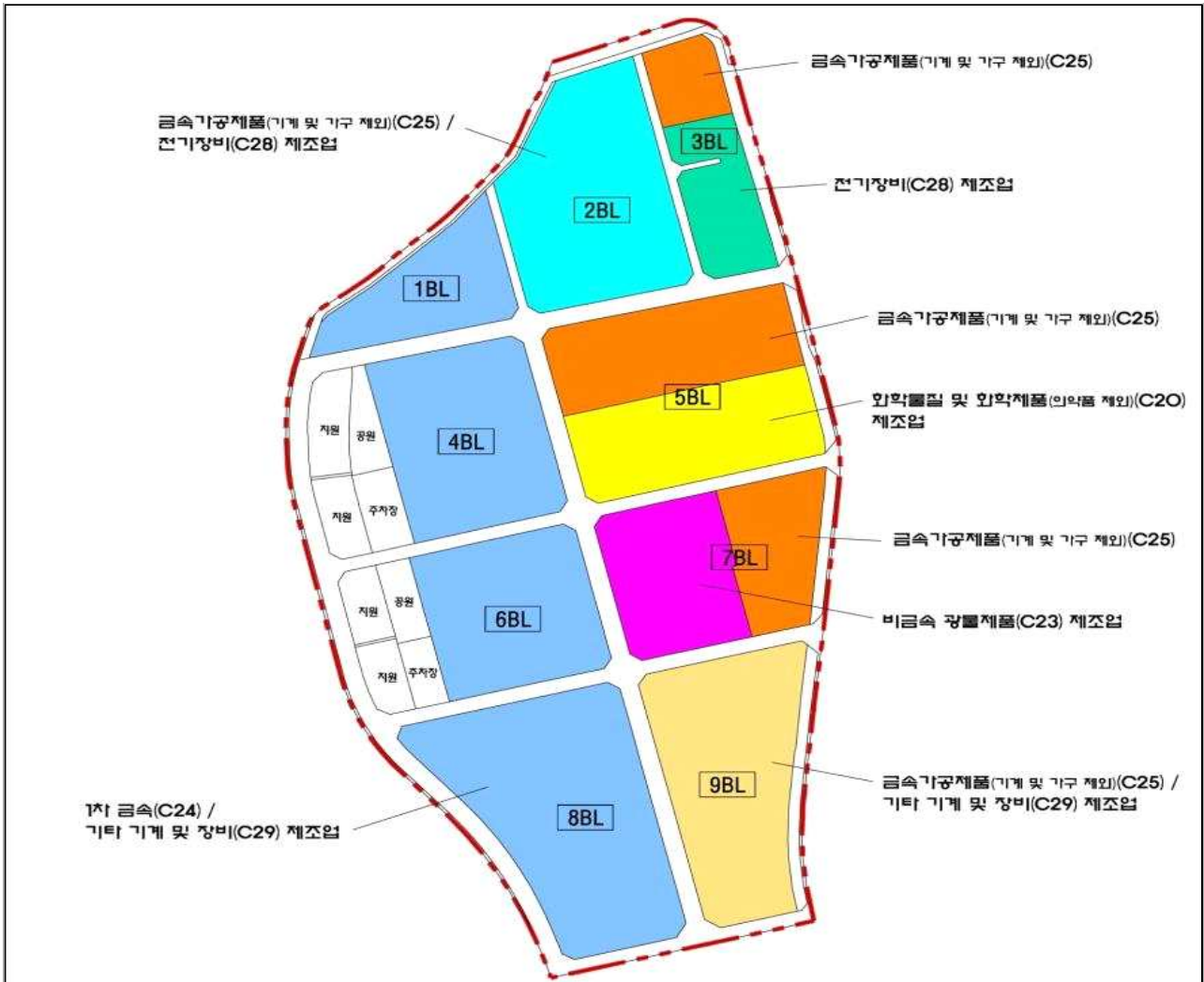


5.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변경)

가. 배치기준

- 환경적 측면(대기, 수질, 소음, 진동)을 고려하여 배치
- 상호연관 업종별로 집단화 및 협업화를 고려하여 배치
- 지원시설구역은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 활동측면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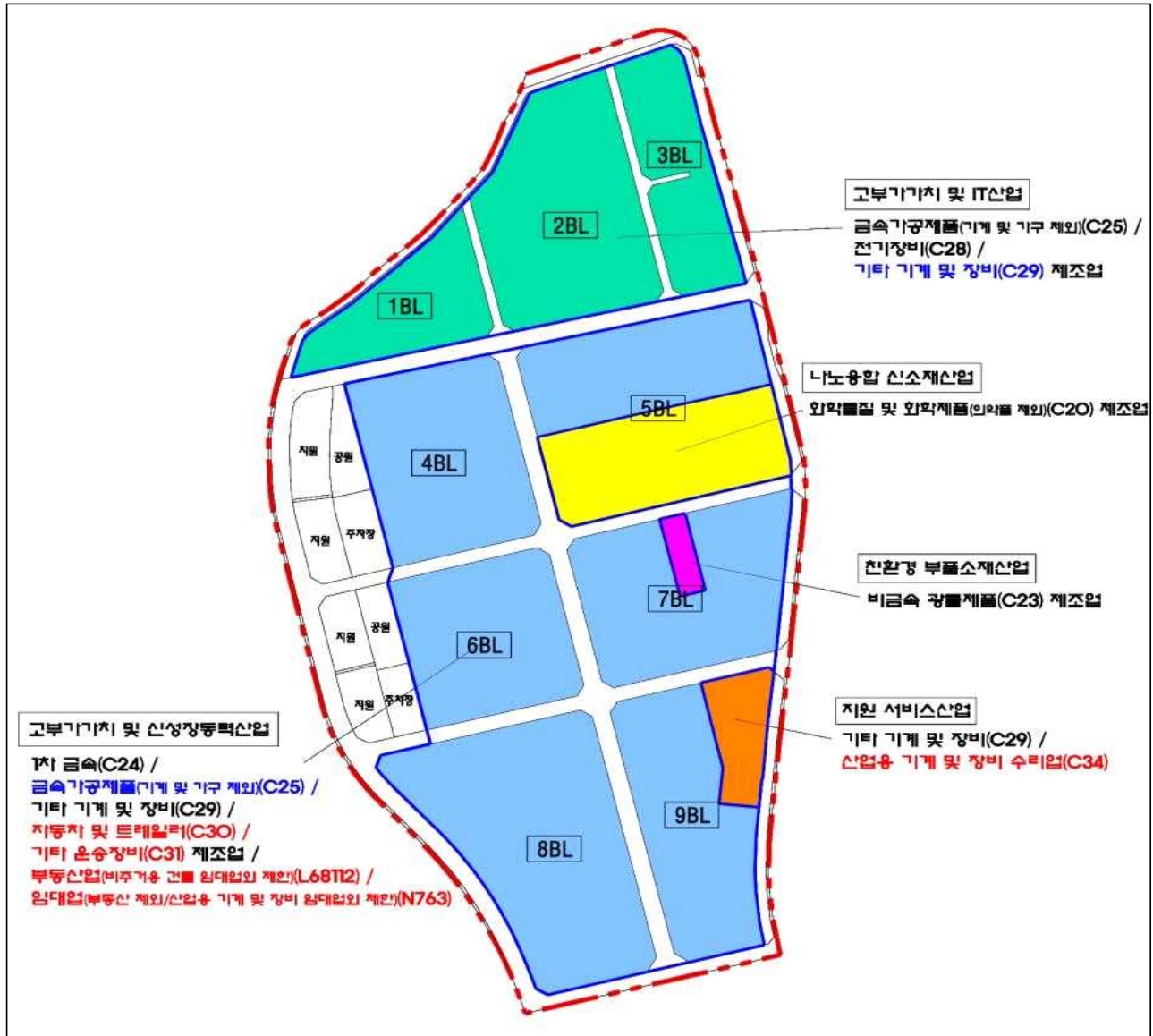
나. 업종별 배치계획(기정)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전기장비 제조업	14,433.9	4.1
전기장비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3,176.3	12.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8,692.5	8.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51,179.2	14.7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775.3	6.8
금속가공 및 기타기계·장비 제조업	42,089.8	12.1
1차금속 및 기타기계·장비 제조업	144,619.7	41.6
합 계	347,966.7	100.0

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금속가공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임

다.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구 분		부지면적 (㎡)	구성비 (%)
전략산업	업 종		
고부가가치 및 IT산업	금속가공제품(C25) / 전기장비(C28)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제조업	84,761.6	24.4
나노융합 신소재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C20) 제조업	28,692.5	8.2
친환경 부품소재산업	비금속 광물제품(C23)제조업	2,660.1	0.8
고부가가치 및 신성장동력산업	1차 금속(C24) / 금속가공제품(C25) / 기타 기계 및 장비(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C30) / 기타 운송장비(C31) 제조업 부동산임대(L68112) / 임대업(N763)	223,077.1	64.1
지원 서비스산업	기타 기계 및 장비(C29) / 산업용 기계 및 장비(C34) 수리업	8,775.4	2.5
합 계		347,966.7	100.0

주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제외),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부동산임대(비주거용건물 임대업외 제한), 임대업(부동산 제외/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외 제한)임
 주2) 부동산 임대업은 최초 분양에서 제외되고,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

6. 지원시설의 설치 및 오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지원시설구역은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 활동측면 고려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 설치운영

나. 오·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오·폐수는 사업체별로 1차 처리 후 오수관로를 통하여 광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7.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변경)

가. 분양계획(변경)

구분		총면적	분양 가능면적				사업 시행자	
			분양	미분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합계	기정	474,003.1	91,228.0	-	273,891.9	273,891.9	365,119.9	광양 익신 일반 산업 단지 개발 사업 조합
	변경		131,391.1		233,728.8	233,728.8		
산업 시설 용지	기정	347,966.7	91,228.0	-	256,738.7	256,738.7	347,966.7	
	변경		114,237.9	-	233,728.8	233,728.8		
지원 시설 용지	기정	17,153.2	-	-	17,153.2	17,153.2	17,153.2	
	변경		17,153.2	-	-	-		
공공 시설 용지		83,538.3	-	-	-	-	-	
녹지 용지		25,344.9	-	-	-	-	-	

나. 입주계획

(단위 : 개사, m²)

구분	입주업체수(필지기준)			면적		
	합계	제조업	기타	합계	제조업	기타
향후계획	113	90(19)	23	365,119.9	347,966.7	17,153.2

주) ()은 현재 입주 운영중인 업체임

다. 입지여건(기반시설)(변경)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도 로	- 주진입도로는 국도865호선, 남해고속도로를 이용 광양IC를 경유해 사업대상지로 접근 - 단지내도로 - 13개 노선 L=3,910m, B=3-35m, 면적: 71,064.5㎡
용 수	- 용수량 - 기정 : 2,126㎡/일 (공업용수 : 1,893㎡/일, 생활용수 : 233㎡/일) - 변경 : 2,002㎡/일 (공업용수 : 1,769㎡/일, 생활용수 : 233㎡/일)
전 력	- 전력공급계획 - 기정 : 153,876MWh/년 → 변경 : 119,426MWh/년 - 광양변전소에서 공급예정
통 신	통신공급계획(KT 광양지점에서 공급예정) - 기정 : 179회선 → 변경 : 180회선
환 경	- 폐기물처리계획(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기정 : 948.92톤/월 → 변경 : 934.42톤/월 - 하수처리계획 ▶단지배출량 - 기정 : 860㎡/일(공업폐수 : 655㎡/일, 생활오수: 205㎡/일) - 변경 : 797㎡/일(공업폐수 : 591㎡/일, 생활오수: 206㎡/일) ▶사업체별로 1차처리 후 오수관로를 통하여 광양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

라. 분양공고 : 2015년 10월

8. 사후관리계획

가. 목 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
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나. 세부관리계획

1)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에 따라 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
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업집적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양도할 수
있음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분양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
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
도,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업집적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양도할 수 있음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
-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업집적법 제4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기준 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2)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내 공원과 차단녹지를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와 주민에게 휴식 공간 제공

3)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45조에 의하여 안전관리,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입주업체 기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위험시설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설치할 때에는 관계법령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광양시 관내 파출소, 소방서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나)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을 정하여 입주제한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사업장의 입주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감 대책을 제시
- 산업시설 계획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을 최소화토록 각자의 배출허용기준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의거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할 것임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주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할 계획임
- 배출 유해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임
- 다량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도장공정이 있는 업체의 입주 제한과 작업장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장소는 밀폐화(Clean Room)하는 등의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

다)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를 향상시켜 산업재해 발생감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노력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산단 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조치를 하여야 함.

4) 기반시설지원

-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9. 관련도서 열람

- 전라남도 혁신경제과(☎061-286-3852) 및 광양시 지역경제과(☎061-797-3455)에 비치하고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19-122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 2. 14

전라남도지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일 자
조경공사업 (150174)	부경종합건설 주식회사(김연상)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715-3	2019. 02. 01.

전라남도 공고 제2019-128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 2. 14

전라남도지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일 자
토목건축공사업 (150477)	대명종합건설 주식회사(강경우)	여수시 무선6길 42-9, 1층(선원동)	2019. 02. 07.

전라남도 공고 제2019-134호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규 등록하였
기 공고합니다.

2019. 2. 14

전라남도지사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요사업	비고
2019-1- 전라남도-02	목포고양이 보호연합	전남 목포시 용해로 60번길 23	이윤옥	○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반려동물 복지교육 등	

전라남도 공고 제2019-140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 2. 14

전라남도지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등 록 일 자
건축공사업 (150892)	주식회사 서원종합건설 (박병곤)	여수시 무선로 147,3층 (선원동)	2019. 02. 11.

전라남도 공고 제2019-141호

2019년 전라남도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2019년 전라남도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4

전라남도지사

1. 공 고 명 : 2019년 전라남도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2. 주요내용
 - 문화재 보존 및 상시관리
 - 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 역사문화 자원의 세계화 위상제고
3. 관련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7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조(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4. 연 락 처
 -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자원과
 - 주 소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번지
 - 연락처 : 전화 (061)286-5331, 전자메일 husine@korea.kr

2019년도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I. 2019년도 계획 개요

1. 계획배경

-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참고하여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전년까지 문화재 행정 전반에 걸쳐서 얻은 성과를 2019년 행정 시스템에 정착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재 정책을 수행하도록 함

2. 계획목적

- 지난해의 주요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화재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기존의 정책과제는 더욱 발전시키고, 새로운 과제 지속 발굴 추진
 - 최근 문화재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면서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정책의 중요성 대두
 - 도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문화재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활용태세 구축

3. 정책환경

-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악화
 - 최근 이상기후 현상, 각종 개발사업의 지속적 증대, 환경오염 위협 등에 따라 역사·문화 환경, 자연유산, 석조문화재 등의 보존환경이 날로 악화
 -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문화재 보호와 관련한 사유재산권 문제가 맞물려 사회적 갈등 대두
- 문화유적 관람환경서비스 개선욕구 증대
 - 여가문화의 정착,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찾는 방문 횟수 증가한 반면, 관람환경 서비스 만족도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분위기 조성 절실
 -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문화재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 증대와 참여 활성화 도모 필요성 대두

4. 주요내용

가. 2019년 사업 추진방향

- 전통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존·관리·활용 선진화 체계 구축으로 문화향유 기회 증대

나.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 강화
- 사전 예방적 문화재보호 관리 강화 및 재난안전관리 중점추진
- 문화유산의 활용·보급·서비스 강화로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를 통해 문화산업 기반 구축

다.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 문화재 원형보존 및 정비사업 추진
- 사전 예방적 문화재 보호활동 강화
-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기반 강화
-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가치 증진
- 역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
-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5. 일반현황

가. 기구인력

- 도 문화재 담당부서: 2팀 9명
 - 문화자원정책팀 : 5명(행정사무관 1, 전문경력관 1, 학예연구사 1, 행정직 2)
 - 문화자원보존팀 : 4명(행정사무관 1, 시설직 3)

나. 2019년 예산현황

- 39개 사업 72,447백만원(국비 37,034, 도비 14,360, 시군비 19,842, 자부담 1,211)

다. 문화재 현황

- 총 괄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1,240	393	519	242	86

○ 국가지정

소계	국보	보물	시적	천연기념물	명승	국기민속	국기무형
393	21	189	45	62	19	40	17

○ 시도지정

소계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519	237	50	192	40

II. 2018년도 추진실적

1. 2018년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

추진사업		달성지표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문화유산 원형보수 및 유적정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21건	40,802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46건	8,807
	전통사찰 보수정비	11개소	2,525
	문화재 긴급보수	14개소	744
문화유산	방재시스템 구축 등 안전예방	114개소	3,865

추진사업		달성지표	사업예산 (단위:백만원)
원형보존 기반구축	안전경비원 배치	18개소	1,177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확충	11개소	400
	목조문화재 화재예방	3개사업	
문화유산 체계적 보존관리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	5개사업	4,532
	문화재 돌봄사업	719개소	2,375
	유네스코 등재 추진	2개사업	200
	고인돌 보존관리	2개사업	250

2. 주요 성과내역

가.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정비

-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지원 : 221건 407억원
-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 146건 88억원
-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지원 : 11개소 25억원

나. 사전 예방적 문화재보호 관리체계 구축

-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 : 712개소 24억원
-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 13개소 24억원
-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 102개소 29억원
- 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및 활용 : 18개소 14억원

다. 문화유산 향유·활용을 통한 가치증진

-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 : 5개사업 45억원
- 생생문화재 사업추진 지원 : 12개소 7억원
- 살아 숨 쉬는 서원·향교사업 : 12개소 8억원
-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사업 : 3개소 13억원

라. 지역 문화유산의 명품화를 위한 세계유산 등재추진

- 세계유산 등재·연구 지원 : 3개소 4억원
- 화순 운주사 석불석탑군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 ' 17. 1. 24.
- 서남해안 갯벌(순천, 보성, 신안) : 등재신청서 작성 및 제출('18. 2.)
- 한국의 서원(필암서원) : 유네스코 자문기구 현지실사('18. 9.)
- 전통산사(선암사, 대흥사) : 등재완료(' 18.6.30.), 기념사업 실시

마. 문화재 신규지정 : 21건(국가지정 3, 도지정 12, 등록문화재 6건)

- 국가지정문화재 : 화순 적벽(명승 제112호) 등 3건
- 도 지정문화재 : 죽곡정사 목판(유형 제330호) 등 12건
- 등 록 문 화 재 : 영광 원불교 신흥교당 대각전(등록 제693호) 등 6건

바. 효율적 문화재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 개편

- 문화재 보존·관리 조직 체계 및 전문 인력 보강(1팀 6명 → 2팀 9명)

3. 향후 보완할 점

○ 개별특성을 고려한 문화재 관리·활용체계 미흡

⇒ 문화재 가치 및 수요자의 기호변화를 다각도로 고려한 활용방안 모색

○ 문화재 원형 보존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호혜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 현상변경 허가 기준의 탄력적 도입 등 문화재의 원형보존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 마련

III. 2019년 추진계획

1. 추진방향

○ 비 전 : 도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재정책 구현

○ 목 표 : 현장중심, 지역중심, 지속 가능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 추진전략

- 문화재 보존 및 상시관리
-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 역사문화 자원의 세계화 위상제고

2. 세부 추진과제

구 분	추진과제	주요 추진사업
문화재 보존 및 상시관리	문화재 원형 보존 및 정비 사업 추진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전 예방적 문화재보호 활동 강화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도 지정 중요민속문화재 방재시설 확충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전통문화 유산의 체계적 전승보전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기반 강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보조 및 공개행사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간립

구 분	추진과제	주요 추진사업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가치증진	생생문화재사업
		살아 숨 쉬는 서원 및 향교 활용사업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화순 고인돌 유적 선사체험장 운영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
		고인돌공원 민간위탁 운영
역사문화 자원의 세계화 위상제고	역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	나주 서성벽 특별관리구역 조성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석묘군 정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시범사업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한국의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추진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IV. 추진사업별 세부계획

① 문화재 원형보존 및 정비사업 추진

1-1.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추진계획

- 국가 지정문화재 원형보존 등을 위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22개 시군 2381건
- 사 업 비 : 477억원(국비 320, 도비 63, 시군비 94)
- 사업내용 : 보수정비, 천연기념물 치료, 방충·방염, 초가이영잇기

1-2.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추진계획

- 노후, 훼손된 도 지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수정비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22개 시군 166건
- 사업비 : 124억원(도비 60, 시군비 60, 자부담 4)
- 사업내용 : 사찰, 향교 등 건축물 보수 및 석축담장 등 주변정비

1-3. 전통사찰 보수정비

☐ 추진계획

- 노후 훼손이 심한 전통사찰의 보수정비로 전통사찰 환경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10개 시군 13개 사찰
- 사업비 : 2,682백만원(국비 1,073 도비 537, 시군비 536, 자담 536)
- 사업내용 : 전통사찰 내 전각 개축 및 단청 등

② 사전 예방적 문화재보호 활동 강화

2-1. 문화재 돌봄사업

☐ 추진계획

- 문화재를 상시 관리하여 문화재 훼손 사전 예방 및 관람환경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22개시군, 769개소
- 사업비 : 2,612백만원(국비 1,306, 도비 1,306)
- 사업주관 : (사)문화재예방관리센터
- 사업내용 :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경미한 수리·보수 등
 - 문화재 경미한 수리(제초작업, 배수로 정비, 벽지보수, 병충해 방제 등)
 - 주변환경 정비, 모니터링, 청결유지, 재해예방, 제설작업 등

2-2.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 추진계획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재난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방재시설의 기능 점검 및 경미한 보수를 통한 정상 기능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강진 무위사 등 14개 시군 66개소
- 사업비 : 626백만원(기금 438, 시군비 188)
- 사업내용 :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2-3.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 추진계획

- 목조문화재에 대한 화재 등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여수 흥국사 등 9개 시군 18개소
- 사 업 비 : 1,434백만원(기금 717, 도비 251, 시군비 466)
- 사업내용 : 국보, 보물 등 목조문화재 18개소에 안전경비원 54명 배치

2-4.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 추진계획

-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 및 방범설비, 전기시설 정비 등 재난방재시설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순천 송광사 등 5개 시군 6개소
- 사 업 비 : 493백만원(기금 326, 시군비 167)
- 사업내용 : 소방(3개소), 전기(2개소), 방범(1개소) 시설 개선

2-5. 도 지정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확충

□ 추진계획

- 화재 및 도난으로부터 도 지정 목조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차적으로 소방 및 방범설비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도 지정 중요목조문화재(4월중 선정예정)
- 사 업 비 : 400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200)
- 사업내용 : 도 지정 목조문화재 소화시설 및 CCTV 설치

2-6.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 추진계획

-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 및 도난 등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 전통 유산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8개 시군 12개 사찰
- 사 업 비 : 2,615백만원(국비 1,046, 시군비 1,046, 자담 523)
- 사업내용 : 전기화재예방 시스템 설치,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cctv, 재난감지기 설치)

2-7.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 추진계획

-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 및 도난 등 재난의 사전예방을 위해 기 설치한 방재시스템

의 정기점검과 정비를 통한 시스템 안전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14개 시군 33개 사찰
- 사 업 비 : 262백만원(국비 131, 시군비 131)
- 사업내용 : 화재예방 시설, 감시시설 등 점검 및 노후 장비보수 등

③ 무형문화재 보전·전승 기반 강화

3-1.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보조 및 공개행사

☐ 추진계획

-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보조비 지원(보유자, 전수조교, 장학생, 보존회)
- 도 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거문도 뱃노래 등 50종목
 - 무형문화재 보유자(47명), 전수조교(15명), 장학생(76명), 보존회 (26팀)
- 사 업 비 : 970백만원 (도비 485, 시군비 485)
 -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보조 : 820백만원(도비 410, 시군비 410)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 150백만원(도비 75, 시군비 75)
- 사업내용 : 도지 정 무형문화재 전수보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3-2.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

☐ 추진계획

-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를 통하여 전남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의 널리 홍보하고 작품 판매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기능보유자 사기 진작

☐ 사업개요

- 기간/장소 : '19. 9월중 / 명량대첩 축제 행사장 내 부대시설
- 전시규모 : 광양 낙죽장도, 나주 소반 등 무형문화재 작품 100여점 전시
- 사 업 비 : 20백만원(도비)
- 사업주관 : (사)전라남도 무형문화재보존회

3-3.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 추진계획

- 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고령화에 따라 영상기록을 통한 무형문화재의 원형을 보존 하고 전수교육 자료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6. ~ 12. * 도 무형문화재 50종목, '11년 ~ 매년추진
- 사 업 량 : 2개 종목
- 사 업 비 : 50백만원(도비)

○ 수행단체 :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공연, 연혁, 유래전설, 설화, 전수교육 등 DVD 제작

3-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 추진계획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활용한 무형문화재 공연, 교육, 체험, 홍보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5시군 8개 전수교육관 * 전수교육관 현황 : 14시군 22개소

- 나주(염색장 2개소), 광양(장도장, 궁시장), 곡성(낙죽장도, 즉동농악), 화순(한천농악), 해남(강강술래)

○ 사업비 : 258백만원(국비 103, 시군비 155)

○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공연, 전시, 체험활동, 교육프로그램 운영

3-5.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보수

☐ 추진계획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하여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반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량 : 2개소

- 곡성 즉동농악 전수관 악기보관실 신축

- 목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수

○ 사업비 : 3,200백만원(국비 1,600, 시군비 1,600)

○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개보수 및 신축

4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가치증진

4-1. 생생 문화재사업

☐ 추진계획

○ 문화재 체험·활용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유산 가치 재창출 및 관광객 향유 만족도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량 : 11개 시군, 12개소 * 문화재청 공모사업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해남군, 진도군

○ 사업비 : 745백만원(국비 298, 도비 134, 시군비 313)

○ 사업내용 : 문화유산 활용프로그램 기획, 홍보, 공연, 탐방 등

4-2. 살아 숨 쉬는 서원 및 향교 활용사업

☐ 추진계획

○ 문화재로 지정된 향교, 서원을 활용하여 문화유산 가치 재창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량 : 14개 시군, 14개소 * 문화재청 공모사업
 - 여수향교, 순천향교, 나주향교, 창평향교, 곡성향교, 구례향교, 화순향교, 장흥향교, 강진향교, 해남향교, 영암향교, 무안향교, 영광향교, 장성향교
- 사업비 : 884백만원(국비 442, 도비 133, 시군비 309)
- 사업내용 : 서원·향교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융·복합적으로 창출하는 교육·문화·체험·관광산업 프로그램 운영

4-3.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 추진계획

- 내·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야간형 거리 연출효과 극대화를 통한 관광콘텐츠 개발로 지역 명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4. ~ 11.
- 사업량 : 3개 시군, 3개소
 - * 문화재청 공모사업
- 사업비 : 1,428백만원(국비 714, 도비 214, 시군비 500)
- 사업내용 :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운영
 - (목포시) 야행(夜行)/588백만원(국294,도88.2,시205.8)
 - 경관조명설치, 근대역사공간 일원 야간 문화재 관람 및 체험활동 등
 - (여수시) 여수 문화재 야행(夜行)/360백만원(국180,도54,시126)
 - 진남관 야간관람, 경관조명설치, 방패연제작프로그램 등
 - (순천시) '승평지로 바라본 순천문화재'/480백만원(국240,도72,시168)
 - 역사스텝투어, 해설사와 함께하는 1,000년 역사이야기 등

4-4.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 추진계획

- 전통산사(山寺)문화재와 역사문화자원의 역사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활용한 산사문화 관광 상품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3. ~ 12.
- 사업량 : 4개 시군(여수, 순천, 구례, 해남) * 문화재청 공모사업
- 사업비 : 248백만원(국비 124, 시군비 124)
- 사업내용 : 전통산사 문화재 및 역사문화자원에 내재된 유산적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활용한 문화재향유 프로그램
 - (여수시) 호국사찰 흥국사, 여수 흥하다/64백만원(국비32, 시군비32)
 - 흥국사 활용 인성 강좌, 흥국사 산책로 체험 등

- (순천시)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80백만원(국비40, 시군비40)
 - 공연, 체험(선암사 모형만들기, 초그리기 등), 강의, 문화재해설
- (구례군) '화화등등'(華化登燈) 화엄 불(佛) 밝히다./40백만원(국비20, 시군비20)
 - 화엄사 체험, 전시연계, 1박2일 프로그램(공연, 체험, 숙박)
- (해남군)대흥사의 4색 4계/64백만원(국비32, 시군비32)
 - 미션 보물찾기& 문화해설, 토크콘서트 등

4-5.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 추진계획

- 문화재를 활용한 청소년의 창의·인성 함양 및 도민의 문화유산 애호의식 함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대상 : 6개 시군, 6개 사업
 - (여수시) 문화유산 직업 탐험대<42백만원>
 - (순천시) 나도 문화재해설사<60백만원>
 - (나주시) 나주복암리고분, 창의감성학교<54백만원>
 - (광양시) 문화유산 따라 장도나들이<40백만원>
 - (해남군) 첫 땅의 문화유산 이야기<60백만원>
 - (장성군) 문,무불여장성 문화유산 바로알기<40백만원>
- 사 업 비 : 296백만원(국비 148, 시군비 148)
- 사업내용 : 지역문화유산 소재로 한 초·중·고 학교 방문교육, 체험교실, 항일 또는 이순신 장군을 테마로 한 테마학당 등 운영

4-6. 화순 고인돌 유적 선사체험장 운영

☐ 추진계획

-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선사 시대 문화와 생활상을 이해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장소 : 화순 고인돌 선사유적공원
- 사 업 비 : 300백만원(국 150, 군비 150)
 - ※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석묘군 : 국가사적 제410호('98. 9.17.)
- 사업주체 : 화순군
- 사업내용 : 선사마을 체험프로그램, 홍보인력 양성교육, 홍보 및 활용 학술대회 개최 등

4-7.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

☐ 추진계획

- 자연유산(천연기념물·명승)을 대상으로 하는 민속행사(당산제, 당제, 동제, 산신제, 풍어제, 용왕제, 영등제 등) 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2. ~ 11.

○ 위 치 : 구례군 등 6개 시군 9개소

- 담양(2) : 봉안리 은행나무, 대치리 느티나무,

- 구례(1) : 지리산 화엄사 일원

- 고흥(1) : 외나로도 상록수림,

- 화순(1) : 야사리 은행나무,

- 강진(2) : 사당리 푸조나무, 삼인리 비자나무,

- 완도(2) : 예송리 상록수림, 정도리 구계등

○ 사업비 : 30백만원(국비 21, 시군비 9)

○ 사업내용 : 자연유산 민속행사에 필요한 제사용품(제기·제복·제수 등) 구입 및
홍보 현수막 설치비 등 지원

4-8. 고인돌공원 민간위탁 운영

☐ 추진계획

○ 고인돌 공원의 전문적 관리로 선사유적 보호 및 관람객에 편의 제공

☐ 사업개요

○ 위 치 : 순천시 송광면 고인돌길 543

○ 규모 : 부지 46,968㎡(38필지), 건축물 715.42㎡(9개동)

- 사업기간 : '89~' 95,

- 사업비 : 1,737백만원(국비 330, 도비 1,407)

○ 위탁기간 : '19. 1. 1. ~ '21. 12. 31.(3년)

○ 운영비 지원 : 220백만원(도비)

○ 수탁기관 : (재)전남문화재연구원

○ 위탁업무 : 고인돌공원 유지관리(근거 : 민간위탁관리조례)

[5] 역사문화유산 관광자원화 기반 마련

5-1. 나주 서성벽 특별관리구역 조성

☐ 추진계획

○ 나주읍성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7. 1. ~ '19. 12.

○ 사업대상 : 나주시 교동 나주읍성 일대

※ 나주읍성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337호)

○ 총사업비 : 38억원(국비 16, 시비 22)

※ ' 17년 사업비, 28억원(국 14, 시 22), ' 18년 사업비, 4억원(국비 2, 시 2)

○ 사업내용 : 나주읍성 서성벽 구간 복원 및 정비

- 서성벽 복원정비, 서수구문 복원, 서성벽 쉼터 조성

- 서성벽 일대 전통한옥경관 조성 및 담장 정비

5-2. 화순 효산리 및 대신리 지식묘군 정비

☐ 추진계획

- 수렵·채집·농경, 고인돌 축조 등을 주제로 한 국제적인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교육·관광자원 및 선사문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

☐ 사업개요

- 사업명 : 화순 고인돌 선사유적공원 조성

※ 화순 효산리와 대신리 지식묘군 : 사적 제410호('98.9.17)

- 총사업비 : 73,130백만원(국비 51,191, 도비 6,582, 군비 15,357)

구 분	계	' 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 20년이후
계	73,130	26,345	381	250	200	45,954
국 비	51,191	18,396	267	175	140	32,213
도 비	6,582	2,633	34	22.5	18	3,874.5
군 비	15,357	5,316	80	52.5	42	9,866.5

- 사업주체 : 화순군

- 사업내용 : 선사시대 체험 공간 조성,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비

5-3.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 추진계획

- 이순신 관련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17. 1. ~ '20. 12.

- 사업대상 : 완도군 고금면 덕동리 산58 일원

※ 묘당도 이충무공 유적 :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114호)

- 총사업비 : 85억원(국비 42.5, 군비 42.5)

구 분	계	2017년	2018년	2019년	' 20년이후
계	85	3	26.6	200	35.4
국 비	42.5	1.5	13.3	10	17.7
군 비	42.5	1.5	13.3	10	17.7

- 사업내용 : 관왕묘 재건, 전시관 및 동상 건립, 주차장 등 편의시설 조성 등

5-4.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정비

☐ 추진계획

- 역사문화 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재 인식 전환과 지역민들의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19. 1. ~ 12.

- 사업대상 :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01 일원
- ※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 등록문화재 제223호
- 총사업비 : 6억원(국비 3, 시비 3)
- 사업내용 : 문화재주변 산책로 및 담장 정비

⑥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6-1.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추진배경

- 한국의 서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문화재청, 전남도, 경북도 등 6개시도 9개시군 업무협약 : '12. 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대 상 : 한국의 서원(장성 필암서원)
- 사 업 비 : 40백만원(도비 20, 군비 20)
- 사업내용 : 사무국 운영비, 등재신청 작업비,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등

6-2.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추진배경

-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업무협약 : '13. 5.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 ~ 12.
- 대 상 : 서남해안 갯벌(순천, 보성, 신안)
- 사 업 비 : 252백만원(국비 48, 도비 29, 시군비 175)
- 사업내용 : 추진단 운영비, 유네스코 현지실사 연구지원 사업 등

□ 사업별 예산현황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소관별	세부 사업명	(개)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총 계			96,270	48,504	20,121	26,201	1,444
문화재청 소관사업	소 계		74,756	46,254	10,850	17,652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278건	57,970	36,975	8,398	12,597	-
	문화재재난방재시설유지관리지원	66개소	626	438	-	188	-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18개소	1,434	717	251	466	-
	문화재재난방재시설구축	6개소	493	326	-	167	-
	모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	1식	2,000	1,000	-	1,000	-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정비	1식	600	300	-	300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8개소	258	103	-	155	-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소관별	세부 사업명	(개)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2개소	120	60	-	60	-
	문화재 돌봄사업	769개소	2,612	1,306	1,306	-	-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사업	9개소	30	21	-	9	-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4개소	4,272	2,990	385	897	-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1식	188	94	-	94	-
	화순 고인돌 유적 선사체험장 운영	1식	300	150	-	150	-
	생생 문화재 사업	12개소	745	298	134	313	-
	살아 숨 쉬는 향교, 서원 만들기	14개소	884	442	133	309	-
	문화재 여행 프로그램	3개소	1,428	714	214	500	-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4개소	248	124	-	124	-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서남해안 갯벌)	1식	252	48	29	175	-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6개사업	296	148	-	148	-
문체부 소관 사업	소 계		5,559	2,250	537	1,713	1,059
	전통사찰보수정비	13개소	2,682	1,073	537	536	536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2개소	2,615	1,046	-	1,046	523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33개소	262	131	-	131	
도 비 사 업	소 계		15,955	-	8,734	6,836	385
	도지정문화재 보수	166건	12,385	-	6,000	6,000	385
	도지정 중요무형문화재 방재시설 확충	11개소	400	-	200	200	-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보조 및 공개행사	1식	972	-	486	486	-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	1식	20	-	20	-	-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1식	50	-	50	-	-
	고인돌공원 민간위탁 운영	1식	220	-	220		-
	고인돌공원 시설보수	1식	30	-	30	-	-
	송재서재필선생 기념공원 관리운영	1식	70	-	70	-	-
	매장문화재 긴급발굴비(학술대회 등)	1식	200	-	100	100	-
	문화재 재해 등 긴급보수비	1식	200	-	200	-	-
	판소리 전승 및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용역	1식	30	-	30	-	-
	고분 발굴	1개소	1,000	-	1,000	-	-
	고대문화권(마한, 가야) 정립 연구 사업	1식	50	-	50	-	-
	영호남 가야사 연구복원	1식	20	-	20	-	-
	문화재 학술대회	1식	50	-	50	-	-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소관별	세부 사업명	(개)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조사 연구	1식	60	-	60	-	-
	판소리 유네스코유산 심포지움	식	8	-	8	-	-
	세계유산 등재 추진	식	100	-	50	50	-
	일제강점기 유적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	1식	90	-	90	-	-

전라남도 공고 제2019-142호

전라남도 문화재수리업등 등록 공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등록하고 이를 공고 합니다.

2019. 2. 14

전라남도지사

□ 문화재수리업 등록내용

상 호 (대표자)	수리업 종류	수리업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등 록 일
주식회사 대승건설 (양세준)	보수단청업	제01-15-0032호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사로 2, 1층	2019. 2. 12.

전라남도 공고 제2019-147호

2019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공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2019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4

전라남도지사

1. 공 고 명 : 2019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2. 주요내용
 - 2018년도 추진실적
 - 2019년도 업무추진계획
 - 추진사업별 세부계획
3. 관련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4. 연 락 처
 -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 문화자원과
 - 주 소 : (우)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연락처 : 전화 (061)286-5322, 전자메일 hsi0902@korea.kr

2019년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시행계획

I. 2019년도 시행계획 개요

1. 계획배경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무형문화재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필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5개년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재청과 시·도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 연도별 「무형문화재 보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2. 계획목적

- 도지정 무형문화재의 활용 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개선
- 전남도의 다양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추진 등

3. 정책환경

- 도내 보유자, 보유단체의 안정적인 전승환경 조성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 무형문화재 전승 및 활성화 방안 마련과 도 무형문화재 역량 강화 필요
- 역사, 인문,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6천만명 달성에 기여

4. 주요내용

가. 사업 추진방향

- 신규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발굴
-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활성화 방안 모색

나.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 전남 무형유산 홍보 및 국민 향유권 확대
- 문화재 활용에 무형문화재 적극 참여

다.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 붙임 참조

라. 그 밖에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무형문화재 효율적인 전승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 지역맞춤형 무형문화재 진흥 프로그램 개발

5. 전라남도의 일반현황

가. 무형문화재 행정 담당 기구 및 인력

- 도 : 1 담당 담당자 5명 (행정3, 전문경력관1, 학예1)
- 시군 : 22 담당 담당자 46명 (행정 9, 시설 25, 학예 12)

나. 무형문화재 관련 예산현황 ※ 2019년 본예산 기준

- 6개 사업 1,423,250천원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 지급, 공개행사 지원
-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사업, 작품전시회 지원
- 전수교육관 건립, 활성화 사업 지원

다. 무형문화재 현황 ※2019년 1월 기준

합 계	국가무형문화재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67	17	50

※ 무형문화재 목록

구 분	기 능		예 능	
	문화재명	지정일자	문화재명	지정일자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17종)	· 니주 셋골나이	‘ 69.07.04.	· 강강술래	‘ 66.02.15.
	· 낙죽장	‘ 69.11.29.	· 남도 들노래	‘ 73.11.05.
	· 곡성 돌살나이	‘ 70.07.22.	· 진도 씻김굿	‘ 80.11.17.
	· 채상장	‘ 75.01.29.	· 진도 다시래기	‘ 85.02.01.
	· 장도장	‘ 78.02.23.	· 구례 향제 줄풍류	‘ 85.09.01.
	· 제와장	‘ 88.08.01.	· 구례 잔수농악	‘ 10.10.21.
	· 웅기장	‘ 90.05.08.	· 법성포 단오제	‘ 12.07.23.
	· 옥 장	‘ 96.02.01.		
	· 소반장	‘ 14.09.16.		
	· 염색장	‘ 01.09.06.		
도지정 무형문화재 (50종)	· 광양 궁시장	‘ 86.09.29.	· 거문도 뱃노래	‘ 72.01.29.
	· 니주반장	‘ 86.11.13.	· 남도 노동요	‘ 77.10.20.
	· 참빗장	‘ 86.11.13.	· 화순 한천농악	‘ 79.08.03.
	· 담양 죽림장	‘ 90.02.24.	· 현천 소동패놀이	‘ 82.10.15.
	· 해남 진양주	‘ 94.01.31.	· 우도농악	‘ 87.08.25.
	· 진도 전통흥주	‘ 94.12.05.	· 진도 북놀이	‘ 87.08.25.
	· 탕화장	‘ 96.10.24.	· 진도 만가	‘ 87.08.25.
	· 청자장	‘ 04.02.13.	· 우수영 부녀농요	‘ 87.08.25.

구 분	기 능		예 능	
	문화재명	지정일자	문화재명	지정일자
	· 전남의례음식장	’ 08.04.11.	· 장산도 들노래	’ 88.12.21.
	· 낙죽장	’ 09.03.20.	· 가거도 멀치잡이노래	’ 88.12.21.
	· 보성 강하주	’ 09.07.03.	· 송천 달집태우기	’ 94.01.31.
	· 선자장	’ 10.05.27.	· 고흥 월포농악	’ 94.12.05.
	· 약기장	’ 11.09.20.	· 진도 소포 길군농악	’ 94.12.05.
	· 조선장	’ 13.08.05.	· 완도 장좌리 당제 및 당굿	’ 95.12.26.
	· 웅기장	’ 13.12.19.	· 판소리	’ 96.10.14.
	· 초고장	’ 13.12.19.	· 고흥 한적들노래	’ 96.10.14.
	· 목조각장	’ 13.12.19.	· 순천 구산 용수제	’ 97.05.15.
			· 시조창	’ 99.08.05.
			· 남도잡가	’ 01.09.27.
			· 곡성 죽동농악	’ 02.04.19.
			· 강진 신전들노래	’ 05.12.27.
			· 조도 닻배노래	’ 06.12.27.
			· 무안 상동들노래	’ 06.12.27.
			· 순천 삼설양굿	’ 08.12.26.
			· 담양 황금들노래	’ 09.12.31.
			· 가이금 산조	’ 10.05.27.
			· 화순 도장리밭노래	’ 13.08.05.
			· 신안 씻김굿	’ 13.08.05.
			· 영암 갈곡들노래	’ 13.08.05.
			· 화순 우봉들노래	’ 13.08.05.
			· 광양진월전어잡이소리	’ 13.12.19.
			· 고흥 혼맞이굿	’ 15.08.06.
			· 가이금 병창	’ 17.08.06.

II. 그 간의 추진실적

1. 주요 추진사업 및 소요예산(2018년)

추진사업		달성지표	사업예산(천원)
무형문화재 지정 및 인정	도지정문화재 지정	1건	
	도지정문화재 보유자 인정	1건	
무형문화재 기록화	무형문화재 영상 기록화	2건	50,000
무형문화재 공연 및 전시 활성화	무형문화재 전수보조금 지급	46종목	811,600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44종목	153,100
	무형문화재 작품 전시회	1건	20,000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	8개소	292,500
무형문화재 기반시설 확충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1개소	3,200,000

2. 주요 성과내역

-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
- (2017년) 무형문화재 26호 진도 전통홍주, 59호 가야금 병창
 - (2018년) 무형문화재 42-2 혼례음식
- ▷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증가 (2017년 46명 → 2018년 47명)
- (2018년) 무형문화재 50호 조선장 보유자 1명
- ▷ 전승지원금 지급 확대(2018년) : 보유자 중 12.5%(80천원→90천원)

3. 향후 보완할 점

- 무형문화재 활용강화 및 도민 향유기회 확대
- 전승 단절 문화재 대상 기록화 사업 확대
-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전승지원금 확대

III. 2019년 업무추진계획

1. 추진방향

- 기본원칙
 - 무형문화재의 다음 세대로의 온전한 계승을 위한 전승체계 확립
- 사업추진목표
 -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체계화
 - 무형문화재의 향유 기회 확대

2. 주요추진사업

주요 정책 과제		사업명	사업량	예산(천원)
1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체계화	1-1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46종목	820,000
		1-2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2건	50,000
2	무형문화재 향유 기회 확대	2-1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44종목	155,000
		2-2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	1건	20,000
		2-3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8개소	258,250
3	무형문화재 기반시설확충	3-1 전수교육관 보수사업	2개소	120,000
계		6개 사업		1,423,250

IV. 추진사업별 세부계획

1. 무형문화재 보존관리 체계화

1-1.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1) 추진배경

○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자 지원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전승활동 활성화

2) 추진실적

○ 2017년 : 748,800천원(보유자 47, 전수조교 16, 장학생 62, 보존회 26)

○ 2018년 : 811,600천원(보유자 46, 전수조교 15, 장학생 75, 보존회 26)

3) 2019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820,000천원(도비 410,000, 시군비 410,000)

○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 보유자 : 47명(1인당 900천원/월)

· 거문도뱃노래, 궁시장, 참빗장, 우도농악(2명), 진도북놀이(2명), 진도만가(2명), 우수영부녀농요, 장산도들노래, 가거도멸치잡이, 담양죽렴장, 달집태우기, 해남 진양주, 진도홍주, 완도왕좌리당제 및 당굿, 판소리(5명), 고흥한적들노래(2명), 남도잡가, 곡성 죽동농악, 청자장, 용기장, 진도소포결군농악, 조도 닻배노래, 무안상동들노래, 전남의례음식장, 담양 낙죽장(2명), 담양 황금들노래, 가야금 산조, 담양 선자장, 조선장(4명), 신안 셋김굿(2명), 초고장, 목조각장, 고흥 혼 맞이굿, 가야금 병창

- 전수교육조교 : 15명(1인당 350천원/월)

· 함평 노동요, 화순한천농악, 현천소동패놀이(2명), 광양궁시장, 나주반장, 참빗장, 진도북놀이(2명), 우수영부녀농요, 장산도 들노래, 판소리 고법, 고흥한적들노래, 남도잡가, 곡성 죽동농악

- 전수장학생 : 76명(1인당 100천원/월)
 - 화순 한천농악(2명), 우도농악(2명), 진도북놀이(3명), 진도만가(2명), 우수영부녀농요(4명), 장산도들노래(2명), 가거도멀치잡이노래, 담양 죽림장, 송천달집태우기(7명), 고흥월포농악(5명),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판소리동편제(3명), 판소리 수궁가, 판소리 흥보가, 고흥한적들노래(6명), 남도잡가(4명), 곡성 죽동농악(3명), 청자장(2명), 강진 신전들노래, 소포걸군농악(6명), 조도 닛배노래(4명), 순천 삼설양굿, 낙죽장(2명), 가야금산조, 선자장(2명), 조선장(2명), 신안씻김굿, 초고장, 목조각장(2명), 고흥혼맞이굿(3명)
- 보유단체 : 26개 단체(단체당 500천원/월)
 - 거문도뱃노래, 남도 노동요, 화순 한천농악, 현천 소동패놀이, 우도농악, 진도북놀이, 진도만가, 우수영 부녀농요, 장산도 들노래, 가거도 멀치잡이노래, 달집태우기, 진도홍주, 고흥월포농악, 완도장좌리당제 및 당굿, 고흥한적들노래, 순천 구산용수제, 곡성 죽동농악, 강진 신전들노래, 진도 소포걸군농악, 진도 닛배노래, 무안 상동들노래, 담양 황금들노래, 화순 도장리밭노래, 영암 갈곡들노래, 화순 우봉들소리, 광양진월전어잡이소리

1-2.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1) 추진배경

- 도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원형 보존하고 전수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형문화재를 DVD로 제작 기록 보존

2) 추진실적

- 2017년 : 50,000천원(진도만가, 강진 청자장)
- 2018년 : 50,000천원(고흥 한적들 노래, 담양 선자장)

3) 2019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비 : 5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 2개종목(기능, 예능)
-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공연, 연혁, 유래전설, 설화, 전수교육 등 영상기록
 - 영상기록물 제작, 기록매체 : HD급 DVD제작
 - 제작규격 : 완벽한 원형 기록을 위해 각 종목당 60분 내외로 하되, 예능 종목의 경우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충실히 기록

2. 무형문화재의 향유 기회 확대

2-1.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

1) 추진배경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통하여 보유자 자질 향상 및 도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2) 추진실적

- 2017년 : 152,200천원(단체 26, 개인 26)

○ 2018년 : 153,100천원(단체 26, 개인 25)

3) 2019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155,000천원(도비 75,900, 시군비 79,100)

○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실시 지원

- 개인종목 : 26종목(개인종목 1,900천원)

· 판소리 춘향가, 판소리 수궁가, 판소리 흥보가, 조선장, 판소리 흥보가, 궁시장, 참빗장, 죽렴장, 낙죽장, 낙죽장, 담양 선자장, 목조각장, 초고장, 혼맞이굿, 웅기장, 가야금 산조, 청자장, 진양주, 판소리 고법, 혼례음식, 가야금 병창, 조선장, 남도 잡가, 조선장, 장산도 씻김굿, 비금도 씻김굿

- 단체종목 : 26종목(단체종목 3,900 ~ 4,250천원)

· 거문도 뱃노래, 현천 소동패 놀이, 달집태우기, 순천 구산 용수제, 진월 전어잡이 소리, 황금 들노래, 죽동농악, 월포농악, 한적들노래, 한천농악, 화순 도장발노래, 우봉 들노래, 강진 신전들노래, 우수영 부녀농요, 갈곡 들노래, 무안 상동들노래, 남도 노동요, 우도농악, 당제 및 당굿, 진도 북놀이, 진도 만가, 진도 흥주, 진도 소포걸군농악, 조도 닻배놀이, 장산도들노래, 가거도멸치잡이 노래

2-2.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

1) 추진배경 : 작품전시회를 통하여 작품 홍보 및 도민의 관심과 참여 유도

2) 추진실적

○ 2017년 : 20,000천원(도비)

○ 2018년 : 20,000천원(도비)

3) 2019년 추진계획(소요예산 포함)

○ 기간/장소 : 2019. 9월중/명량대첩 축제 행사장 내

○ 사 업 비 : 20,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나주반장, 광양 장도 등 100여점 전시

○ 보조사업자 : (사)전라남도 무형문화재 보존회(회장 정관채)

2-3.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1) 추진배경

○ 전수교육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공연·전시 등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무형문화재, 일반인,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추진실적

○ 2017년 : 175,000천원(국비 70,000 시군비 105,000)

○ 2018년 : 292,500천원(국비 117,000 시군비 175,500)

3) 2019년 추진계획(소요예산 포함)

○ 사업기간 : ' 19. 1. ~ 12.

○ 대 상 : 5개 시군 8개소

- (나주) 염색장전수관(2개소, 77.2백만)
- (광양) 공시전수교육관(30백만), 장도전수교육관(60백만)
- (곡성) 낙죽장도 전수교육관(46.9백만), 죽동농악(24.1백만)
- (화순) 한천농악전수관(10백만)
- (해남) 우수영 강강술래 전수관(10백만)

○ 사 업 비 : 258백만원(국비 103, 시군비 155)

3. 무형문화재 기반시설확충

3-1. 전수교육관 보수사업

1) 추진배경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및 노후 시설물 개보수를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 기반 구축

2) 추진실적

○ 2017년 : 2,600백만원(국비 1,300백만원, 시군비 1,300백만원)

○ 2018년 : 3,200백만원(국비 1,600백만원 시군비 1,600백만원)

3) 2019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 19. 1. ~ 12.

○ 사 업 량 : 2개소

- (곡성) 죽동농악 전수관 악기보관실 신축(80백만원)
- (목포)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수(40백만원)

○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개보수 및 신축

○ 사 업 비 : 120백만원(국비 60, 시군비 60)

<<붙임>> 사업별 예산현황(도표)

사업명		사업비(천원)				
소관별	사업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총계		1,423,250	326,600	555,900	704,050	0
문화재청	소 계	378,250	163,300	0	214,950	0
	전수교육관활성화	258,250	103,300		154,950	
	전수교육관건립	120,000	60,000		60,000	
전라남도	소 계	1,045,000	0	555,900	489,100	0
	도지정문화재 전수보조	820,000		410,000	410,000	
	도지정 공개행사	155,000		75,900	79,100	
	무형문화재 작품전시회	20,000		20,000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50,000		50,000		

전라남도 공고 제2019-16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업체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업체에 대하여 영업소폐지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주소지 등에 처분사전통지서(청문 실시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체국 보관기일 경과,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2. 14

전라남도지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영업정지				
2. 당사자	성명(상호)	김*원 (주식회사 디앤에스종합건설)				
	주 소	전남 여수시 충무로 64, 8층(충무동, 충무빌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미준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정지 6개월				
5.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6. 청 문 실 시	기관명	전라남도	부서명	지역계획과	담당자	정홍일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화번호	061) 286-7322
	일 시	2019. 3. 13.(수) 14:00				
	장 소	전라남도 청문장(행정동 12층, 법무담당관실)				
	주재자	소 속	법무담당관			
성 명		법제팀장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한이름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라남도 건설도시과(☎ 061-286-7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문참석시 지참물

- 대표자 신분증(대리 참석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 의견진술에 첨부할 증빙 자료 등

※ 의견서 제출 안내

- 제출기한 : 2019. 3. 13.(수) 14:00까지
- 제 출 처 : 전라남도 건설도시과
- 제출방법
 - 서 면(FAX) : 061-286-4802
 - 우편접수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건설도시과
- 기 타 :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의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 (명칭)	
	주소	
3. 의견		
4.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전라남도지사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고시 제2019-28호

목포 도시계획시설(소로 3-460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목포시 연산동 1290번지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사업명 : 목포시 연산동 620-8번지 진출입도로 개설공사】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 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9. 2. 14

목포시장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내용

구분 항목	고 시 내 용	비 고
1. 사업시행 위치	○ 사업위치 : 목포시 연산동 1290번지	
2. 사업종류 및 명칭	○ 사업종류 : 목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 업 명 : 목포시 연산동 620-8번지 진출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도로개설 : L=20.0m, B=6.0m, A=73.0㎡	
4. 사업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산정로 268-1, 102동 1501호 ○ 성 명 : 김 안 례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착수일 : 2019. 2. 14. ○ 준공예정일 : 201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전라남도 목포시 연산동 1290번지, 소유권 : 목포시, 지목 : 잡종지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관계도서 : 게재 생략(도시계획과 비치)	
8. 실시계획 열람공고 (완료)	○ 열람기간 : 2019. 1. 10. ~ 2019. 1. 24.(14일간) ○ 열람장소 : 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의견없음
9. 기타 문의	○ 문의 전화 : 061 - 270 - 8414(목포시청 도시계획과)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연번	토지조서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연산	1290	잡종지	1,170.9	73.0	목포시				

여수시 고시 제2019-33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장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장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장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2. 14

여수시장

1. 여수 도시관리계획(장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다음
2. 여수 도시관리계획(장도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장도근린공원) 결정(변경) 조서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가.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2	장도공원	근린공원	웅천동 1902번지 일원	94,843	감)1,978	92,865.0	건고69호 77.04.18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62	근린공원	○지적확정측량 및 해면부 제척에 따른 면적변경 : 감)1,978㎡(94,843㎡→92,865㎡)	○지적확정측량으로 인한 면적 증가와 해면부 제척 으로 인한 면적 감소 반영	

2. 공원조성계획(장도공원) 결정(변경)조서

■ 근린공원 면적

구분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공 원 면 적	94,843	92,865	감)1,978	건설부 제69호(1977.04.18.)
시 설 구 역	23,596	23,520.3	감)75.7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40%이내
시 설 율	24.9%	25.3%	증)0.4	(시설구역/공원면적)
건 축 면 적	2,073.94	2,073.94	-	-
건 폐 율	0.910%	0.929%	증)0.019	(건축면적/공원면적)

■ 공원시설구역내 시설률 및 건폐율

구분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증·감	
시 설 구 역	23,596	23,520.3	감)75.7	-
시 설 면 적	2,073.94	2,073.94	-	다목적전시장(지하층) 포함
시 설 율	8.79%	8.82%	증)0.03	시설면적 / 시설구역
건 축 면 적	863.08	863.08	-	-
건 폐 율	0.910%	0.929%	증)0.019	건축면적 / 공원면적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시설 내용	기 정(㎡)			변 경(㎡)			증·감(㎡)		
		부지면적	시설면적		부지면적	시설면적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총 계		94,843 (100%)	863.08	2,073.94	92,865.0 (100%)	863.08	2,073.94	감)1,978.0	-	-
공원시설소계		23,596 (24.9)	863.08	2,073.94	23,520.3 (25.3)	863.08	2,073.94	감)75.7	-	-
교통 시설	도로 및 산책로	6,921 (7.3%)	-	-	6,883.2 (7.4%)	-	-	감)37.8	-	-
조경 시설	다도해정원	6,861 (7.2%)	-	-	6,857.0 (7.4%)	-	-	감)4.0	-	-
교양 시설	다목적 전시장, 아뜰리에	9,034 (9.5%)	677.50	1,740.64	9,033.1 (9.7%)	677.50	1,740.64	감)0.9	-	-
편의 시설	휴게시설	780 (0.8%)	185.58	333.30	747.0 (0.8%)	185.58	333.30	감)33.0	-	-
산림 지역	녹지	71,247 (75.1%)	-	-	69,344.7 (74.7%)	-	-	감)1,902.3	-	-

○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기 정(㎡)			변 경(㎡)			증·감(㎡)				
	기정	변경		위 치	부 지 면 적	시설면적		위 치	부 지 면 적	시설면적		부 지 면 적	시설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총 계					94,843	863.08	2,073.94		92,865.0	863.08	2,073.94	감)1,978.0	-	-
교통 시설	소 계				6,921	-	-		6,883.2	-	-	감)37.8	-	-
	도 로 (도로및산책로)				6,921	-	-		6,883.2	-	-	감)37.8	-	-
1 조경 시설	소 계				6,861	-	-		6,857.0	-	-	감)4	-	-
	1	1	다도해 정원	웅천동 1630 일원	6,771	-	-	웅천동 1905	6,766.0	-	-	감)5	-	-
	2	2	다도해 정원	웅천동 1627 일원	90	-	-	웅천동 1902	91.0	-	-	증)1	-	-
2 교양 시설	소 계				9,034	677.50	1,740.64		9,033.1	677.50	1,740.64	감)0.9	-	-
	1	1	이뜰 리에	웅천동 1632 일원	2,365	289.00	275.56	웅천동 1904	1,659.3	289.00	275.56	감)705.7	-	-
	2	2	전시장	웅천동 1635-1 일원	6,669	388.50	1,465.08	웅천동 1907	7,373.8	388.50	1,465.08	증)704.8	-	-
3 편의 시설	소 계				780	185.58	333.30		1,659.3	185.58	333.30	감)33.0	-	-
	1	1	휴게 시설	웅천동 1626 일원	780	185.58	333.30	웅천동 1903	1,659.3	185.58	333.30	감)33.0	-	-
4 산림 지역			녹지		71,247	-	-		69,344.7	-	-	감)1,902.3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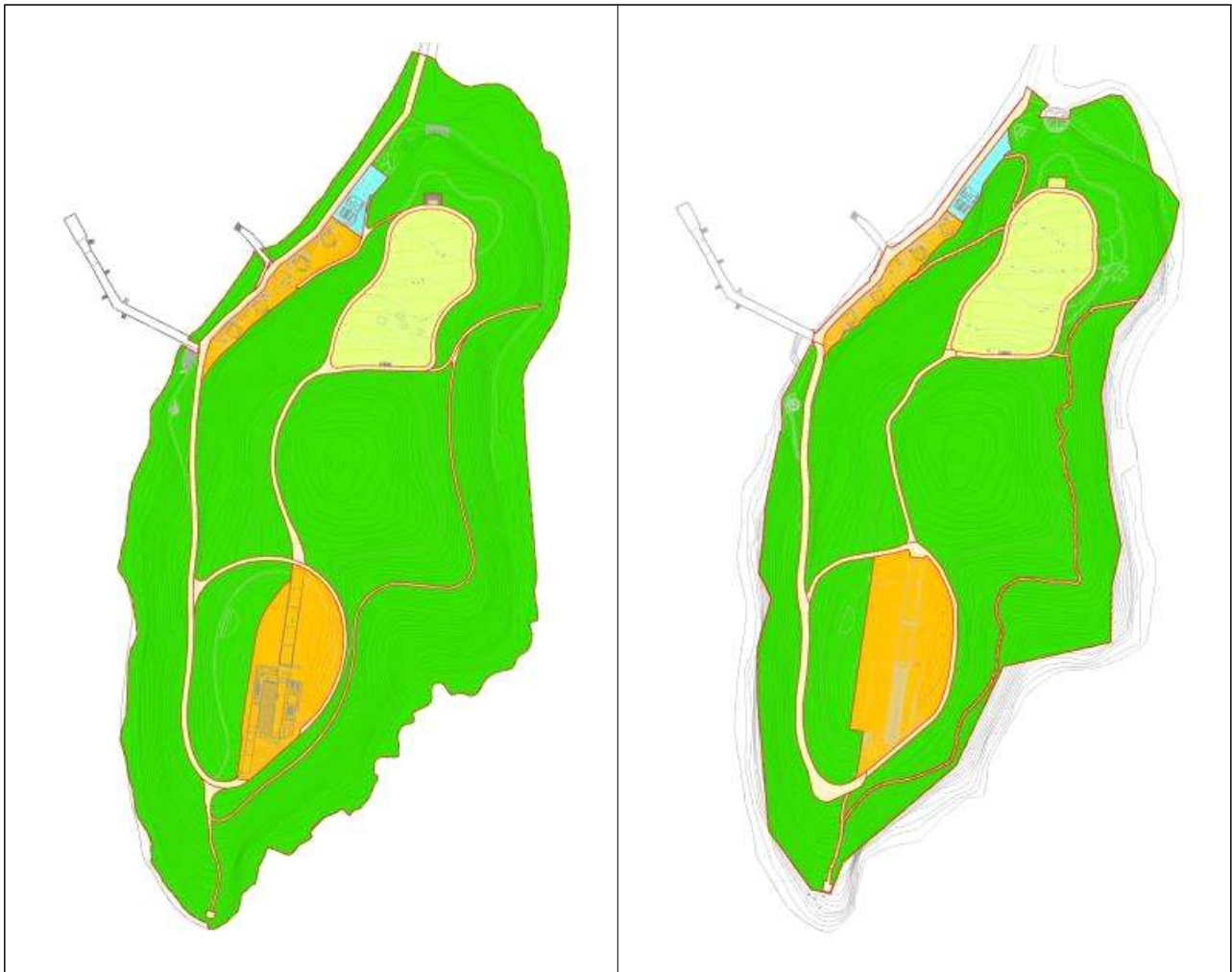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	교통시설	○시설부지 면적변경 : 감)37.8㎡(6,921㎡ → 6,883.2㎡)	○지적확정측량 및 설계변경 반영하여 면적 변경	
1-1	조경시설	○시설부지 면적변경 1-1 : 감)5.0㎡(6,769㎡ → 6,771.0㎡)	○지적확정측량 및 설계변경 반영하여 면적 변경	
1-2	조경시설	○시설부지 면적변경 1-2 : 증)1.0㎡(90㎡ → 91.0㎡)	○지적확정측량 및 설계변경 반영하여 면적 변경	
2-1	교양시설	○시설부지 면적변경 2-1 : 감)705.7㎡(2,365㎡ → 1,659.3㎡)	○지적확정측량 및 설계변경 반영하여 면적 변경	
2-2	교양시설	○시설부지 면적변경 2-2 : 증)704.8㎡(6,669㎡ → 7,373.8㎡)	○지적확정측량 및 설계변경 반영하여 면적 변경	
3-1	편익시설	○시설부지 면적변경 3-1 : 감)33.0㎡(780㎡ → 747.0㎡)	○지적확정측량 및 설계변경 반영하여 면적 변경	
-	녹지	○부지 면적변경 : 감)1,902.3㎡(71,247㎡ → 69,344.7㎡)	○지적확정측량 및 설계변경 반영하여 면적 변경	

○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기정]

[토지이용계획-변경]



여수시 고시 제2019-37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상하금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여수 도시계획시설(상하금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하금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2. 14

여수시장

1. 여수 도시관리계획(상하금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조서 : 다음
2. 여수 도시관리계획(상하금공원, 조성계획) 결정 변경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 도서는 여수시청 공원과(061-659-4635)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상하금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조성계획(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총괄표

가. 공간시설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근린 공원		상하금 공원	근린공원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산13 일원	63,155	63,155	2009. 09. 25.	

2) 시설규모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		시설면적 (㎡)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율(%)			건폐율(%)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법정 기준	기정	변경	법정 기준	
근린공원	63,155	63,155	10,949.0	10,190.0	96.0	96.0	17.4	16.1	40 이하	0.9	0.9	20 이하	

○ 변경 사유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주차장, 관리도로 축소 등) 반영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 총괄표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63,155.0	63,155.0	96.00	96.00	96.00	96.00	•건폐율0.9%
소 계		10,949.0	10,190.0					•시설율 17.4% → 16.1%
도로및광장	도로· 광장	6,194.0	6,045.0					
조 경 시 설	잔디원지 외	1,927.0	1,530.0					
휴 양 시 설	휴게쉼터	684.0	684.0					
교 양 시 설	유아숲체험원	695.0	695.0					
운 동 시 설	체력단련장	164.0	164.0					
유 희 시 설		-						
편 익 시 설	전망대 외 2종	1,189.0	982.0	64.00	64.00	64.00	64.00	
관 리 시 설	관리사무소	96.0	90.0	32.00	32.00	32.00	32.00	
도시농업시설								
녹 지		52,206.0	52,965.0					•녹지율 82.6% → 83.9%

2)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총 계	63,155.0	100.0	63,155.0	100.0	
시설용지면적	10,949.0	17.3	10,190.0	16.1	
도로및광장	6,194.0	9.8	6,045.0	9.6	
조경시설	1,927.0	3.1	1,530.0	2.4	
휴양시설	684.0	1.1	684.0	1.1	
교양시설	695.0	1.1	695.0	1.1	
운동시설	164.0	0.3	164.0	0.3	
유희시설	-	-		-	
편익시설	1,189.0	1.9	982.0	1.6	
관리시설	96.0	0.2	90.0	0.1	
녹 지	52,206.0	82.6	52,965.0	83.9	

3) 세부시설계획 결정 총괄 조서

구 분	시 설 내 용	부지면적(㎡)		건 축 면 적(㎡)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 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63,155.0	63,155.0	96.00	96.00	96.00	96.00	
소 계		10,949.0	10,190.0					•시설율 17.4% → 16.1%
도로 및 광장	도로 · 광장	6,194.0	6,045.0					
조 경 시 설	잔디원지 및 화훼원	1,927.0	1,530.0					
휴 양 시 설	휴게쉼터	684.0	684.0					
교 양 시 설	유아숲 체험원	695.0	695.0					
운 동 시 설	체력단련장	164.0	164.0					
유 희 시 설								
편 익 시 설	전망대 외 2종	1,189.0	982.0	64.00	64.00	64.00	64.00	
관 리 시 설	관리사무소	96.0	90.0	32.00	32.00	32.00	32.00	
도시농업시설		-	-					
녹 지		52,206.0	52,965.0					•녹지율 82.6% → 83.9%

4) 도로 및 광장 결정 조서

등 급	변경 구분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정	총 계				6,194.0				
	변경					6,045.0				
광 장	기정	소 계				397.0				
	기정		1-1			274.0				
	기정		1-2			123.0				
소 로	기정	소 계				5,797.0				
	변경					5,648.0				
	기정	3	1	2.5	132.0	310.0	연결로	소로16	전망대	1
	변경	3	1	2.5	132.0	312.0	연결로	소로16	전망대	
	기정	3	2	4.0	456.0	2,058.0	연결로	주차장	잔디원지	1
	변경	3	2	3.5	456.0	1,811.0	연결로	주차장	잔디원지	
	기정	3	3	2.0	187.0	357.0	연결로	소로2	소로4	1
	변경	3	3	2.0	234.0	452.0	연결로	소로2	소로1	
	기정	3	4	2.0	345.0	680.0	연결로	소로3	소로2	
	기정	3	5	2.0	75.0	160.0	연결로	광장2	소로2	
	기정	3	6	2.0	209.0	423.0	진입로	소로2	소로7	1
	변경	3	6	2.0	209.0	424.0	진입로	소로2	소로7	
	기정	3	7	2.0	71.0	136.0	연결로	소로2	소로4	
	기정	3	8	2.0	98.0	150.0	연결로	소로2	소로4	
	기정	3	9	1.2	80.0	123.0	연결로	소로6	소로6	
	기정	3	10	1.2	21.0	48.0	연결로	소로8	소로9	
	기정	3	11	1.2	146.0	295.0	연결로	서쪽경계	소로2	
	기정	3	12	2.0	8.0	16.0	연결로	소로11	소로2	
	기정	3	13	5.0	86.0	69.0	연결로	소로5	휴게쉼터4	
	기정	3	14	1.5	22.0	41.0	연결로	소로4	휴양림	
	기정	3	15	1.5	8.0	17.0	연결로	소로4	휴양림	
	기정	3	16	2.0	171.0	914.0	연결로	남측경계	주차장	

5) 조경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물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층 수	동 수	
조경 시설		소 계			1,927.0					
					1,530.0					
	기정	2	잔디원지	공원 내	850.0					
	변경				453.0					
	기정	3	화훼원	공원 내	1,077.0					
	변경				1,077.0					

6) 휴양시설 결정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물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수	동 수	
휴양 시설	기정	소 계			684.0					
		4-1	휴게쉼터	공원 내	107.0					
		4-2	휴게쉼터	공원 내	38.0					
		4-3	휴게쉼터	공원 내	113.0					
		4-4	휴게쉼터	공원 내	66.0					
		5	풍욕장	공원 내	360.0					

7) 운동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물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층 수	동 수	
운동 시설	기정	소 계			164.0					
	기정	6	체력단련장	공원 내	164.0					

8) 교양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물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수	동 수	
교양 시설	기정	소 계			695.0					
	기정	7	유이숲체험원		695.0					

9) 편익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물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층 수	동 수	
편익 시설	기정	소 계			1,189.0	64	64	1	2	
					982.0	64	64	1	2	
		8	전망대	공원 내	169.0					
		9-1	화장실	공원 내	51.0	32	32	1	1	
		9-2	화장실	공원 내	31.0	32	32	1	1	
		10	주차장	공원 내	938.0					29면
					731.0					23면

10) 공원관리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물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층 수	동 수	
편익 시설	기정	소 계			96.0	32	32	1		
					90.0	32	32	1		
	기정	11	관리사무소	공원 내	96.0	32	32	1		참고
					90.0	32	32	1		

11) 녹지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번호	시 설 명	위 치	부지면적 (㎡)	건 축 물 (㎡)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층 수	동 수	
녹지	기정	소 계			52,206.0					
	변경				52,965.0					
	기정	녹지	공원 내	52,206.0						
	변경			52,965.0						

여수시 고시 제2019-40호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주변 및 해안 수변축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주변 및 해안수변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2. 14

여수시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내용

가. 제한지역

1) 1구역 :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주변

(국지도 22호선 덕양교차로~국도77호선 백야 등대)

2) 2구역 : 해안 수변축

(소호 디오선리조트~화양 용주, 화양 대서이~구미, 돌산 월전포~안골전, 돌산 무슬목~소율)

나. 지정면적 : 1구역 1,791,346㎡, 2구역 3,805,938㎡

다. 제한사유 : 국가지원지방도 22호선 주변과 해안 수변축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난개발 사전방지를 위하여 경관지구 지정 때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라. 제한범위 :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행위와 주요 난개발 건축행위

마. 제한행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중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제2호에 따른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행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15호의 숙박시설, 제25호의 발전시설

※ 제한되는 용도별 건축물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운동시설 중 골프장 및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장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공장
- 창고시설로서 해당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또는 하역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 · 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 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 · 저장시설에 한한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중 양어시설 및 부화장, 종묘배양시설은 제외한다.)
- 자원순환관련시설
- 발전시설
- 묘지관련시설

바. 허용행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제한행위 이외의 행위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경우 및 건축심의 ·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사. 제한기간: 2019. 2. 14. ~ 2021. 2. 13. (고시일로부터 2년간)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1)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여수시 고시 제2019-41호

돌산 무슬목 주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돌산 무슬목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9. 2. 14

여수시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내용

가. 제한지역 : 여수시 돌산을 평사리 1537번지 일원(무슬목 목장용지)

나. 지정면적 : 709,292㎡

다. 제한사유 :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진행 될 경우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훼손 등이 우려되며, 도시기본계획 등이 수립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 질 수 있음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라. 제한행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취

마. 허용행위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일 이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한 경우

2)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바.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 게재 생략

3. 관계도서는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1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곡성군 고시 제2019-11호

곡성군 도시계획시설(소로2-302, 소로2-303, 주차장)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곡성군 고시 제2018-107호(2018.11.1.)로 고시된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산19번지 일원에 “헬스팜 관광농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를 곡성 군계획시설(소로2-302호선, 소로 2-303호선, 주차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14

곡성군수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산19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소로2-302, 소로2-303, 주차장)
 - 사업의 명칭 : 헬스팜 관광농원 조성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 시행면적 : 8,402㎡
 - 사업의 규모

노 선 명	연장 (m)	폭원 (m)	시 점	종 점	금 회 시 행		
					연장(m)	시 점	종 점
소로2-302	231	8	연반리 소2-301	연반리 소2-303	231	연반리 소2-301	연반리 소2-303
소로2-303	578	8	연반리 산19	연반리 산19	578	연반리 산19	연반리 산19
주차장	1,530	49면	연반리 산19	연반리 산19	1,530㎡	연반리 산19	연반리 산1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성 명 :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헬스팜
 -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입면 입면로 455-53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기간 : 당초 2018. 10. 22 ~ 2019. 10. 21
 - 변경 2018. 10. 22 ~ 202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다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경제과(☎061-360-8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 목	총면적 (㎡)	전용면적 (㎡)	소유자		공유지분	이해관계인		비고
	리	편입 지번				주소	성명		주 소	성 명	
1	연반	915-1	답	106	3	곡성군 삼기면 근촌리 521	이웅이외1 인				
2	연반	311	전	2,439	115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234	표락찬				
3	연반	1491	전	297.9	18	곡성군 입면 입면로 455-53	헬스팜				
4	연반	산19	임	254569	3861	곡성군 입면 입면로 455-53	헬스팜				
5	연반	1498	도	4405.4	4405.4	곡성군 입면 입면로 455-53	헬스팜				

○ 지장물조서 : 해당없음

곡성군 고시 제2019-13호

곡성군 군계획시설(주차장5) 실시계획인가 고시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219-2번지 일원에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기반시설) 조성사업」를 곡성 군계획시설(주차장5)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14

곡성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 121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주차장5)사업
 - 사업의 명칭 : 곡성 섬진강 동화정원(기반시설)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사업의 면적 : A=19,206㎡
 - 사업의 규모 : 교통시설(주차장) 487면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곡성군수(관광과장)
 - 주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다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다음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도시경제과(☎061-360-83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계	시설	시설외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명	주소	
계	18필지			35,745	19,206	19,206							
1	곡성읍 오자리	1220-2	답	841	732	732		김서운	곡성읍 학정리 595				
2	곡성읍 오자리	1220-1	답	1,078	972	972		김순옥	광주 북구 용두동 330 양산타운 105-1002				
3	곡성읍 오자리	1219-7	구	2,015	1,165	1,165		농림축산 식품부					
4	곡성읍 오자리	1219-6	답	299	28	28		최정옥	광주 북구 일곡동 850-5, 호반일신아파트 102동 1006호				
5	곡성읍 오자리	1219-19	답	1,397	1,397	1,397		곡성군					
6	곡성읍 오자리	1219-5	답	347	32	32		한상호	1251				
7	곡성읍 오자리	1219-18	답	1,862	1,862	1,862		곡성군					
8	곡성읍 오자리	1219-4	답	188	17	17		정경란 외2인	광주 남구 봉산2로 98, 401동707호	근저당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225(대인동)	
9	곡성읍 오자리	1219-17	답	1,044	1,044	1,044		곡성군					
10	곡성읍 오자리	1219-8	답	849	726	726		김명숙 외1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11	곡성읍 오자리	1219-3	답	2,038	1,738	1,738		김명숙 외1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12	곡성읍 오자리	1219-2	답	2,799	2,359	2,359		안경섭	곡성읍 읍내리 641-5				
13	곡성읍 오자리	1219-1	답	2,646	1,850	1,850		곡성군					
14	곡성읍 오자리	1303-1	답	3,741	3,510	3,510		곡성군					
15	곡성읍 오자리	1389-7	대	254	215	215		곡성군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계	시설	시설외	성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성명	주소	
16	곡성읍 오지리	1389-1	대	1,806	1,405	1,405		장광주	곡성군 오곡면 가차마을로 294	근저당	순창 새마을 금고	전북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156-5	
17	곡성읍 오지리	1418-20	천	11,986	17	17		국토 교통부					
18	곡성읍 오지리	1220-7	구	555	137	137		농림축산 식품부					

○ 지장물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단위	수량	소유자		비고
				벽	지붕			성명	주 소	
1	오곡면 오지리	1219-1	비닐하우스			2,300㎡	5동	장광주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94	
		1303-1								
2	오곡면 오지리	1303-1	비닐하우스			190㎡	1동	장광주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94	
			창고			5㎡	1동			
			컨테이너			135㎡	7동			
			발전기			10㎡	1동			
3	오곡면 오지리	1389-1	영업용 건물	S조	S조	600㎡	4동	장광주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94	
			컨테이너			18㎡	1동			
			창고			60㎡	2동			
4	곡성읍 오지리	1219-8	벚나무				301주	김명숙 외1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5	곡성읍 오지리	1219-3	벚나무				62주	김명숙 외1인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74-117	

고흥군 고시 제2019-4호

고흥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흥군 군계획시설(마치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19. 2. 14

고흥군수

1. 고흥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고흥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
3. 관련 도면 : 게재생략
4. 관련 도서는 고흥군청 건설과(☎061-850-5432)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1.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마치공원	근린공원	고흥읍 행정리 258번지 일원	58,115	-	58,115	1985.9.4	

2.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마치공원

(가) 공원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마치공원	근린공원	고흥읍 행정리 258번지 일원	58,115	-	58,115	1985. 9. 4	

(나) 공원조성계획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			건 축 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58,115.0	-	58,115.0	1	42.0	42.0	시설율 : 12.0%
공 원 시 설	소 계	6,961.0	증)22.0	6,983.0	1	42.0	42.0	
	도로및광장	3,307.0	증)37.0	3,344.0	-	-	-	
	조경시설	356.0	-	356.0	-	-	-	
	교양시설	895.0	-	895.0	-	-	-	
	휴양시설	159.0	감)15.0	144.0	-	-	-	
	유희시설	718.0	-	718.0	-	-	-	
	운동시설	596.0	-	596.0	-	-	-	
	편익시설	930.0	-	930.0	1	42.0	42.0	
	공원관리시설	-	-	-	-	-	-	
녹 지		51,154.0	감)22.0	51,132.0	-	-	-	88.0%

(다) 시설별조서

① 세부시설 결정조서

시설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부지면적(㎡)			건축물(㎡)		규모 수량	비고
					당초	변경	변경후	바닥 면적	연 면적		
합 계					58,115.0	-	58,115.0	42.0	42.0	28.0	
시설 소계					6,961.0	증22.0	6,983.0	42.0	42.0	28.0	12.0%
도로 및 광장	소 계			3,307.0	증37.0	3,344.0	-	-	-	5.7%	
		도로	공원 內	2,400.0	-	2,437.0			-		
	1	광장	〃	907.0	-	907.0			-		
조경 시설	소 계			356.0	-	356.0			3.0	0.6%	
	①	화단	공원 內	356.0	-	356.0			-	조경석쌓기	
	②	장미아치	〃	-	-	-			3.0		
교양 시설	소 계			895.0	-	895.0			1.0	1.5%	
	2	성벽	공원 內	895.0	-	895.0			1.0	219.5m	
휴양 시설	소 계			159.0	감15.0	144.0			12.0	0.3%	
	3	휴게소	공원 內	91.0	-	91.0			-		
	4	쉼터1	〃	23.0	-	23.0			-		
	5	쉼터2	〃	20.0	증10.0	30.0			-		
	6	쉼터3	〃	25.0	감25.0	0.0			-		
	③	파고라	〃	-	-	-			1.0		
	④	육각정자	〃	-	-	-			1.0		
	⑤	벤치	〃	-	-	-			10.0		
유희 시설	소 계			718.0	-	718.0			2.0	1.3%	
	7	어린이놀이터	공원 內	428.5	-	428.5			-		
	⑥	조합놀이대	〃	-	-	-			1.0		
	8	모래놀이터	〃	289.5	-	289.5			-		
	⑦	모래막이	〃	-	-	-			1.0	27.0m	
운동 시설	소 계			596.0	-	596.0	-	-	4.0	1.0%	
	9	농구장	공원 內	420.0	-	420.0			-		
	10	족구장	〃	176.0	-	176.0			-		
	⑧	체력단련시설	〃	-	-	-			4.0		
편익 시설	소 계			930.0	-	930.0	42.0	42.0	-	1.6%	
	11	화장실	공원 內	45.0	-	45.0	42.0	42.0	-		
	12	전망대	〃	53.5	-	53.5			-		
	13	주차장	〃	831.5	-	831.5			-		
공원 관리 시설	소 계			-	-	-			6.0	-	
	⑨	쓰레기통	공원 內	-	-	-			2.0		
	⑩	웁스1	〃	-	-	-			2.0		
	⑪	웁스2	〃	-	-	-			2.0		
녹지 및 기타				51,154.0	감22.0	51,132.0			-	88.0%	

②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면적(㎡)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소 계						775.0	978.3	2,400.0	2,437.0					
기정	소로	3	1	6.0	진입로	200.0	200.0	1,256.0	1,256.0	국도 853호선	국도 853호선	공원내	공원내	가각 포함
기정	소로	3	2	6.0	진입로	33.0	33.0	200.0	200.0	소로 3-1	소로 3-1	주차장	주차장	
기정	소로	3	3	3.0	연결로	86.5	86.5	253.0	253.0	주차장	주차장	광장	광장	
변경	소로	3	4	2.0	연결로	59.0	61.7	118.5	74.0	대상지 남동측	대상지 남동측	쉼터1	쉼터1	
변경	소로	3	5	2.0	연결로	57.0	135.7	114.5	102.0	쉼터1	쉼터1	광장	광장	
변경	소로	3	6	1.5	연결로	44.0	136.3	66.0	163.0	대상지 북동측	대상지 북동측	쉼터2	쉼터2	
변경	소로	3	7	1.5	연결로	125.5	91.2	188.0	109.0	쉼터2	대상지 남서측	어린이 놀이터	소로 3-7	
기정	소로	3	8	1.2	연결로	18.0	18.0	22.0	22.0	소로 3-3	소로 3-3	족구장	족구장	
기정	소로	3	9	1.2	연결로	45.0	45.0	54.0	54.0	휴게소	휴게소	공원내	공원내	
변경	소로	3	10	1.2	연결로	104.0	167.9	125.0	201.0	쉼터3	쉼터1	소로 3-1	소로 3-1	
기정	소로	3	11	1.0	연결로	1.5	1.5	1.5	1.5	소로 3-3	소로 3-3	화장실	화장실	
기정	소로	3	12	1.0	연결로	1.5	1.5	1.5	1.5	소로 3-3	소로 3-3	화장실	화장실	

강진군 고시 제2019-17호

강진 산업단지 실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거 강진산업단지 실시계획 결정(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군관리계획 결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19. 2. 14

강진군수

1. 사업의 명칭 : 강진 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전남개발공사 사장, 강진군수
 -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242,
전라남도 강진군 탐진로 111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송학리 일원
 - 면 적 : 655,267㎡

강진 산업단지 실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1) 강진산단 용도지역 결정 총괄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합 계	563,223,000 (62,953,530)	100.0	() : 해면
도시지역	27,039,673 (1,700,118)	4.8	() : 해면
주거지역	3,876,552	0.7	
상업지역	604,812	0.1	
공업지역	1,416,144 (60,350)	0.3	() : 해면
일반공업지역	1,194,912	0.2	
준공업지역	221,232 (60,350)	0.1	() : 해면
녹지지역	19,856,327 (353,930)	3.5	() : 해면
미지정	1,285,838 (1,285,838)	0.2	() : 해면
관리지역	114,134,822	20.3	
보전관리지역	47,688,554	8.5	
생산관리지역	18,401,958	3.3	
계획관리지역	48,064,310	8.5	
미세분관리지역	-	-	
농림지역	312,949,757	55.5	
자연환경보전지역	109,078,748 (61,253,412)	19.4	() : 해면

※주 : 용도지역결정변경은 강진 산업단지 확장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사항임

주 : () 해면면적의 합계는 오차정정 사항임

2) 강진 산업단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합계	655,267	100.0	
도시지역	655,267	100.0	
공업지역	655,267	100.0	
일반공업지역	655,267	10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1	강진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남 강진군 성전면 명산리, 송학리 일원	655,267	

다. 군계획시설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총괄표

구 분	류별	폭원(m)	노선수	연장(m)	면적(㎡)	비고
합 계	-	-	14	5,216	82,053	
일반 도로	계	-	9	4,973	79,818	
	2류	15~19	7	4,510	73,963	
	3류	12	2	463	5,855	
일반 도로 / 특수 도로	계	-	5	243	2,235	
	1류	10	1	34	332	
	2류	8	4	209	1,903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1	19	보조 간선	1,119	서측구역계 (송학리 715-5)	중로2-56 (명산리산139-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변경	중로	2	51	19	보조 간선	1,114	서측구역계 (송학리 715-5)	중로2-56 (명산리산139-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2	15	집산 도로	1,099	중로2-51 (송학리 717-1)	중로2-55 (명산리 650-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3	15	집산 도로	170	중로2-51 (송학리 산3)	중로2-52 (송학리 6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4	15	집산 도로	291	중로2-51 (송학리 233)	중로2-52 (명산리산142-2)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5	15	집산 도로	624	중로2-51 (명산리산139-1)	소로2-354 (명산리 730)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6	15	집산 도로	932	중로2-51 (송학리 산5)	중로2-51 (명산리산139-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2	57	15	집산 도로	280	중로2-51 (송학리 234)	중로2-56 (송학리802-2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01	12	국지 도로	262	중로2-52 (송학리 720-2)	중로2-52 (송학리 716-5)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중로	3	202	12	국지 도로	201	중로2-52 (송학리 720-3)	중로2-52 (송학리 6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1	91	10	보행자 도로	34	중로3-201 (송학리 718)	북측구역계 (송학리718-7)	특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1	8	국지 도로	27	중로2-51 (송학리 211-3)	남측구역계 (송학리 689)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2	8	국지 도로	67	중로2-52 (송학리 산1-4)	북측구역계 (명산리산142-5)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3	8	국지 도로	58	중로2-55 (명산리 산148)	유수지 (명산리산148)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기정	소로	2	355	8	국지 도로	57	중로2-56 (송학리 152-2)	수도공급설비 (송학리 151)	일반 도로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나) 주차장계획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4,518		
변경	8	주차장	중로2-57호선변 (송학리 235)	3,100	전고211호 11.07.13	일반공업지역 (129면)
변경	9	주차장	중로3-202호선변 (송학리 720-5)	1,428	전고211호 11.07.13	일반공업지역 (57면)

2) 공원·녹지계획

가) 공원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계					6,198		
	2	산단2공원	소공원	중로3-201호선변 (송학리 720-1)	2,729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3	산단3공원	소공원	중로3-202호선변 (송학리 721)	3,469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나) 녹지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계					68,516		
	8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서측구역계 (송학리 714)	6,886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9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송학리 718-7)	1,195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10	녹지	완충녹지	중로2-51호선변 (송학리 719-1)	1,400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11	녹지	완충녹지	중로2-51호선변 (송학리 717-3)	9,157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12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송학리 212-9)	2,500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13	녹지	완충녹지	하천변 (명산리 468-1)	34,659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15	녹지	완충녹지	남측구역계 (송학리 155)	12,719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다)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계				3,689		
	3	공공공지	동측구역계 (명산리 1465-2)	1,239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4	공공공지	하천변 (명산리 산142-4)	1,005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6	공공공지	(송학리 산4)	504	-	일반 공업지역
	7	공공공지	(송학리 234)	499	-	일반 공업지역
	8	공공공지	(송학리 171-2)	442	-	일반 공업지역

3) 유통 및 공급시설계획

가) 수도공급설비

○ 수도공급설비(배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계				1,642		
	7	수도공급설비 (배수지)	남측구역계 (송학리 151)	1,642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4) 방재시설계획

가) 유수지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계					10,327		
	1	유수지	저류시설	북측구역계 (명산리 466)	10,327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5) 환경기초시설계획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계					3,838		
	2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폐수 처리시설	중로 2-55호선변 (명산리 728-1)	3,838	전고211호 11.07.13	일반 공업지역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410,318		410,318	
A (산업시설용지) [A1 ~ A13]	A1	48,272	1	48,272	산업시설용지
	A2	50,104	1	50,104	산업시설용지
	A3	57,533	1	57,533	산업시설용지
	A4	38,963	1	38,963	산업시설용지
	A5	14,934	1	14,934	산업시설용지
	A6	31,021	1	31,021	산업시설용지
	A7	22,340	1	22,340	산업시설용지
	A8	9,964	1	9,964	산업시설용지
	A9	21,972	1	21,972	산업시설용지
	A10	23,871	1	23,871	산업시설용지
	A11	23,877	1	23,877	산업시설용지
	A12	45,020	1	45,020	산업시설용지
	A13	22,447	1	22,447	산업시설용지

2) 지원시설용지

가) 근린생활시설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20,639		20,639	
B (지원시설용지) [B1-B4]	B1	3,819	1	643	후생지원
			2	643	후생지원
			3	602	후생지원
			4	643	후생지원
			5	644	후생지원
			6	644	후생지원
	B2	6,604	1	913	후생지원
			2	748	후생지원
			3	668	후생지원
			4	523	후생지원
			5	1,024	후생지원
			6	664	후생지원
			7	697	후생지원
			8	663	후생지원
			9	702	후생지원
	B3	6,575	1	702	후생지원
			2	727	후생지원
			3	764	후생지원
			4	727	후생지원
			5	818	후생지원
			6	927	후생지원
			7	947	후생지원
			8	978	후생지원
	B4	3,641	1	587	후생지원
			2	615	후생지원
			3	615	후생지원
			4	615	후생지원
			5	615	후생지원
			6	599	후생지원

나) 환경산업진흥원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39,666		39,666	
C (환경산업 진흥원)	C1		39,666	1	39,666	기술센터

3) 공공시설용지

가)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 구 번 호	면 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합 계		4,518		4,518	
E (주차장용지) [E1-E2]	E1	3,100	1	3,100	
	E2	1,418	1	1,418	

마.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	산업시설 (A1~A12)	용 도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 일반 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포함)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A11, A12만 적용)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 시설
		건폐율		70%이하
		용적율		350%이하
		높 이		-
		건축 제한		-
		배치		도로변에 접한 모든 건축물의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할 수 없음
		형태		지붕의 형태는 단경사 및 경사지붕을 권장함
		색채		- 입면특화권역(조선기자재 산업) : A1 ~ A2 - 주조색N, 보조색·강조색: Y, RP, B계열 - 조망권역(신재생에너지 및 환경산업) : A3 ~ A12 - 주조색N, 보조색·강조색: 5PB, 7.5BG계열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 A11 ~ A12 -중로 2-54, 55호선변으로부터 8m (차폐조경 설치)

2) 지원시설용지

가) 근린생활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B	지원시설 (B1-B4)	용 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니목의 교육원, 다목의 직업훈련소, 마목의 연구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기목의 주차장, 니목의 세차장, 리목의 검사장, 바목의 정비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치	- 건물의 주방향을 주도로를 향해 배치함 - 도로변에 접한 모든 건축물의 출입구,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할 수 없음
		형태	- 지붕 형태는 슬라브형 지양, 아치형 등과 같은 조형적인 디자인이 되도록 권장 - 옥상공간을 조경처리하여 휴식 및 휴게를 위해 정원화 권장
		색채	- 랜드마크권역 : B1-B4 - 주조색: 10YR, 보조색: 강조색: 5YR, 10YR, 2.5GY 계열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참조 15도로변으로부터 2m

나) 환경산업진흥원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	환경산업 진흥원 (C1)	용 도	허용용도
			- 기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 일반공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단, 제1종·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진흥원 내 입주기업에서 연구개발된 제품의 시험생산·제조 및 시제품제작·판매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한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랜드마크권역(C1) - 주조색:10YR , 보조색·강조색: 5YR, 10YR, 2.5GY계열
		건축선	-

3) 공공시설용지

가)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	주차장 (E1-E2)	용 도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진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상 일반공 업지역 내 허용용도 중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세차장 ○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용도(제1,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관련시설,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제외), 판매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제외), 자동차관련시설)는 건축연면적의 30%이내에서 허용함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 시설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350%이하
		높 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바.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1)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	산업시설 A1~A12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 차량출입구에 대한 별도 지침이 없는 대지로의 차량출입구 위치는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단, 도로모퉁이에서 20m 이내에는 진출입불가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강진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 준수 • 시각적 차폐감 제고 및 친환경부지조성을 위해 중로 2-54, 55호선변 A11, A12블록에는 건축한 계선 8m를이격하여 차폐조경 설치	

2)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B	지원시설 B1~B4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대지 내 공지 • 바닥 높이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높이와 동일하게 유지 • 바닥재는 인접한 보도 또는 보행자전용도로의 바닥재와 같거나 유사한 재료를 사용 •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쓰레기 적치장, 담장 등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 불가	

3) 환경산업진흥원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C	환경산업 진흥원 C1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주차장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강진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 대지안의 조경 • 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기준은 관계법규 준수	

4)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E	주차장 E1~E2	■ 차량진출입 • 차량출입불허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출입구는 위계가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 ■ 주차장 • 건축물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강진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5) 기타 사항

■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기본방향	■ 옥외광고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건물·가로경관과 통합된 디자인 지향 ■ 명료화, 단순화, 일체화 개념을 도입한 디자인 적용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기준을 따름
가이드라인 지침	■ 가로형 간판 • 입체형 간판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건물 정면부 3층 이하에 설치 • 가로 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폭의 80% 이내 설치 • 건물명을 가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건물폭의 1/2 이내 설치 • 건물명을 세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건물높이의 1/4 이내 설치 ■ 돌출형(세로형) 간판 •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4층 이상에 입주한 업소에 한하여 설치 • 4층 이상 10층 이내 설치하고 건물 전면 폭과 상관없이 1줄만 설치 가능 ■ 지주이용간판 • 건물이 5층 이상이거나 업소의 수가 10개 이상일 경우 당해 부지 내에 1개 설치 가능 • 지면으로부터 5m이내, 1개면의 최대면적은 5㎡ 이내, 총 면적 20㎡ 이내로 설치 가능

8.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및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관련도면 게재 생략

9. 관련도서 열람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관계도서를 강진군 일자리창출과(061-430-309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강진군 고시 제2019-21호

도시계획도로 소로2-67(서문안~인화어린이집) 개설공사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우리군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소로2-67(서문안~인화어린이집) 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9. 2. 14

강진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87-3도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
 - 나. 명 칭 : 도시계획도로 소로2-67(서문안~인화어린이집)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13,055㎡ (L=1,055m, B=8.0~15.0m)

규 모				기 능	연장(m)		면적 (㎡)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총연장	금회시행				
소로	2	67	8	국 지 도 로	456	465	4,534	중로 2-1	서성리 157	일반도로
소로	2	76	10	국 지 도 로	1,164	137	1,969	중로 2-1	근린공원 1	일반도로
소로	2	6	8	국 지 도 로	912	83	1,193	서성리 335-1	서성리62-2	일반도로
소로	2	19	8	국 지 도 로	456	53	514	중로 2-1	소로 2-6	일반도로
소로	2	3	15	국 지 도 로	184	184	3,153	소로2-76	소로2-67	일반도로
소로			10	국 지 도 로	133	133	1,692	소로2-76	중로2-1	일반도로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강진군수
 - 나. 주 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나.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4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등의 토지 및 지장물 세목 고시 : 다음

7.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19. 2. 14. ~ 2019. 2. 28. (15일간)

나. 장 소 : 강진군 건설과 도시경관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건설과 도시경관팀(061-430-39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유권 및 권리 명세서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사편입면적 (㎡)		공부상 소유자		비고
군	읍	리			지적	편입 예상	주 소	성 명	
강진	강진	서성	67-1	대	1,671	24			
강진	강진	서성	68	대	2,363	118	강진읍 서성리 305-23	강진의료원	
강진	강진	서성	71-1	대	884	13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10	전라남도 (교육감)	
강진	강진	서성	79-1	대	342	5	건우아파트		
강진	강진	서성	79-5	답	207	2	강진읍 서성리 3*5	김•을	
강진	강진	서성	80-6	대	978	5	강진읍 서성리 8* -6	푸른•••••	
강진	강진	서성	80-8	대	316	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고성길 *6	박•남	
강진	강진	서성	80-9	대	366	13	강진읍 서성리 8* -9	박•안	
강진	강진	서성	82	전	285	191	강진읍 동문길 2* -1	박•레	
강진	강진	서성	83-1	답	529	251	강진읍 서성리 2*4 씨앤에스후레쉬빌*차 30* -70*	마•호	
강진	강진	서성	84-8	답	146	64	강진읍 서성리 2*4 씨앤에스후레쉬빌*차 *0* -70*	마•호	
강진	강진	서성	85-1	답	2,579	4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9, *0층(삼성동)	국제•••(주)	
강진	강진	서성	85-3	답	1,197	278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층(삼성동, **타워)	코람•••••	
강진	강진	서성	115	대	509	48	광주시 광산구 사암로 *5번길 42, 10*동90*호	김•옥	
강진	강진	서성	228-7	도	334	3	강진읍 서성리 6* -1 건우아파트 * - *01	조•수	
강진	강진	서성	228-8	대	1,183	36	한성하이츠 010-9578-3330		
강진	강진	서성	228-9	대	372	4	강진읍 서성리 6* -1 건우아파트 * - *01	조•수	
강진	강진	서성	229	전	696	67	강진군 강진읍 현구길 *6	김•식	

소재지			지번	지목	공사편입면적 (㎡)		공부상 소유자		비고
군	읍	리			지적	편입 예상	주 소	성 명	
강진	강진	서성	230	전	992	48	강진읍 현구길 *6	이●례	
강진	강진	서성	234	대	8,221	94	강진읍 서성리 2*4	씨안●●●●●●	
강진	강진	서성	235	답	1,495	89	강진읍 탐진로 *1, *동 *02호	송●석	
강진	강진	서성	236-2	답	1,782	44	광주시 동구 서석동 *6-5	김●초외 3인	
강진	강진	서성	236-6	답	618	411	강진읍 탐진로 *1, *동 *02호	송●석	
강진	강진	서성	237	종	1,288	2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2*7	강진●●●●●●	
강진	강진	서성	237-1	답	3,044	711	강진읍 현구길 *6	김●식	
강진	강진	서성	237-9	답	41	35	강진읍 서성리 2*37	강진●●●●●●	
강진	강진	서성	239	답	1,088	353	강진읍 서성리 2*7	남●택	
강진	강진	서성	257	답	2,367	52	강진읍 서성1길 2*, *01동 *03호	윤●미외1인	
강진	강진	서성	258	답	694	259	강진읍 서성리 1*2-5	전●순	
강진	강진	서성	260-5	답	282	65	강진읍 서성리 1*2-5	전●순	
강진	강진	서성	260-6	답	2,168	135	강진읍 현구길 *36	김●식	
강진	강진	서성	260-7	답	182	172	강진읍 신성길 *1, *04호	오●호	
강진	강진	서성	260-9	답	616	15	강진읍 신성길 *1, *04호	오●호	
강진	강진	서성	산10	임	7,718	117	도암면 지석리 3*5	김해김씨 삼현파탑	
강진	강진	서성	79-2	도	50	50	강진읍 서성리 *3	이●임	
강진	강진	서성	80-11	답	3	3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고성길 *6	박●남	
강진	강진	서성	86-2	도	10	10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29	한●식	
강진	강진	서성	88-2	도	18	18	강진읍 남성리 1*7	김●식	
강진	강진	서성	88-7	답	3	3	강진읍 서성리 2*8-8	박●범	
강진	강진	서성	114-2	도	10	10	강진읍 서성리 *7	성●규	
강진	강진	서성	116-2	도	17	17	강진읍 서성리 1*4	이●준	
강진	강진	서성	232-2	도	3	3	강진읍 서성리 *1	김●수	
강진	강진	서성	232-3	도	23	23	강진읍 서성리 *1	김●수	

소 재 지			지번	지목	공사편입면적 (㎡)		공부상 소유자		비고
군	읍	리			지적	편입 예상	주 소	성 명	
강진	강진	서성	232-8	대	15	1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1, *충(삼성동)	코람●●●●	
강진	강진	서성	233-2	도	13	13	목포시 산정동 1*85-4	김●배	
강진	강진	서성	234-2	도	40	40	강진읍 남성리 2*9	김●식	
강진	강진	서성	234-3	도	13	13	목포시 산정동 1*85-4	김●배	
강진	강진	서성	236-3	도	102	102	강진읍 남성리 *9	김●한	
강진	강진	서성	237-3	도	99	25	강진읍 남성리 2*2	양●홍	
강진	강진	서성	237-4	도	53	53	강진읍 현구길 *6	김●식	
강진	강진	서성	237-5	답	35	35	강진읍 서성리 9*-6	주식회사●●●●	
강진	강진	서성	237-6	답	329	329	강진읍 서성리 9*-6	주식회사●●●●	
강진	강진	서성	260-3	도	53	53	강진읍 평동리 1*4	김●순	
강진	강진	서성	261	대	582	6	강진읍 탐진로 *0, *01동 **05호	홍●영	
강진	강진	서성	261-3	답	348	19	도암면 신기리 2*36	김●옥외8인	
강진	강진	서성	261-14	답	1,049	5	도암면 신기리 2*6	김●옥외8인	
강진	강진	서성	261-19	답	235	51	강진읍 서성리 1*3-1	윤●규	
강진	강진	서성	567	도	46	18		국(건설부)	
강진	강진	서성	569	구	12,284	567		국(건설부)	
강진	강진	서성	570	구	2,542	620		국(농림수산 부)	
강진	강진	서성	575	도	5,809	171		국(건설부)	
강진	강진	서성	575-8	도	1,072	476		국(건설부)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세목고시

연번	물건 소재지	지번	지목	물건				공부상 소유자		비고
				종류	상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1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67-1	대	경비실	판넬조 판넬지붕	9	m ²			
				가추	철파이프 판넬	4.32	m ²			
				CCTV 카메라 및 지주	-	1	식			
				CCTV 설비	-	1	식			
				에어컨 등 동산이전비	-	1	식			
				E/V 인터폰	-	1	식			
2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79-5	답	감나무	-	2	주	서성리 3*5	김●울	
				자귀나무	-	1	주			
				석류나무	-	1	주			
				홍가시	-	9	주			
				헛개	-	1	주			
				매실나무	-	1	주			
				뽕나무	-	2	주			
				자두나무	-	1	주			
3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80-3	도	간판	복주식 (CU편의점)	1	식			
3-1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80-3	도	화단	조적조	2	식			
				벚나무	-	5	주			
4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229	전	출입문	철재	1	식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현구길 *6	김●식	
5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230	전	울타리	철재	68	m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현구길 *6	이●레	
				상수도 계량기함	-	1	식			
6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260-5	답	건조기창고	-	1	식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6	전●순	
				건조기	-	1	식			
				전기계량기	-	1	식			
7	강진군 강진읍 서성리	235, 236-6	답	담장 및 출입문	철재 메쉬	74	m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 *동 *02호	송●석	

강진군 공고 제2019-123호

강진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강진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4

강진군수

1. 강진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강진 군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3. 강진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관계도서(안) : 게재생략
4.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장소
 - 기간 : 2019. 2. 14. ~ 2. 28.(14일 간)
 - 장소 : 강진군청 건설과(도시경관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건설과(☎061-430-39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군계획시설(소공원)

-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소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④	소공원4	소공원	군동면 호계리 897-4 일원	322	증 4	326	강진군 고시 제2017-118호 ('17.11.2.)	

- 공원 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4	소공원4	1. 면적 변경: 기정 322㎡ → 변경 326㎡ 2. 세부시설 결정: 녹지 310㎡, 휴양시설 16㎡	1.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증가 2. 미 결정된 세부시설의 결정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시 설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건축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322	326	-	-	16	16	100	시설률 4.91% 녹지율 95.1%
시설부지		-	16	-	-	16	16	4.9	
	휴게 정자	-	16	-	-	16	16	4.9	
녹 지		322	310	-	-	-	-	95.1	

강진군 공고 제2019-128호

강진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중로 2-15, 소로 1-26)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강진군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강진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2. 14

강진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진군 강진읍 목리 166-7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계획시설(도로)
 - 나. 명 칭 : 강진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개요 및 규모 : 7,560㎡ (L=0.61km, B=15.0m)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성명) 및 주소
강진 군계획시설(도로) 강진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전남 강진군 강진읍 목리 166-6번지 일원	○면적 및 규모 - 면적: 10,079㎡ - 규모: L=610m, B=15m	강진군수/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4.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 예정일
 - 가.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나. 준공 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4개월
5.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다음
6. 열람기간 및 장소
 - 가. 기 간 : 2019. 2. 14. ~ 2019. 2. 28. (15일간)
 - 나. 장 소 : 강진군 건설과 도시경관팀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건설과 도시경관팀(061-430-39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조서

□ 공사명 : 강진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목리	383	구	1,832	63	국유지	농림수산부					
2	〃	382	도	1,869	1,148	국유지	건설교통부					
3	〃	222-1	답	2,490	6	고0근	강진군 강진읍 목리 3*6					
4	〃	222-5	답	1,364	1	김0식	강진군 강진읍 목리 2*0					
5	〃	222-7	답	2,497	3	김0자	강진군 강진읍 이학래길 48-*					
6	〃	309	구	549	185	국유지	농림수산부					
7	〃	381	구	4,714	46	국유지	농림수산부					
8	〃	195	답	1,212	93	조0영	강진군 성전면 도림리 4*3					
9	〃	195-1	답	1,746	128	김0균	강진군 칠랑면 단월리 7*5의 *0					
10	〃	195-2	답	2,910	211	김0균	강진군 칠랑면 단월리 7*5의 *0					
11	〃	195-3	답	388	29	김0균	강진군 칠랑면 단월리 7*5의 *0					
12	〃	195-4	답	2,037	145	김0님	강진군 강진읍 이학래길 4*-2					
13	〃	195-5	답	485	33	고0근	광주시 남구 봉*로 9*,1*2-*10*(**아파트)					
14	〃	195-6	답	2,881	179	고0채	광주시 남구 봉*로 9*,1*2-*10*(**아파트)					
15	〃	195-7	답	2,260	136	최0희	경기도 의왕시 덕*로 *6, *04동 *20*호 (청*동, **시아*계미울)					
16	〃	195-8	답	650	39	김0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10*, 10*동 1*0*호 (쌍*동, ***스클래스)	1/3				
						김0영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9	1/3				
						김0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03, *06동 *06호(**르네상스아파트)	1/3				
17	〃	195-9	답	2,600	150	김0정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민주로 10*, 10*동 1*0*호 (쌍*동, ***스클래스)	1/3				
						김0영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9	1/3				
						김0신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순환로 *03, *06동 *06호(**르네상스아파트)	1/3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8	목리	195-10	답	369	21	이0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원로2*5길 1*2, *01동 *11호 (상*동, **아파트)	1/2				
						이0룡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원로2*5길 1*2, *02동 *09호 (상*동, **아파트)	1/2				
19	〃	195-11	답	2,421	136	이0임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원로245길 1*2, *01동 *11호 (상*동, **아파트)	1/2				
						이0룡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원로2*5길 1*2, *02동 *09호 (상*동, **아파트)	1/2				
20	〃	195-12	답	336	20	김0남	강진군 강진읍 이학래길 *8-*					
21	〃	195-13	답	1,766	107	김0남	강진군 강진읍 이학래길 *8-*					
22	〃	195-14	답	2,880	90	김0례	강진군 강진읍 목리 *7-*	1/2				
						이0철	강진군 강진읍 목리 *7-*	1/2				
23	〃	240	대	225	124	곽0면	강진군 강진읍 목리 2*0					
24	〃	195-16	답	1,086	75	이0섭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3*6					
25	〃	195-17	답	2,680	210	이0섭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3*6					
26	〃	228	도	98	91	국0지	건설교통부					
27	〃	518-9	도	23	1	국0지	농림수산부					
28	〃	229	답	185	150	최0란	강진군 강진읍 목리 2*9					
29	〃	210-4	답	63	44	최0란	강진군 강진읍 목리 2*9					
30	〃	211	대	122	2	차0일	강진군 강진읍 덕남로 1*6-*					
31	〃	208	대	235	2	노0섭	강진군 강진읍 목리 3*3					
32	〃	209	대	255	94	최0란	강진군 강진읍 목리 2*9					
33	〃	210-2	도	79	9	국유지	건설교통부					
34	〃	518-13	도	5,739	152	국유지	농림수산부					
35	〃	264-2	도	145	27	김0식	강진군 강진읍 목리 3*6					
36	〃	266-9	구	3,051	146	국유지	농림수산부					
37	〃	167-7	답	297	41	김0구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4*9-*					
38	〃	266-10	도	235	126	국유지	농림수산부					
39	〃	166-6	답	536	167	오0식	강진군 강진읍 목리 2*9					

일련 번호	토지소재지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 소유자			권리 이외의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지목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0	목리	518-16	도	22	3	국유지	농림수산부					
41	〃	154-203	답	20	14	김0수	강진군 강진읍 목리 2*9					
42	〃	154-219	도	101	12	김0수	강진군 강진읍 목리 2*9					
43	〃	267-25	구	3,994	308	국유지	농림수산부					
44	〃	166-1	답	426	319	김0수	서울 도봉구 창동 *3(11/6) **아파트 **02-**05					
45	〃	158-2	답	461	11	강0원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88-22					
46	〃	158-1	답	1,120	247	강0원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1*8-2					
47	〃	266-13	구	812	500	국유지	농림수산부					
48	〃	222	답	2,528	5	고0근	강진군 강진읍 목리 3*6					
49	〃	222-9	답	2,220	1	최0희	경기도 의왕시 덕장로 *6, *04동 **03호 (창*동, **시아*계마을)					
50	〃	230	잡	335	1	정0섭	강진군 강진읍 목리 2*1					

물건 조서

연번	리	지번	방향	물건의 종류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목리	383	좌	한전주	1	개	한국전력					
2	〃	382	좌	〃	1	〃	〃					
3	〃	382	좌	〃	1	〃	〃					
4	〃	382	좌	〃	1	〃	〃					
5	〃	382	좌	〃	1	〃	〃					
6	〃	382	좌	〃	1	〃	〃					
7	〃	309	우	〃	1	〃	〃					
8	〃	266-9	좌	〃	1	〃	〃					
9	〃	267-25	좌	〃	1	〃	〃					
10	〃	267-25	좌	〃	1	〃	〃					
11	〃	154-217	우	〃	1	〃	〃					
12	〃	154-216	좌	〃	1	〃	〃					
13	〃	194	우	통신주	1	개	한국통신					
14	〃	383	좌	〃	1	〃	〃					
15	〃	309	우	〃	1	〃	〃					
16	〃	309	좌	〃	1	〃	〃					
17	〃	267-25	좌	〃	1	〃	〃					
18	〃	166-3	우	〃	1	〃	〃					
19	〃	166-3	우	〃	1	〃	〃					
20	〃	266-13	좌	〃	1	〃	〃					
21	〃	266-13	좌	〃	1	〃	〃					
22	목리	195-16	좌	관정	1	개	이0섭	동성리 386				
23	〃	266-13	좌	〃	1	〃	국유지	농림수산부				
24	〃	154-215	좌	〃	1	〃	국유지	강진군				
25	목리	158-1	좌	복숭아	1	주	강0원	동성리 1*8-*2				
26				사철나무	1	주						
27				울타리	22	M						
28	목리	166-1	좌	울타리	50	M	김0수	서울 도봉구 창동 *3 주공**02-**05				
29				관정	1	식						
30				관정고	1	식						

연번	리	지번	방향	물건의 종류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31	목리	166-6	우	소각장	1	식	오0식	강진읍 초지길 *6-*				
32				바닥포장	80	m ²						
33				감나무	6	주						
34				윽나무	1	주						
35				황칠나무	2	주						
36				앵두나무	2	주						
37				사과나무	1	주						
38				매실나무	1	주						
39				싸리꽃나무	1	주						
40	목리	195	우	비닐하우스	84	m ²	조0영	광주광역시 서구 월드컵4강로 *8번길 *02동*03호				
41				〃	84	m ²						
42				〃	84	m ²						
43				〃	84	m ²						
44				〃	84	m ²						
45				〃	198	m ²						
46				관리하우스	330	m ²						
47		195-1 195-2		하우스	84	m ²	김0균	칠랑면 칠관로 *08				
48				저온창고	12.9	m ²						
49				양액시설	1	식						
50				부직포	1	식						
51				기타	1	식						
52				관리사	74.1	m ²						
53				숙소	18	m ²						
54				숙소	33	m ²						
59				관정	1	식						
60	목리	195-14	우	관정	1	식	김0례	강진읍 목리 *7-*				
61				관정고	1	식	이0철	강진읍 목리 *7-*				
62	목리	195-7	우	비닐하우스	84	m ²	최0희	경기도 의왕시 덕장로 *6,*04동**03호				
63				〃	84	m ²						
64				〃	84	m ²						
65				온풍기	1	개						

연번	리	지번	방향	물건의 종류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66				기름통	1	식						
67				계사	1	식						
68	목리	195-7	우	양액시설	1	식	최0희	경기도 의왕시 덕장로 *6,*04동**03호				
69				기타	1	식						
70	목리	209	우	주택	101.8	㎡	최0란	강진읍 초지길 *6-*				
71				방	19.3	㎡						
72				다용도실	6.6	㎡						
73				화장실	2.3	㎡						
74				창고	104.9	㎡						
75				보일러실	2.6	㎡						
76				미당포장	120	㎡						
77				정미기	1	대						
78				건조기	2	대						
79				계단	4	식						
80				수도전	1	식						
81				대문	1	식						
82				하우스	6	㎡						
83				담장	90	㎡						
84				화단	3	식						
85				감나무	2	주						
86				개나리	1	주						
87				장미	2	주						
88				동백	6	주						
89				서향	1	주						
90				가시오가피	1	주						
91				철쭉	10	주						
92				수국	1	주						
93				파라칸사스	1	주						
94				단풍나무	1	주						
95				병꽃나무	1	주						
96				소나무	1	주						

연번	리	지번	방향	물건의 종류	수량	단위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97				매실나무	1	주						
98	목리	240	우	주택	52.8	m ²	곽0면	강진읍 초지길 *6-*7				
99				다용도실	11.5	m ²						
100	목리	240	우	보일러실	1.5	m ²	곽0면	강진읍 초지길 *6-*7				
101				계단	1	식						
102				주택	23.1	m ²						
103				보일러실	1.5	m ²						
104				창고	12.9	m ²						
105				대문	1	식						
106				담장	93.6	m ²						
107				바닥포장	30	m ²						
108				장독대	1	식						
109				건사	1	식						
110				화덕	1	식						
111				화단	1	식						
112				석류나무	1	주						
113				감나무	4	주						
114				블루베리	3	주						
115				철쭉	10	주						
116				동백	3	주						
117				서향	1	주						
118				장미	1	주						
119				함박꽃	1	주						
120				관정	1	식						

이 의 신 청 서				
① 사 업 명	강진역사 진입로 개설공사 개설 공사			
② 사 업 장 위 치	강진군 강진읍 목리 166-7일원			
③ 사 업 자	전라남도 강진군수			
④ 이 의 신 청 자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주 소			
⑤ 이의신청 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열람에 따른 조서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강 진 군 수 귀하				

해남군 고시 제2019-22호

해남군 지역개발사업(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및 해남 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8-379(2018.12.20.)호로 고시된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지역개발계획(변경),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대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및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협의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사항에 관하여 같은법 제3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 2. 14

해남군수

【지역개발사업구역(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1.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
 - 명 칭 : 해남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
 - 위 치 :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산16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기정 : 87,886㎡,
 - 변경 : 87,804㎡(감 82㎡)
2.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목적 및 지역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 지정목적 : 변화하는 장례 문화에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주변지역의 이용 편의 제공
 - 사업 시행기간
 - 기정 : 2013년 ~ 2018년
 - 변경 : 2013년 ~ 2019년(1년 연장)
3.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시 행 자 : 해남군수
 - 시행방식 : 공영개발

4.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변경없음)

구 분	저 감 방 안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 식물상 - 귀하식물 억제 대책 수립, 발생 법면은 줄때, 평때로 녹화 ○ 동물상 - 저소음·저진동의 정비 장비 사용, 현장관계자들에 대한 야생동물보호교육 실시 - 야생동물 주요번식기(03-06월)은 가급적 피하여 공사 실시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 육수동물상 - 절·성토계획 수립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 최소화 - 법면부는 충분한 다짐으로 부유토사 유출 저감 - 우기시 공사 지양, 토사유출 최소화할수 있는 구간별 공사시행 - 강우전 나지로 노출된 사면 비닐 등 설치, 조기식재를 통한 토사유출 저감 ○ 법정보호종 - 법정보호종 발견시 적절한 보호 및 보존대책 수립후 사업시행 - 공사시 작업인부들에 의한 동식물 남획, 포획 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교육실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지형변화의 최소화 - 주변 지형의 특성을 살린 계획을 수립하여 사면발생 최소화 ○ 사면의 보호 - 계획지구의 토질 및 토양조건, 사면경사,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최적의 사면보호공법을 적용토록 할 계획 ○ 조경계획 및 식재계획 - 수목, 초화, 자연석 등 대상지가 안고 있는 자연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 사면, 소단별로 식재 수종을 단일화 하여 강렬한 이미지 조성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자연지형의 변화 - 주변 지형의 특성을 살린 계획을 수립하여 사면발생 최소화 ○ 사면의 보호 및 처리방안 - 계획지구의 토질 및 토양 조건, 사면경사,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최적의 사면보호공법을 적용토록 할 계획임. ○ 토사유출 - 토사유출 저감방안은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등을 설치할 계획임
수환경의 보전	○ 우기를 피하여 토공작업 실시 ○ 가물막이 및 가도 설치 ○ 침사지 설치 운영 ○ 오탁방지막 설치 운영 ○ 심장개발 및 상수이용 병행 ○ 계획지구내 오수처리시설 설치 후 방류수수질 기준 준수하여 처리
환경 기준의 부합성	○ 대기질 - 주기적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 설치 - 저재운반차량의 적재관리 및 차속의 제한 -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사장비의 적정분산 투입 ○ 소음·진동 - 주간작업 실시, 야간작업 지양(06:00 ~ 18:00) - 작업장 및 운행도로에서의 공사차량 속도제한(20km/hr) - 소음이 작은 신차의 운행을 늘리고, 과적재를 엄격히 제한시킴 - 공사시 가능한 저소음 건설기계를 사용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서행표지판 등)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분뇨, 지정폐기물(폐유),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폐기물 종류별로 적법처리 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임.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공사시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대상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실시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상을 실시한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5.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 인구수용·교통처리 계획 :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면적(㎡)		증감(㎡)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87,886	87,804	감)	82	감) 0.1%
장사 시설	화장시설	4,496	4,496		변경없음	
	봉안시설	4,862	4,862		변경없음	
	자연장지	33,879	33,879		변경없음	
	소계	43,237	43,237		변경없음	
편의 시설	공원	4,573	4,573		변경없음	
	휴게소	2,559	2,559		변경없음	
	소계	7,132	7,132		변경없음	
공공 시설	도로/주차장	15,363	15,363		변경없음	
	공원/녹지	22,154	22,072	감)	82	
	소 계	37,517	37,435	감)	82	감) 0.2%

6. 제13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7.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변경없음)

- 도로 : 폭원 5m ~ 16m 내부 도로 총 연장 790m 확보
- 상하수도
 - 상수 : 86㎥/일
 - 하수 : 71㎥/일

8.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없음)

○ 재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국비	도비	지방비	비 고
사업비	12,953	9,162	459	3,332	

○ 연차별 투자 계획

- 지자체간 연계사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비 고
합 계	합 계	954	2,460	2,801	6,215	
	국 비	858	2,214	2,520	5,592	
	지방비	96	246	281	623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비 고
해남군	소 계	478	1,228	1,401	3,107	
	국 비	430	1,106	1,260	2,796	
	지방비	48	122	141	311	
완도군	소 계	238	616	700	1,554	
	국 비	214	554	630	1,398	
	지방비	24	62	70	156	
진도군	소 계	238	616	700	1,554	
	국 비	214	554	630	1,398	
	지방비	24	62	70	156	

- 보건복지(해남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	비 고
합 계		5,100		1,638	6,738	
국 비		3,570	-		3,570	
지방비	소 계	1,530	-		1,530	
	도 비	459	-		459	
	군 비	1,071	-	1,638	2,709	

9. 보건의료·교육 및 복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해당없음)

10. 보상계획 및 조성 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 매수를 통한 토지 확보 및 전체 부지를 공설추모공원으로 활용

11.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그 세부 목록 : (변경)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면	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황산	원호	5 - 5	임	1,435	1,435	해남군				
2	황산	원호	5 - 6	답	2,987	2,987	해남군				
3	황산	원호	5 - 7	답	2,473	2,473	해남군				
4	황산	원호	5 - 8	답	2,287	2,287	해남군				
5	황산	원호	5 - 9	임	371	368	해남군				
6	황산	원호	5 - 10	구	311	311	해남군				
7	황산	원호	5 - 11	구	1,001	897	해남군				

연번	토지소제지		지 번	지목	지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면	리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8	황산	원호	5 - 13	답	406	406	해남군				
9	황산	원호	5 - 14	답	46	46	해남군				
10	황산	원호	5 - 15	답	281	281	해남군				
11	황산	원호	5 - 16	답	295	295	해남군				
12	황산	원호	5 - 17	답	155	155	해남군				
13	황산	원호	5 - 18	답	125	125	해남군				
14	황산	원호	산159 - 1	임	37,289	9,807	해남군				
15	황산	원호	산159 - 3	임	1,289	1,289	해남군				
16	황산	원호	산160	임	38,347	38,347	해남군				
17	황산	원호	산160 - 1	임	331	331	해남군				
18	황산	원호	산161	임	8,100	7,798	해남군				
19	황산	원호	산162	임	11,925	11,925	해남군				
20	황산	원호	산163	임	6,241	6,241	해남군				
합 계			20필지		115,695	87,804					

12.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변경없음)

- 위치 :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일산리, 마산면 상등리 일원
- 사업내용 : 공설추모공원 진입도로 확장(도로 L=4.778km, B=12.0m)
- 총사업비 : 10,000백만원
- 사업주체 : 국토교통부 및 해남군
- 사업기간 : 2016 ~ 2019년

13. 사업성에 관한 사항

- 금회 사업으로 조성되는 해남 공설추모공원은 변화하는 장례문화의 능동적 대처를 통한 장사문화 개선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

14. 그 밖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 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
 - 화장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7,886	87,804	87,804		
변경	-	화장시설	황산면 원호리 산160 일원	87,886	87,804	87,804	17.10.25	

- 자연장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7,886	87,804	87,804		
변경	-	자연장지	황산면 원호리 산160 일원	87,886	87,804	87,804	17.10.25	

15. 기타 관계서류 및 지형도면 고시 도면 : 게재 생략

- 기타 관계도서는 해남군 안전도시과(☎061-530-5445) 및 주민복지과(☎061-530-5146)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

1. 해남 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 조서 : 다음
2. 해남 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도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해남군 안전도시과(☎061-530-5445) 및 주민복지과(☎061-530-5146)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해남 군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 결정(변경) 조서

□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7,886	87,804	87,804		
신설	-	화장시설	황산면 원호리 산160 일원	87,886	87,804	87,804	17.10.25	

○ 화장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화장시설	· 화장장 87,804㎡	· 화장 및 장사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 및 해남군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시설 변경

○ 자연장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87,886	87,804	87,804		
신설	-	자연장지	황산면 원호리 산160 일원	87,886	87,804	87,804	17.10.25	

○ 자연장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자연장지	· 자연장지 87,804㎡	· 화장 및 장사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국토활용 및 해남군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공설추모시설 조성을 위한 자연장지 변경

영암군 공고 제2019-159호

영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 재공람 공고

영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 협의의견 및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 반영 등의 사유로 당초 입안된 내용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계 서류의 재공람을 실시합니다.

2019. 2. 14

영암군수

1. 영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요 내용(변경)
 - 가. 목 표 연 도 : 2020년
 - 나. 공간적 범위 : 영암군 전역 630.799km²
 - 다. 주 요 내 용 :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등
2. 공람내용 : 영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3.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기 간 : 2019. 2. 14. ~ 2. 28. (14일간)
 - 나. 장 소 : 영암군청 도시개발과
4. 관련도서 및 도면 : 개재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계도서를 공람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팀(☎061-470-2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암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안) 의견서

의견

의견내용 :

※ 본 의견서는 주민공람공고 기간(2019. 2. 14. ~ 2019. 2. 28.) 내에 작성·서면제출 바랍니다.

2019. . .

의견제출인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영 암 군 수 귀 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고 제2019-6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2건 공포 공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 규정에 의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등 2건을 공포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2. 1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1. 공포사유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등 2건 의결에 따른 공포
2. 공 포 일 : 2019. 2. 7.
3. 공포문 및 공포전문 : 다음

공 포 목 록

규정번호	규 정 명	페이지
제22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3
제22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	6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제102회 임시회(2019. 1. 28.)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2. 1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22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지원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외국기업” 을 “국내·외국기업” 로 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투자유치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구 분	액 수	
참석 수당	2시간 미만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안전심사 수당	50,000원 / 건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제2호에 상당하는 금액	

[별표2-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투자유치매니저 회의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기준

구 분	액 수	
참석 수당	2시간 미만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제2호에 상당하는 금액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제102회 임시회(2019. 1. 28.)에서 의결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 2. 14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규정 제225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복무규정 개정규정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동 규범” 을 “행동률” 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무원은 청장에게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근무(이하 “유연근무” 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해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제2항의 단서 중 “다른” 을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무원연금법」 제2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를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을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제6항과 제7항으로 한다.

- ① 결근 일수 · 정직 일수 ·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frac{\text{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12\text{개월}} \times \text{해당 연도 연가 일수}$$

-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른 휴직. 다만,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도 중 퇴직 또는 임용되는 경우. 다만,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수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

- ④ 제2항에 따른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공무원이 같은 항의 계산식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연가 일수는 결근으로 본다.

- ⑤ 연도 중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해 퇴직하고 14일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연가 일수에서 퇴직 전 사용한 연가 일수를 공제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연가 당겨쓰기) 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16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권장 연가 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해 공지해야 한다.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매년 7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청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청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청장은 그 해 9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라 알려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제18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10호와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 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제19조 제9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11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중전의 제11항) 중 “불임치료”를 “난임치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난자”를 “여성공무원은 난자”로 하며, 같은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여성 공무원으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을 “여성공무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생후 1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은 1일 1시간의”를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1일 최대 2시간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을 제9항부터 제11항으로 하고, 제10항은 제12항으로 하고, 제12항과 제13항은 각각 제13항과 제14항으로 한다.

⑧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표 중 대민관계란에 다음을 신설한다.

대 민 관 계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별표 3의 표 중 출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출산	배우자	10일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장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5호 또는 제10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결핵검진 등이 있거나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시간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제5항의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선 서 문

선 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